

연구총서 13-AB-04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A Study on Victims of Intermarried Korean Men

김지영 · 안성훈

■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심리학 박사

■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 박사

국경을 넘은 결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그 출발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에 의해 국제결혼은 성혼 이후에도 순탄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이혼상당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국제결혼가정의 파탄이 부부의 문제를 넘어 자녀의 문제로, 우리 모두의 문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파탄에는 결혼 당사자 서로의 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서로 다른 기대수준 등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도 있으나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상도에 어긋나는 중개활동과 위장결혼이라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결혼행태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건을 속이고 결혼했다가 입국해 가출하는 여성으로 인해 내국인 남성들이 겪는 심리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된 적은 있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여성에 대한 남성과 시택의 비인권적인 처사만큼 여성들의 위장결혼, 사기결혼도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적인 중개행태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정파탄을 부추기는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일방적으로 내국인 남성의 권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건실한 국제결혼과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요구된다 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제결혼과 관련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여러 기관에 소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구를 위해 애쓴 김지영 연구위원과

안성훈 부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연구에 협조해주신 소비자보호
원과 국제결혼피해센터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CONTENTS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김지영)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21
제2장 선행연구고찰 (김지영)	23
제1절 국제결혼의 이혼실태	25
제2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	28
제3절 배우자의 가출과 위장결혼	29
제4절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둘러싼 갈등	31
제3장 국제결혼의 내국인 피해실태 (김지영)	33
제1절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35
1. 피해사례의 분류	35
2. 서비스 제공지연 및 계약과 다른 이행	37
3. 업체측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거부	38
4. 본인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 거부 및 위약금	39
5. 중개업체의 비용처리문제	40
6.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	43
7.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	47
8. 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	49
9. 업체의 입국수속 처리 지연	52
10. 업체의 폐업 및 연락두절	54
제2절 심층면접에 나타난 피해사례	56

1. 사례의 개요	56
2. 결혼을 하기까지	64
3. 만남에서 결혼까지	68
4. 결혼에서 파경까지	76
5. 파경이후	89
 제4장 국제결혼의 내국인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안성훈)	93
제1절 출입국관리제도의 개선	95
1. 문제의 소지	95
2. 대책	97
제2절 국제결혼중개업의 개선	108
1. 문제의 소지	108
2. 대책	111
제3절 주요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119
1. 문제의 소지	119
2. 대책	121
 참고문헌	131
 Abstract	135

표 차례

〈표 1〉 연도별 이혼건수 추이	26
〈표 2〉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종류	27
〈표 3〉 국제결혼 부부(여성결혼이민자+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당 사유(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8, 2009)	28
〈표 4〉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결혼피해사례	36
〈표 5〉 피면접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57

그림 차례

〈그림 1〉 연도별 이혼건수	26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가 2008년도 다문화 가정의 이혼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혼 3년 미만의 이혼상담 비율은 절반에 달했으며 국제결혼한 부부의 40% 조금 넘는 비율이 별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들이 상담하는 내용중에서 여성의 결혼조건 속임이 2008년에는 4.5%, 2007년에는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의 무성의하고 불법적인 중개로 인해 외국인 신부가 당하는 피해, 외국인 신부의 인권침해 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적되었으나 내국인 남성의 피해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외국인 신부에 대한 인권침해실태가 심각하여 국제결혼으로 인해 내국인 남성이 당하는 피해에 관해서는 그간 도외시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국제결혼으로 인한 내국인 남성의 피해실태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이전부터도 취업이나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입국한 신부가 입국후 도망가는 일은 있었으나 내국인 남성의 피해실태는 공론화되지 못한채 묻혀 있었다. 내국인 남성의 피해실태를 조명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차원뿐 아니라 국민의 안녕과 복지라는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와도 직결된다. 즉 성혼에만 매달리던 근시안적인 국제결혼실태가 오늘날의 높은 이혼율을 불러왔고 장차 이혼한 국제결혼부부간에 태어난 자녀의 문제로까지 연결되어 국가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결혼피해 상담실태와 내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피해실태를 분석하고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2년에서 2013년 중반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 불만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한 사례는 모두 833건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 국제결혼을 올린 남성들이 상담한 사례들이므로 이들의 불만사항은 주로 중개업체의 서비스에 관한 것이나 이 가운데 신부와 관련된 문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833건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먼저 대분류에서 보면 기타를 제외하

고 ‘중개업체의 서비스 불이행’, ‘중개업체의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시 환급문제’, ‘본인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제’, ‘중개업체의 비용처리문제’,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 ‘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 ‘중개업체의 입국수속 처리지연’, ‘업체폐업 및 연락두절’의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대분류안에는 다시 소분류가 존재하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거부 및 위약금’(166명, 19.94%), ‘업체측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문제’(156명, 18.74%),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120명, 14.4%),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120명, 14.4%) 4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2.7세이고 여성과의 연령차는 17.2세이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단순노동자에서 기술노동자, 개인사업자, 회사원, 공무원까지 다양하다. 연령은 30대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이며 여성과 가장 연령차가 적은 남성은 1살이었고 가장 많은 사례는 29살이었다. 여성들의 모국을 보면 베트남이 9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면접대상자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사례들일 것이다. 18명의 피면접 대상자중 15명이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이며 그중 세명의 남성은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였다. 세명중 한명의 남성은 정부의 도움을 얻어 아이를 되찾을 수 있었으나 나머지 사례들은 자녀가 배우자의 모국에 있다고 한다. 또한 표면적으로 가장 큰 피해는 배우자의 가출이나 그 이면에는 결혼중개업체로부터의 부당한 추가비용요구와 허위정보 제공 등의 문제들이 얹혀 있었다. 결혼 이전부터 업체는 남성의 이목을 끌기 위해 중개 대상이 아닌 여성의 사진을 사이트에 올려놓고 소개시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다른 여성을 소개한다. 남성들 대부분이 생업을 접고 이국까지 온 터라 업자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게 된다. 업자들은 남성의 나이나 장애를 들어 추가비용을 요구하게 되고, 일단 계약금을 지불한 남성들은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에 웬만한 요구들은 모두 들어주게 된다고 한다. 결혼식을 올리고 남성이 먼저 한국에 입국한후부터 본격적으로 업자와 여성들의 금전적 요구가 시작된다. 업자들은 ‘교육비’, ‘숙식비’ 혹은 ‘처갓집에 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다.

결혼이후에도 입국한 여성들은 결혼생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국내에 있는

지인들이나 모국에 있는 사람들과 하루종일 채팅을 하거나 전화기에만 매달려있다가 결국 가출하게 된다. 남성과 결혼하여 결혼을 유지하고 살다가 가출한 경우에는 가정불화로 볼 수 있으나 입국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출한 사례가 더 많아 여성들의 사기결혼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 업체도 일정 부분 여성들의 내연관계나 한국에서의 결혼이 취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지하고는 있으나 출신국의 특성상 서류에 나타난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랑과 같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눈감은 사례도 있다. 피해사례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경우일 것이다. 여성들은 자녀를 친정에 맡겨두고 혼자 몰래 입국하여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 국제결혼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출입국관리제도의 개선, 둘째, 국제결혼중개업의 개선, 셋째, 주요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사례는 입국 후 바로 가출하는 것과 단기간 동거 후 가출하는 사례이다. 가출의 원인에는 결혼 전 예상했던 것과 현실이 달라서 가출하는 경우 등 다양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기위해 의도적으로 결혼한 후 가출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이러한 의도적인 위장결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이민사증 예비심사’ 과정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의도적인 위장결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현행제도는 이미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난 법적인 부부에게 나중에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혼인의사를 확인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체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부터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내국인 남성의 피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지결혼 후 신부의 입국거부 및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국민 남성들이 입는 피해는 미국의 사례와 같은 ‘약혼자 비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혼인신고 후 외국인 배우자가 미입국한 경우, 당사자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출입국관리 측면에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에서는 국

제결혼사기 등의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상대 외국인 여성을 강제 구인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대국 정부에서 이에 협조할 리가 없고 외국인을 구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도 떨어진다. 단지 국민 배우자가 초청을 철회하는 경우 이미 발급된 결혼이민 비자를 취소함으로써 국민 배우자 몰래 취업 등을 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입국 후 바로 또는 단기간 동거 후 가출한 경우, 국민 배우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출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내부 시스템에 관련사항을 입력시켜 놓고, 추후 체류기간 연장신청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때 가출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국민배우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 악의적 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과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의사가 있음을 가장하여 사증을 신청하였다고 판단하는 등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강제퇴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국제결혼의 피해를 당한 내국인 남성을 돕기 위한 기관과 법제도적 방안은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내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달리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과 보호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적으로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설치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법)’ 등과 같은 기존의 기관에서 결혼이민여성 뿐만 아니라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자의 보호·지원 및 상담과 관련한 업무를 같이 병행한다면 기존의 축적된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노하우를 살려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인 배우자가 현지에서 변심하여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 후 가출하여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국민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상대방 없이 혼자서 혼인무효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소송의 진행이 매우 더딘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

자의 귀책으로 인해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송달 준비과정을 단축하는 등의 소송상의 특례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한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서류는 나라마다 상이하고, 발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도 나라마다 상이하다. 또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공증 및 인증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동안 혼인신고 수리과정에서 허위서류에 의한 위장결혼을 구별해 내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가 국내에서 효력이 있는 문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할 것을 요구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접수하면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요구하고 미가입국인 경우에는 그 나라의 외교부인증과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한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업무처리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피해와 관련하여 많은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자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피해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있다.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원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을 하고 등록필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또한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하여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거나 명의대여업자를 처벌하는 등 무등록결혼중개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내국인 국제결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관련하여 국민 남성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중개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의 이용을 중개업자에게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많은 국민 남성 이용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후술하는 국제결혼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과도 연관되는 부분으로 이용자에게 이와 같은 표준약관에 대해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된 피해내용의 하나로 비용지불과 관련

한 문제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개업체의 계약과 다른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와 ‘중개업체의 계약과 다른 지불방법을 요구’ 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개업체의 계약과 다른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추가비용이 없다’는 확인이 꼭 필요한데, 앞서 서술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약관에는 회원에게 별도로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가 아니거나, 이용자가 별도로 꼼꼼히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이 사실을 미리 숙지해두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가비용 없음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중개업체의 고지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국제결혼중개업자마다 책정한 중개수수료가 상이하고, 국제결혼중개 이용자들은 자신이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고액의 결혼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업무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역할을 표준화하고 매뉴얼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개업체의 허위정보 제공과 관련한 문제는 주로 ‘허위 혼인경력 사항 제공’, ‘허위 건강상태 제공’, ‘기타 허위 인적사항 제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 경우 크게 정보제공의 신뢰성 확보 문제와 책임의 문제를 누구에게 전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우선 정보제공의 신뢰성 확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상대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허위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발생시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혼인성사를 위해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물을 수 있지만, 일부 현지 브로커들의 속임이나 외국인 상대 여성들이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비자보호원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해결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제결혼중개업을 폐지하고 국가가 인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만이나 중국의 경우 결혼중개업체

와 중개업자를 법제도 안에서 관리하고 자격을 검증한 후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또한 결혼중개업의 비영리화와 공익화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내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의 많은 부분이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최근 다문화아동 탈취문제와 관련하여 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 다수의견은 부모에 의한 약취가 가능성은 전제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어떤 실력행사로 아동을 평온하던 종전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로서 출생이후 곧장 맡아왔던 보호양육을 유지한 행위’로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을 사용한 약취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형법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문화아동 탈취행위에 대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보다 형이 약하면서 부모에 의한 탈취행위에 대한 법문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명확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배우자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1983년 12월 1일 발효된 협약이다.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89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을 하였고, 2013년 3월 1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체약국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내국인 국제결혼 주요상대국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협약을 근거로 다문화아동 탈취문제에 대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헤이그아동탈취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 남성들이 외국 현지의 국제결혼 관련 법률이나 절차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 불법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국민 남성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이 불법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활개를 치더라도 국민 남성들은

국제결혼과 관련한 정보부족 때문에 남성들은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일임하고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은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고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국제결혼 관련 정보와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서론

김 지 영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이라 하면 농촌총각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로 도시 저소득층 근로자 및 회사원 중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김문강, 2010). 즉 이제 국제결혼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서 출발하여 계층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그 저변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변화된 원인에는 결혼중개업체의 활발한 마케팅과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여성들이 어떠한 인식과 동기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며 어떠한 상황에서 갈등을 겪고 이혼을 선택하는지 이혼 후의 삶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문경연(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여성간에 기대가 달라 갈등이 심각해지고 여성들이 가출을 감행하는 경우, 남성들은 아내의 가출에 대해 가출신고와 이혼소송으로 대응하여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문경연, 2010). 또한 결혼이주여성들도 과거와 같이 무기력하기보다는 남성들의 이혼소송제기에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국인 네트워크, 시민단체, 교회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추세이다(김민정, 2011). 그러나 근래는 높은 이혼율의 원인이 막연히 ‘문화적 차이’나 ‘성격 차이’가 아니라 금전적 이익만을 노리는 결혼중개업체의 ‘기획’에 의한 경우가 있다. 즉 부부간의 갈등 이전에 결혼의 성립에서부터 중개업체의 농간으로 이혼의 위험성이 내

포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 중개업자들과 외국인 여성들이 짜고 여성이 결혼하여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버는 돈의 얼마간을 결혼중개업체에 준다가 나¹⁾ 모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국내에서 이미 혼인신고까지 된 여성이 입국하지 않거나 다른 남성에게 시집간 경우²⁾ 등이다. 이렇듯 결혼중개업체의 범죄행위가 판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국제결혼을 중개하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금액이 적게는 5백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이다. 즉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중개업체의 사기는 이전부터 문제시 되었던 것인바, 이전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에 가려 부각되지 않았던 남성들의 피해가 남성 스스로와 방송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³⁾

중개업체와는 별개로 이주여성들에 의한 내국인 남성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했음에도 이주여성들이 절도후 달아나거나 친자를 데리고 몰래 도주하는 경우, 혹은 친절 나들이를 빌미로 출국하여 외가에 자녀를 맡긴 후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가정이 파탄 나고 폐인이 된 남성들도 있다.⁴⁾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정책기조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으로 인해 이주여성의 인권이나 이주민들의 국내 정착에 관해 제도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많으나 그 외 문제들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도외시 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내국인 남성들이 겪는 국제결혼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자기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아동납치에 대한 민사부문 헤이그협약’ 가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조선일보, 2010.3.2.)으로 알려졌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 커플이 이혼할 경우 자녀는 평소 거주한 나라에서 우선 살 권리를 갖도록

1) 시사저널 2012년 12월 15일자 ‘다문화 가정파괴 브로커 활개친다’

2) 2012년 11월 28일자 광주일보 ‘노총각 올리는 국제 사기결혼 광주지법 혼인무효소송 매달 30건이나 결혼식 올린 신부 입국 않고 중개업소에 돈 떼이기 일쑤’, 2011년 8월 16일자 헤럴드 생생뉴스 ‘내 베트남 신부가 유부녀...결혼해 우는 한국남성들’

3) ‘국제결혼 피해센터’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성들의 모임이다. 국제결혼의 피해에 관한 보도는 2010년 8월 20일자 연합뉴스 ‘에이즈 신부 국내 남성도 국제결혼 피해’, 2013년 5월 6일자 경향신문 ‘국제결혼 사기주의보’ 등

4) 2012년 4월 23일자 헤럴드 경제 ‘위장 국제결혼에 우는 한국 남자들’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협약에 가입한다면 한국에 살던 국제 커플이 이혼한 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자기 나라로 데려가더라도 배우자 국가가 협약에 가입했을 경우엔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 부부간의 합의 없이 결혼이 주여성 출신국으로 자녀를 데려가, 아버지로부터 떼어놓았을 때 아버지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인 엄마와 출국한 자녀는 출신국의 호적이 없어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며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호적세탁을 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에도 직면할 수 있다. 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제도와 법률이 스스로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모성과 마찬가지로 부성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내국인의 10%가 외국인과 결혼하고 다문화 부부 열쌍 중 한 쌍이 이혼하는 현실에서 이제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국제결혼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사적이며 가장 공적인 영역인 결혼의 문제를 국가가 더 이상 '남의 가정사' 정도로 치부하기에 국민의 피해실태가 적지 않다. 본 보고서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내국인 남성들이 입은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그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국제결혼 내국인 남성들의 피해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신청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내국인 피해남성에 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실시되었다. 7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두달에 걸쳐 피면접자들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한후 일정을 조절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실시되었다. 피면접자들은 대부분 연구자와 일대일로 만났으나 사례 17과 사례 18의 경우 같이 심층면접을 했으며, 장애를 가진 사례 13은 모친과 같이 면접을 하였다. 피해남성들은 '국제결혼 피해센터'를 통해 소개받았다. 면접대상인 남성 전부가 피해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도 없으므로 면접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되도록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은 주로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다.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상담, 합의권고, 분쟁조정 세 단계 절차로 소비자 피해를 처리한다. 상담을 하였더라도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로 나가는 사례는 많지 않다. 때문에 일차로 접수된 상담사례는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대상자들의 불만과 중개업체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2012년에서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서비스에 대한 상담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은 국제결혼과 관련된 선행보고서 및 연구논문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결혼의 이혼실태, 국제결혼의 피해 유형과 원인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3장은 국제결혼의 피해실태에 관한 부분으로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결혼 피해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도 제시되었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국제결혼의 과정을 따라 기술하였다. 즉 결혼이전과 결혼과정, 결혼생활, 파경이후로 단계를 나누어 분석하였고 각 단계마다 국제결혼의 실태와 내국인 남성의 피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제4장은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관한 법제도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

선행연구고찰

김 지 영

선행연구고찰

제1절 국제결혼의 이혼실태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이유는 첫째, ‘경제적인 이유’(41%), 둘째, ‘남편을 사랑해서’(37%)이며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73%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응답했다(설동훈 외, 2005) 한편, 한국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유는 ‘한국인 배우자를 못 만나서’(51.6%), ‘한국 여성보다 배우자로서 더 좋다고 생각되어’(35.5%), ‘현재 부인을 사랑하여’(9.7%)로 응답하고 있어서 한국남성과 결혼이주여성간의 결혼동기에서 ‘경제적 이유(41%)’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며 서로간의 기대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홍달아기, 채옥희, 2007)

연도별로 국제결혼 이혼건수의 추이를 보면 2003년에 15%가 증가하였고, 2004년에 64%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40%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 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그림1 참조). 특히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남아 국적 여성들과의 결혼이 활성화된 2000년 이후에 특히 두드러진 현상이다(김이선, 마경희, 선보영, 최호림, 이소영,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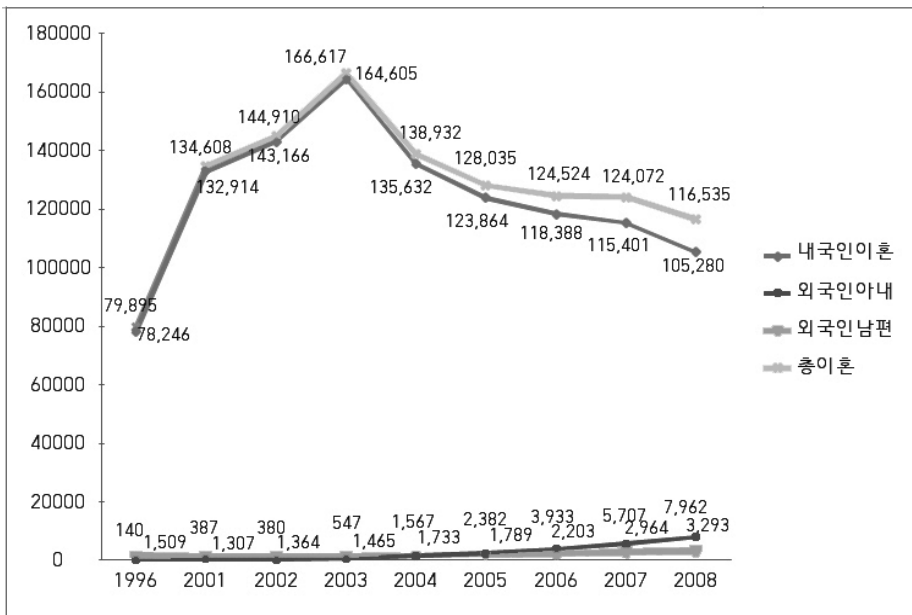
표 1 연도별 이혼건수 추이

단위: 건(%)

	총이혼 건수	내국인 이혼건수 (구성비)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외국 아내		외국 남편	
			건수 구성비	증감	증감율	건수 구성비	증감율	건수 구성비	증감율
1996	79,895	78,246(97.9)	1,649(2.1)			140(8.5)		1,509(91.5)	
2001	134,608	132,914(98.7)	1,694(1.3)	45	2.7	387(22.8)	176.4	1,307(77.2)	-13.4
2002	144,910	143,166(98.8)	1,744(1.2)	50	3.0	380(21.8)	-1.8	1,364(78.2)	4.4
2003	166,617	164,605(98.8)	2,012(1.2)	268	15.4	547(27.2)	43.9	1,465(72.8)	7.4
2004	138,932	135,632(97.6)	3,300(2.4)	1,288	64.0	1,567(47.5)	186.5	1,733(52.5)	18.3
2005	128,035	123,864(96.7)	4,171(3.3)	871	26.4	2,382(57.1)	55.0	1,789(42.9)	3.2
2006	124,524	118,388(95.1)	6,136(4.9)	1,965	47.1	3,933(64.1)	65.1	2,203(35.9)	23.1
2007	124,072	115,401(93.0)	8,671(7.0)	2,535	41.3	5,707(65.8)	45.1	2,964(34.2)	34.5
2008	116,535	105,280(90.3)	11,255(9.7)	2,584	29.8	7,962(70.7)	39.5	3,293(29.3)	11.1

* 자료: 통계청, 200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김이선 등(2010)에서 인용

단위: 건



* 김이선 등(2010)에서 인용

그림 1 연도별 이혼건수

이혼형태를 보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중 재판에 의한 이혼의 비중은 1996년 20.6%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에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2007년부터는 전체 이혼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2008년에도 증가하여 63.3%를 차지하고 있다(김이선 등, 2010).

표 2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종류

	단위: 건(%)				
	1996	2001	2006	2007	2008
협의이혼	85(79.4)	197(51.7)	2,171(55.4)	2,583(45.4)	2,925(36.7)
재판에 의한 이혼	22(20.6)	184(48.3)	1,749(44.6)	3,107(54.6)	5,036(63.3)
전체	107(100.0)	381(100.0)	3,920(100.0)	5,690(100.0)	7,961(100.0)

* 김이선 등(2010)에서 인용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8년도 다문화 가정의 이혼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혼 3년 미만의 이혼상담 비율은 49.8%에 달했으며 전체 부부의 40.9%가 별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의 경우, 이혼상담사유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5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33.4%, ‘배우자의 부정’ 및 ‘악의적 유기’ 각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경제적 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가족간 갈등, 성격차이, 알콜 중독, 결혼조건속임, 도박’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상담사유는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가족간 갈등, 경제 갈등, 잦은 외박가출, 성격차이, 결혼조건속임 등’이 58.3% 였으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16.3%로 나타났다.(김민경, 2011). 구체적으로 여성의 결혼조건 속임을 이유로 남성이 상담한 사례의 비율이 2008년에는 4.5%, 2007년에는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국제결혼 부부(여성결혼이민자+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당 사유

단위: %

		2008			2009		
		아내상당 (n=1,020)	남편상당 (n=381)	계 (n=1,401)	아내상당 (n=1,231)	남편상당 (n=695)	계 (n=1,926)
부정행위		6.8	9.7	7.6	6.7	3.3	5.4
유기		6.8	15.5	9.1	5.8	18.7	10.5
부당한 대우		52.1	16.3	42.3	47.8	24	39.2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1.0	0.0	0.7	0.5	1.6	0.9
생사불명		0.0	0.3	0.1	0.2	0.9	0.4
기타 전체		33.4	58.3	40.2	32.2	41.4	35.6
기타 세부	경제적 갈등	8.7	5.8	7.9	3.6	2.7	3.3
	결혼 조건 속임	1.7	4.5	2.4	1.1	7.6	3.5
	생활양식 · 가치관 차이	6.9	25.7	12.0	8.4	14.0	10.4
	도박	1.2	0.0	0.9	0.4	0.3	0.4
	성격 차이	2.9	4.7	3.4	3.4	3.7	3.5
	성적 갈등	0.6	0.5	0.6	1.1	2.6	1.7
	알콜 중독	2.2	0.3	1.6	1.2	0.3	0.9
	가족간 갈등	4.9	8.4	5.9	1.9	2.0	2.0
	의치증	0.5	0.0	0.4	0.4	0.1	0.3
	잡은 외박 · 가출	0.5	5.0	1.7	0.8	1.6	1.1
	질병	0.4	0.0	0.3	0.2	0.6	0.3
	기타	3.0	3.4	3.1	9.7	5.9	8.3
미상		—	—	—	6.8	10.1	8.0

* 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김민경(2011)에서 인용

제2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

국제결혼중개업법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많은 영세업자들이 자연적으로 폐업·정리되었고 업체도 자정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결혼중개업자의 거짓정보제공과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의 요구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다. 소비자 보호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국제결혼중개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출신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이 중개로 인한 국제결혼이 불법으로 규정된 나라들이다. 또한 회원들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단순히

구두로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6.5%나 되었다⁵⁾. 즉 대부분의 결혼중개업자들이 중개로 인한 국제결혼이 불법으로 규정된 나라에서 버젓이 협력업체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전혀 모르는 남성들은 현지에 가서야 이를 알게 된다. 불법적인 중개결혼으로 인해 신부가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신랑과 신부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남성회원뿐 아니라 여성회원에게 철저한 검증도 없으므로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도 신랑과 신부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제3절 배우자의 가출과 위장결혼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이혼한 다문화 가족 가운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이 가출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김이선 등, 2010). 원만한 이혼이 모순된 단어일 수 있으나, 국내결혼의 경우, 양자가 인지할 수 있는 뚜렷한 이혼사유가 결혼생활 가운데 있어서 이혼에 대한 심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결혼의 경우는 여성의 일방적인 가출로 결혼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나 결혼과정에서부터 부부간에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힘든 요인이 게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나 처음부터 결혼의 진정성이 결여되었을 수 있다.

결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비 배우자의 신상과 관련해 매우 제한되고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결혼을 결정한 경우 원만한 결혼생활을 기대하기 힘든데, 국경을 넘는 결혼은 정보 자체가 제한되기 쉬울 뿐 아니라 부정확하고 때로는 왜곡될 우려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의 경우 단기간 내에 결혼이 결정·진행되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 중에는 국제결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한국(인)’, ‘한국생

5) “국제결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09년 8월 26일, 한국소비자원 (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할'에 대한 환상으로 배우자의 객관적 조건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결혼한 경우도 없지 않다. 더욱이, 단시간 내에 결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성격이나 생활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결혼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정보를 당사자들이 직접 교환, 확인하기보다는 중개업자나 통역 등 제3자를 통해 전달받는 구조로 인해 이러한 모순은 더욱 심화된다. 국경을 넘어 배우자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중개업자가 한국인 남성이나 여성결혼이민자 모두에게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흔한 일일 뿐 아니라, 심지어 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결혼이민자 중에는 '결혼하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보상하라'는 식의 강압에 의해 결혼을 강요당한 사례도 발견된다(김이선 등, 2010).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혼한 부부들이 파경을 맞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남성들의 경우도 출국, 맞선, 결혼식(합방), 신혼여행, 입국에 이르는 기간 동안 드는 비용이 천만원을 넘는다. 결혼중개업자들은 남성의 마음에 드는 여성이 없을 경우 계속 다른 여성을 소개하며 남성들로 하여금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 상대를 결정해버리도록 압박한다. 또한 목적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출신국과 목적국간 결혼 중개업에 대한 입법 태도에서의 차이이다. 출신국들은 대개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를 여성에 대한 상품화, 인신매매로 보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내 주요 목적국들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제결혼 중개 시장을 키워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불법적 혹은 인권 침해적 결혼 중개업 규제 등을 둘러싼 국가간 협력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규제가 덜한 곳을 찾아 쉽게 옮겨 다니며 영업하는데 도움을 준다(위선주, 2009).

여성이 결혼 이전부터 국적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경우를 피해남성들이나 언론에서는 사기결혼, 위장결혼이라고 칭하지만,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영위하던 이주여성에 대해 사기결혼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처음부터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한국남성과 결혼했는지, 아니면 살다가 마음이 변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증거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부인이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가정생활에 대해 극

도로 무관심한 경우, 가정생활에 무관심하다가 가출한 경우 등에서는 부인이 결혼과 가정생활보다는 취업 등을 위해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의심하게 된다. 짧은 기간 가정생활이 지속되더라도 부인이 가정생활보다는 체류 자격에 지나친 관심을 두는 경우도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부 중개업체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여성이나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예비 배우자로 소개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제4절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둘러싼 갈등

일반적으로 이혼 과정에서 부부간에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 가운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중요한 갈등 사항이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할 만한 생활 기반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법제도적 권리 확보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외국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은 뿐 아니라 심지어 아이를 두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다.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네트워크도 크게 제한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에 대한 권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적절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체류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면접교섭권 등 자녀에 대한 권한이 있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는 등 복합적 한계에 직면하기 쉽다. 그런 만큼, 이혼을 염두에 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에 대한 권한 확보에 민감하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권한을 둘러싸고 부부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양상이다. 자녀에 대한 권한을 둘러싸고 배우자와의 의견 조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결혼이민자들 중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 출국해 친정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다.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생활고나 가족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자녀와 함께 친정을 방문했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자녀를 친정에 두고 자신은 돌아와 생활비를

벌어 양육비를 송금하고 이혼 수속을 밟는 경우도 있다. 자녀에 대한 권한 확보에 있어 한국사회에서 자신이 처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한다.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가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아 결국 부모로서의 권한이 침해되는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한국인 배우자 중에는 이러한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김이선 등, 2010).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국제결혼의 내국인 피해실태

김 지 영

국제결혼의 내국인 피해실태

제1절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1. 피해사례의 분류

2012년에서 2013년 중반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 불만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한 사례는 모두 833건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 국제결혼을 올린 남성들이 상담한 사례들이므로 이들의 불만사항은 주로 중개업체의 서비스에 관한 것이나 이 가운데 신부와 관련된 문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833건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먼저 대분류에서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중개업체의 서비스 불이행’, ‘중개업체의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시 환급문제’, ‘본인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제’, ‘중개업체의 비용처리문제’,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 ‘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 ‘중개업체의 입국수속 처리지연’, ‘업체폐업 및 연락두절’의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표 4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결혼피해사례

대분류	소분류	빈도	퍼센트
1. 서비스 제공지연 및 계약과 다른 이행	서비스 제공지연 및 계약과 다른 이행	80	9.60%
2. 중개업체의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문제	업체측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거부	156	18.74%
3. 본인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거부 및 위약금	본인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 거부 및 위약금	166	19.94%
4. 중개업체의 비용처리문제	업체의 계약과 다른 지불방법 요구	11	1.32%
	업체의 계약과 다른 추가비용 요구	81	9.72%
5.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	신부의 (돈을 빌미로 한) 입국지연	17	2.04%
	신부 연락두절 및 입국거부	75	9.00%
	신부의 비자발급 문제	28	3.36%
6.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	신부 가출(도망)	102	12.24%
	위장결혼	18	2.16%
7. 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	허위 혼인경력 사항 제공	20	2.40%
	허위 건강상태 제공	17	2.04%
	기타(직업, 학력 등) 허위 인적사항 제공	14	1.68%
8. 중개업체의 입국수속 처리지연	업체의 입국수속 처리지연	22	2.64%
9. 업체폐업 및 연락두절	업체 폐업	9	1.08%
	업체 연락두절	13	1.56%
10. 기타	기타	4	0.48%
합계		833	100.00%

이러한 대분류안에는 다시 소분류가 존재하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거부 및 위약금’(166명, 19.94%), ‘업체측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문제’(156명, 18.74%),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120명, 14.4%),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120명, 14.4%) 4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개업체의 비용처리문제’(92명, 10.04%), ‘중개업체의 허위정보 제공문제’(51명, 6.12%)로 나타났으며 중개업체의 입국수속 처리지연(22명, 2.64%)과 업체의 폐업 및 연락두절(22명, 2.64%)은 동일한 비율로 결과되었다.

2. 서비스 제공지연 및 계약과 다른 이행

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 제공 지연 및 계약과 다른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례들은 주로 업체들이 신부의 입국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와 결혼이 불발한 경우, 다시 소개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추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 사례로 나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책임은 신부를 입국시켜 신랑에게 인계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부와 신랑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까지로 본다.⁶⁾ 그러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결혼중개업체는 신부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결혼이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차일피일 일처리를 미루고 있는 등 국제결혼 남성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사례 1은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았음에도 업체가 이를 해결해주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사례 4는 여성이 입국하지 않아 300만원 추가비용을 내고 다시 소개를 받았는데, 2000만원의 비용만 발생하였고 여성은 입국하지 않았다고 한다.

상담사례 1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 베트남을 두 번 다녀온 피해자임. 처음에 상담을 받고 2,500만원을 주고 베트남을 갔으나 소비자가 나이가 많아 돈을 많이 요구하여 그냥 돌아옴. 두 번째 또 가자고 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갔어. 어렵게 선택을 하고 2개월 후 인터뷰 과정을 거치고 오면 다시 2개월 후 신부가 한국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신부가 오지 않음. 아이가 둘 있는 신부를 소개받은 상태여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괜찮다고 권유를 하여 한 상태였음. 신부가 오지 않은 이유가 아이와 신부 가족들이 만류를 해서 한국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여 오지 않게 됨. 업체에서는 신부가 오지 않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조치를 부탁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이제는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나몰라라 함. 업체에서 안 되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 여성들중에서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해서 돈을 요구하는 상태.

상담사례 2

작년 5월달에 국제 결혼 정보업체에 1년 계약을 하였음. 계약하고 작년에 필리핀에 다녀옴. 업체가 그 이후 계속 미루고 성사가 되어지지 않고 있음.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니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음. 5월달이면 1년이 되어지고 계약기간이 끝나게 됨. 절차는 이미 다 진행이 되어 혼인신고 되어 있음.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고 있음. 계약을 해지하고 싶는데 가능 한지 문의.

6) 울산지방법원 2012. 1. 31. 선고 2011가소29515 판결

상담사례 3

새터민과 연결하여 주는 결혼대행업체에 250만원의 회비를 내고 5회 만남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2번의 주선으로 2번째 소개받은 사람과 데이트를 하던 중 중국에 두고온 아들과 헤어질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고 결혼 대행업체에 나머지 3회의 주선을 부탁하자 약 관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주선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정해진 모호한 규정으로 주선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함.

상담사례 4

조카가 외국인과 결혼함. 2012.1.14,비자까지 나왔는데 여자가 안들어 왔음. 2.13,비자가 나온다고 하여 확인하니 비자가 나왔다고 함. 1300만원 비용이 들었으나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였음. 계약서에 300만원 부담하면 다시 소개를 시켜 주겠다고 함. 다시 하였으나 2000만원 비용발생 되었음. 결혼업체가 사기성이 많음. 혼인 무효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여 변호사에 신청을 하였음. 혼인무효로 만들었음. 그러나 소장에게 확인하니 무효가 안되었다고 함. 6~7개월만에 들어 온다고 하였으나 1년이 되었음.

3. 업체측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거부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하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환급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를 보면 통역의 문제로 인해 1차 방문시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 또한 소비자가 제반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했으나 2차 방문시에도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비용을 일부 환불받기를 원하고 있다.

상담사례 1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2011년경 국제결혼하고자 중국 방문함. 1차 방문했을 당시 업체의 담당자가 소비자의 이력(직업 및 보수)을 거짓으로 부풀려 통역을 한 것이 들뜸. 결혼 성사되지 않음. 1차 방문당시에는 항공비 등의 제반 비용 모두 소비자가 부담함. 일주일 뒤 2차로 방문했고, 당시 항공료만 업체에서 부담하고 그 외 제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 결혼 성사되지 않았음. 소비자는 업체측의 과실로 인해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으니 서류비용 70만원과 사진비용 3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함. 업체에서는 못 주겠다고 함. 소비자는 업체의 과실로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서류비용 및 사진비용 100만원을 환불받길 원함. 또한 해당 비용도 필요이상으로 업체가 과도하게 부풀려 요구한 것 같음.

4. 본인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 거부 및 위약금

‘본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약금 청구 및 환급거부’의 문제는 남성들의 변심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1과 같이 여성과 결혼까지 했는데 마음이 변해 결혼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성이 국내에 입국해서 같이 몇 일이라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례 2를 보면 여성의 모국을 방문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인해 남성들이 지속적으로 재소개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구매자인 남성이 명백히 계약을 파기한 것이나 국제결혼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남성들의 상황도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사례 1

신청인의 사촌동생은 2012.7.1 지인의 소개로 피신청인에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을 계약하고, 계약금 200만원 현금 결제함. 맞선을 보고, 결혼을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의 권유로 중국여성과 동침을 하고, 7.13 잔금 1130만원 현금 이체함. 아들이 국제결혼을 반대하고, 국제결혼한 주위분들의 불행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11.20 피신청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피신청인은 국제결혼표준약관의 결혼이 성사된 이후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절하는 바, 중재 요청함.

상담사례 2

서울 소재 국제결혼상담소를 통해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함. 중국까지 가서 맞선하고 결혼 확정까지 되었는데 15일만에 상대국가 여성이 싫다고 거부를 했다고 함. 상담소에서는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면 또 중국을 다녀옴. 성사 될때까지 계속 여성은 소개해준다고하나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고 해서 환불처리를 받고자 하니 절대 환불이 안된다고 함. 총비용 800만원 중 계약금 500만원 지불한 상태임. 중개소에서 제대로 상대 여성을 소개 못해준 과실이 있다고 봄.

상담사례 3

결혼정보 회원 가입 5회 250만원 일부 100만원 지급후 5월10 잔금 150만원 입금하기로 계약함. 1회 소개 받았으나 마음이 가지 않아 5월21일 잔금 입금하지 않고 계약해지 환불 요구. 사업자 환급 금액 없다고 함. 환불 기준을 문의

상담사례 4

국제 결혼을 위해 중국 여자를 만나서 5일간 같이 생활하였음. 같이 살아보니 이도 별로 좋지 않고 탈모현상도 있음. 본인을 좋아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기 보다 돈을 보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듯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음. 현재 여자는 출국을 한 상태임. 출국당시 50만원을 지급하였고 개인적으로 70만원을 더 주었으며 화장품등 선물을 30만원어치 가량 주었음. 총비용이 680만원인데 계약금으로 50만원 지불하였고 중도금으로 200만원 지불하였음. 특약사항에 계약파기시 위자료 5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함. 계약파기하게 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문의함

상담사례 5

청구인은 베트남 아가씨랑 국제결혼을 함. 청구인은 35살 이상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아가씨가 좋다면 강제로 권유. 신혼여행을 가서 성격이 맞지 않아 파혼함. 청구인은 위약금400만원 가량도 지급함. 구청에서는 베트남에서 파혼해서 10%정도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함

5. 중개업체의 비용처리문제

중개업체의 비용처리에 관해 문의한 내용을 보면 크게 계약과 다른 지불방식을 요구하는 경우와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계약과 다른 지불방식의 경우는 신부가 입국하지도 않았는데 잔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담사례 1

국제결혼을 계약함. 업체에서 신부를 입국 시킨 후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입국 전에 잔금을 지불하라고 함. 소비자는 잔금을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상담사례 2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자와 결혼식하고 옴. 선금 500만원 지불하였음. 신부가 오지도 않았고 비자 발급도 안된 상태인데 잔금 요구함. 일반적으로 모두 마무리 된 상태에서 잔금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함.

상담사례 3

국제결혼 상담소를 통해 자녀의 국제결혼을 천구십만원에 계약하고 200만원 계약금 지불한 후 베트남으로 감. 베트남 아가씨와 성사가 되어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함. 현재 2번 베트남을 다녀오는 동안 계약된 금액외에 7월 1일 58만원과 가이드비용 40만원을 더 지불하라고 하여 지불했다고 함. 현재 아가씨가 국내비자를 받아 국내에 오면 결혼식을 해야 하는데 업체가 전체비용중 200만원만 지급이 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받지 못할 우려때문에 공증을 서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함.

상담사례 4

신청인은 2012.1.11. 피신청인과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함. 그해 2.11.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함. 신부의 입국과정에서 5.24. 비자를 발급받았고 5.26. 입국과정에서 출국금지가 되어 신부의 비자기간 경과로 입국이 지연되는 등의 일이 발생해 비자 재신청을 하여 2013.1. 비자가 재발급되었으며, 1.15. 신부의 입국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계약금액(980만원) 이외의 금액인 항공권 대금(60만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해서 신부의 입국이 또다시 지연될 것을 우려해 선 지급후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신청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이외의 금액인 항공권 대금 60만원 조속한 반환을 요구함.

업체가 계약과 달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례 1을 보면, 신랑신부의 나이차이가 많으며 여성이 국제결혼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이다.

상담사례 1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 계약에 없던 추가요금이 발생됨(베트남은 국제결혼 가능지역과 불가지역으로 나뉘져 있고, 국제결혼불가지역의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가능지역으로 주소 변경해야함. 변경시 추가비용 250만원~300만원이 듦. 소비자는 추가비용 지불하지 않았음).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하였음. 인터뷰과정을 통과하여야 신부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으나, 인터뷰에서 떨어져 신부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없는 상황임. 소비자의 신부는 국제결혼 가능지역에 거주하므로 추가비용이 필요치 않음. 사업자는 인터뷰에서 떨어진 이유를 소비자와 신부의 나이 차이가 16살 이상이고, 장인, 장모보다 나이가 많으며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함. 소비자는 신부와 나이차이나 결혼중재측에서 고려하여 소개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함. 소비자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원치 않는 추가비용 지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비용이 자꾸 추가되어 350만원~4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상담을 신청함.

상담사례 2

자녀의 결혼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국가의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 업체를 방문함. 1500만원인데 1백만원 할인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우즈베키스탄은 처음 진행하는 국가이고 직접 현지에 가서 성혼을 성사시키겠다는 조건으로 1600만원에 계약 체결함.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여 현금으로 입금처리를 하였음. 그 이후로 2900달러를 신부측에 전달한다며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현지에서 사용할 개인 경비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함. 처음의 조건과 다르게 계속적으로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점 때문에 업체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에 해지를 하겠다고 하였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함. 처리 절차 문의

상담사례 3

국제결혼중개업체에 1,00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니 해당 업체는 계약서없이 진행한다고 함. 관할 구청에서 감사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000만원 지불하면 추가비용이 없이 결혼이 진행된다고 함. 현지에 가니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다고 해서 120만원을 지불함. 또한 업체 과실로 다시 몽골로 출국해야는데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킴. 관할 구청에 신고하니 관련 서류를 접수시키라고 하는데 소비자원 도움도 필요함.

상담사례 4

2011.10.5쯤에 국제결혼상담소와 계약을 함. 몽골여자와 국제결혼을 하려고 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본인들은 한번도 계약서를 작성해 본적이 없다고 하며 안하려고 함. 정해진 계약서 내용은 아니지만 보증인도 세우고 수기로 간단하게 계약서를 작성함. 계약할 때 천만원이외에 추가비용은 절대 없다고 했었음. 얼마 후에 군청에서 감사가 있다고 하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연락이 옴. 재작성시에도 추가비용은 내지 않는다고 계약서 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음. 지금까지 몽골을 2번 정도 갔다 왔고 원래 항공료, 숙박료, 렌트비용 등 모두 업체에서 내는 것인데 1차때 이틀 연장한 것과 2차때는 항공료만 지불하고 숙박료, 음식비용, 렌트 등은 소비자가 부담을 했음. 지금까지 쓴것에 대해 영수증은 받아놓고 있음. 월요일에 3번째 가는 것이고 소개해준 여자와 계속 만나고 결혼까지 할 생각임. 업체에서 추가비용을 안내면 더이상 진행을 못한다고 함.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벌써 몇번이나 냈었음. 그래서 영수증은 끊어냈음.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5조1항에 천만원 이외에 더 이상 추가비용을 내지 않는다고도 적혀있음. 1,150만원정도 줬는데 그 중에 예상장 임대료, 신부화장, 패물 등등 모두 포함이고 잘봐달라고 초기에 개인적으로 30만원을 줬었음. 추가비용 냈던 것을 모두 환불받고 싶는데 가능한 지. 계약서와 영수증 등 모두 가지고 있음.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남자는 한국인이고 남자가 거의 일을 하고 부인은 몽골여자라고 함.

상담사례 5

신청인은 수원소재의 크리스탈국제결혼정보회사와 계약하고 필리핀의 신부와 결혼식을 7월

에 하였고, 혼인신고는 한달전쯤 했는데, 신부를 한국으로 오게 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
다며 결혼정보업체에서 협박성 전화를 함.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지불할 수 없다. 계약을 해
지해 주고 환급해 달라 하니 피신청인은 계약금 환급 거부함.

상담사례 6

신청인은 2012.4.9. 피신청인과 국제결혼 계약을 하며 제반비용 1050만원을 지급, 2012.4.22.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여성과 합동결혼식을 올림. 베트남의 경우 통상 2~3개월후 신부
거주지 가정법원에서 인터뷰를 합격하고 2~3개월후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아야 신부가 한국에 입국이 가능한데, 피신청인은 신부 주소지인 컨터지역은 인터뷰가 6~9
개월 정도 걸리고 합격 또한 어렵다며 다른 지역으로 위장전입하여 인터뷰할 것을 권유하여,
174만원을 추가 지급하였음. 그런데 2개월후 신부 거주지인 컨터지역에서 인터뷰를 하여 합격
함. 이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 174만원의 환급을 요구하니 거절함. 추가지급한 174
만원 환급 요구.

6.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라는 범주에는 신부가 돈을 빌미로 입국을 지연하는
경우와 일방적으로 신부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신부의 비
자발급 문제 등이 있다. 신부의 입국지연과 연락두절, 입국거부는 신부의 고의
에 의한 것이다. 특히 입국을 지연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1, 사례 2, 사례 3).

상담사례 1

작년에 외국에서 결혼하고 왔는데 결혼상대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300불) 여자쪽에서 다
시 500불을 요구하여 소비자는 400불을 보내줬다.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 서류를 신청하였다
고 했는데, 전화해보니 접수자 리스트에 없었다. 결국엔 비자를 만들었지만 여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연락도 없고 무책임하게 느껴진
다. 신부쪽은 남자가 돈을 붙여주지 않았으니 약속을 안지켰다고 예정된 날보다 늦게, 3~5월
쯤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일단 2월까지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해둔 상태이
다. 만약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비용 1500~2000만원과 혼인신고 취소신청 비용
을 모두 환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다.

상담사례 2

신청인은 2012.1.28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 소개로 피신청인을 만나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기로 하고 1200만원에 계약함. 2012.2.28 함께 필리핀으로 가서 신부 이닛야셀엠과 결혼식을 하고, 3개월 후, 신부는 한국으로 올 것을 약속하고, 신청인 먼저 귀국함. 신부는 신청인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으나, 2013.1.4까지도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전화하면 돈을 요구함. 신청인이 돈을 보내주면 신부는 서류 비용이 필요하다, 비자가 잘못되어 갈 수 없다고 하였으며, 지금은 "나도 모른다."고 함. 신청인은 결혼을 위해 1,050만원/ 함께 필리핀을 가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결제하였으며, 집세명목, 비자재발급 비용, 생활비 명목 등으로 신부에게 2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고, 신혼 살림을 위해 2,000만원 소요됨. 신청인은 1050만원 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2012.12.21 발송한 바, 조속한 환급 요청함.

상담사례 3

1년6개월전에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국제결혼을 하였음. 대금은 2,500만원을 지불하였음. 혼인신고까지 하였지만 신부는 한국으로 나오지 않음. 돈을 주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신부가 나오지 않으니 돈을 주지 않는 것임. 신부가 연락이 와서 아이를 낳았으니 양육비를 보내라고 함. 소비자는 신부와 살지도 못하는데 양육비를 보낼 수 없음. 지불한 대금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함.

금전적인 요구없이 신부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은 처음부터 결혼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상황에 의해 결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은 어머니가 아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입국을 거부하고 있었다.

상담사례 1

국제결혼중개 신청하여 결혼이랑 혼인신고까지 다 함. 2012.4월 초나 중순에 신부가 귀국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되고 신부가 사라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함.

상담사례 2

40대 후반 막내동생이 해외국제결혼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고통을 알리고자 문의함. 2012/6월 1천250만원 지불했고 1차 방문해서 결혼식 올리고 1주일 머물고 돌아왔고 이제 베트남에서 신부가 와야 하는데 회사측 말로는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음 달이면 신부가 와야 하는데 친정엄마가 아프다면서 오지 않겠다고 하고 더이상

노코멘트이다.

상담사례 3

본인의 아들이 2012.7.13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을 하였음. 2012.7.21 한국으로 도착을 하였음. 필리핀 여자가 한국에 나오지를 않음. 현지에서 생활비를 달라고 하였다고 함. 25만원 생활비를 보냈음. 3개월 동안 70만원을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필리핀에 보냈음. 필리핀에 여자가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직장을 다녀서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함. 2012.11.4 내용증명을 국제결혼정보업체에 보냄. 업체가 문자를 보냈고 민사문제이니 법적으로 잘알아보라고 하였음. 2012.11.7자로 사업자명, 주소변경을 하였다고 함. 결혼조건으로 아무조건이 없었음. 필리핀에서 여자가 한국에 오겠다고 결혼정보회사에서 이야기를 하였음. 이즈음에서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였음. 업체에서는 비용을 요구함

상담사례 4

신청인이 국제결혼 계약을 함(2011년 1월 -1050만원). 2011년 1월 19일 베트남 현지에서 국제결혼을 함. 10조 2항. 신상정보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이고 베트남에서 신부 주소지 이전한다고 추가비용 별도로 요구하여 144만원 지불함. 영사관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신부가 변심을 하여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한 후 연락두절, 실종됨(2011년 8월). 이에 계약시에는 한국에 입국할때까지 책임진다고 했음. 계약불이행으로 신청인이 납부한 금액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상담사례 5

1년전 시동생이 국제결혼을 업체에 문의하여 계약금과 행사진행비로 1,600만원을 입금하였음. 우즈벡 방문하고 아가씨를 맞선하고 혼인 신고함. 신부가 들어오길 기다렸으나 신부가 오지 않음(업체에서 모르는 상황). 현재 이혼절차 밟는 중 업체에 계약해지를 원하고 반환받으려 하나 업체에서는 다른 신부감을 소개해준다고 함. 본인은 이를 원치 않음. 실질적 결혼이 성립이 안된 상황이고 시동생이 일도 빠진 상황이고 임신했다하고 50만원을 요구하기까지하여 맘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손해가 많음. 내일 이혼소송 밟는곳에 업체도 오기로 하여 업체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해함

상담사례 6

베트남에서 국제 결혼을 하였음.(2011.11.3.) 한국에 입국하여 2012.9.8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음. 베트남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신부가 실종이 되었음. 베트남에서 신부가 입국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입국도 하지 않으며 전화통화도 되지 않고 있음. 결혼무효와 환불을 받고자 함.

또한 신부의 고의가 아닌 상황에 의해 신부가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경우는 영사관에서 결혼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거나(사례 1 등), 영사관에서 위조서류를 확인한 경우(사례 2)로 나타났다. 즉 신부의 미입국은 대부분 신부의 사기결혼에 대한 혐의에 그 원인이 있다.

상담사례 1

작년 9월에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중국여성과 결혼을 하였는데 얼마전 신부측에서 혼인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자조건이 거부됨. 현재 와이프는 중국에 가있는 상태임. 결혼업체와 계약시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불을 해준다고 구두로 했음.

상담사례 2

국제결혼중개를 받기로 했는데 결혼상대가 안옴. 영사관에 문의했더니 서류가 잘못됐다고 함. 서류가 위조 됐다고 하며 통가가 안된다고 함.

상담사례 3

국제결혼을 계약을 혼인신고도 양국에 다 했다고 함. 예식도 함. 신부가 중국 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을 해서 나와야 하는데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거부하여 입국이 안됨. 신부가 입국이 안되어서 책임을 저달라하니 영사관에서 거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함. 오산 가정복지과에 진정서도 제출을 한 상태임. 불법행위는 진행중이라 함. 신부의 신상정보 미제공 등으로 불법영업을 신고하여 해당 복지과에서 조사중이라고 함. 신부가 입국심사에서 거부당한 이유는 입국 후 자꾸 취업을 할려고 한다고 했다 하며 신부의 채팅 사이트에 다른 남성과 여보라고 하며 채팅을 나눈 근거도 있다고 함. 그래서 영사관에서 심사하면서 혼인의 진정성이 안 보인다고 입국거절함. 이런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사례 4

신청인은 2011.11.17. 피신청인을 통해 중국 한족여성 한국에서 맞선을 보고 혼인하기로 합의하여 국제결혼중개계약서와 성혼합의약정서를 작성함. 2012.1월경 신청인도 중국으로 인사차 다녀왔는데 당시 신부는 신청인을 피하며 취업 부분만 강조하였고, 2012.3월경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는 채팅사이트에서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확인함. 양국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친 후 2012.3.9.로 피신청인에게 잔금을 결제해 1,150만원을 완납하였는데, 계약서상 잔금 2백만원은 신부 입국시 결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완납한 것임. 그런데 신부가 주선양총영사관에서 사증 심사 중 혼인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해 현재까지 신청인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임. 신청인은 신부가 취업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혼을 중개한 바, 그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중개비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총 2천만원 요구함.

7.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

신부가 가출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결혼을 위해 썼던 비용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보면 사기 결혼, 위장결혼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남성과의 불화로 인해 가출한 경우도 있었다(예를 들어 사례 3).

상담사례 1

동생이 국제결혼을 하였는데 신부가 한국에 와서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가출을 하였음. 신부를 찾지 못함.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이혼을 하라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음. 계약서에는 신부가 한달 이내에 가출을 할 경우 다시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비용의 50%를 감면하여 준다고 함. 소비자는 다시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대금 중의 50%를 돌려 받고 싶음. 대금으로 돌려 받을 수 없는지 문의 함.

상담사례 2

신청인의 아들이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진행하여 3개월정도 결혼 생활 유지 후 배우자가 친정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며 베트남으로 보내달라고 해 보내줌. 그 과정에서 중개 사업자도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면 보내는 것이 맞다고 하여 결국 베트남으로 보내주었는데 결국 배우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한국으로 입국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집에 돌아 오고 있지 않음. 현재 경찰에 실종 신고한 상태. 또한 확인해보니 어머니는 사망한 상태가 아님. 계약서상에는 성혼 후 배우자 과실로 가출한 경우 소비자가 일부 자비 부담하여 재결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자비 부담할 능력이 없어 계약을 해제하고 그동안 소요된 비용 반환 받고자 함.

상담사례 3

작년 6월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국제결혼을 하기로 함. 이틀을 함께 있다 가면서 3~4개월 뒤 온다고 하면서 계속 그 곳에 가서도 용돈을 요구 함. 중국에 혼인신고를 해서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하여 혼인신고를 함. 그 사람이 와서 친구랑 술자리를 하는 자리에서 밤늦게 휴대폰을 계속 하여 화가 나서 야단을 치면서 한 대 때림. 그 뒤 경찰관을 데리고 와서 소비자를 폭력을 사용하는 남자로 취급함. 그리고 그 뒤 도망가 버림. 잠자리 거부, 휴대폰 숨김 등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음. 검증도 되지 않은 여자를 소개해 주고 돈만 나눠 가지는 그런 업체가 부당하여 문의.

상담사례 4

2009년 11월경에 국제결혼(베트남)접수를 하였음. 결혼을 빨리하라고 하여 대금을 입금함. 2009년 12월에 결혼함. 오라 가라하여 3번을 방문하였음. 나중에는 고자라고 하여 1000만원 요구함. 결혼정보회사에서 이혼을 하라고 하여 이혼하였음. 호적에 올라오지 않고 헤어졌음. 2010년 3월경에 2차로 다시 결혼을 하였음. 서류를 해 준다고 하니 서류를 할 줄 몰라 60만원을 요구하여 서류를 하였음.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를 꾸몄음. 1년 걸렸음. 임신되어 비행기표와 출산비를 보냈음. 2012.5.1.한국에 왔음. 2~3개월 살다가 잠적하여 문의함.

상담사례 5

정부에서 농어촌 총각들 장가보내기를 했을 때 아는 동생이 그 혜택으로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함. 베트남으로 가서 결혼을 하고 처가에도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신부와 함께 들어왔음. 충남 보령에 살고 같이 잘 지내다가 남자가 육지쪽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온다고 하니 본인도 가고싶다고 해서 바람도 씌게 해줄겸 같이 갔었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잠시 화장실을 갔다오겠다고 해서 나가고서는 도망을 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있다가 억울하고 해서 얘기를 해서 들었다고 함.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상담사례 6

2011.11월경에 전주에 있는 결혼정보업체로 신청을 하였음. 작년 2011.12.베트남에 갔음. 결혼을 하였음. 2012.4.월경에 여자가 오지 않았음. 신부가 연락이 안된다고 함. 신부가 없어서 찾을 길이 없다고 함.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여 법적으로 하겠다고 함. 손해배상청구와 이혼소송을 하고 싶음. 6월 중순에 전화 와서 여자가 나타났다고 하였음. 소송 진행중이라고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함. 변호사가 나타났다고 데리고 가라고 함. 취하를 하고 보내라고 하였음. 서류가 3개월이 지나 20여 가지 서류를 다시 보냈음. 10.5. 입국을 하여 살았음. 12.22. 없어졌음. 연락이 않됨. 가출신고를 하였음.

신부의 가출과 달리, 사기결혼 및 위장결혼의 경우는 명백히 신부가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여성들은 자녀가 있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거나(사례 1), 가족관계를 속이거나(사례 2), 심지어 내연남이나 남편이 있는 경우(사례 3, 사례)도 있었다. 심각한 일은 신부의 허위경력을 업자들도 알고 있거나 공모한 사실이다.

상담사례 1

국제 결혼 함. 2011.8월부터 같이 생활 함. 한번 임신 했는데 유산이 됨. 유산후 애를 안가질려고 함. 현재 쉼터에 아내가 있음. 돈을 벌어서 친정에 보내고 있음. 아기 사진이 있는데 동생의 아이라고 하는데 믿기 어려움. 사기 결혼한 것 같음. 아내는 돈만 벌어서 친정에 보낼려고만 하고 결혼 생활 안할려고 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함

상담사례 2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 결혼을 했음. 한 달도 되지 않아 신부가 집을 나갔음. 확인을 해 보니 신부의 부모라고 했던 사람들도 부모가 아니고 다 위장한 것. 업체에서는 몰랐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인정을 함. 경찰서에 신고는 해 났는데 민사로는 어떤 처리가 가능한가.

상담사례 3

7월말 결혼정보업체 알선으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함. 한 번도 잠자리를 한적 없으며 신부가 담배를 피움. 재혼이기 때문에 3살짜리 딸이 있으며 이혼 서류 접수함. 잠자리 거부하는 이유를 물으니 베트남에 남자 친구가 있다고하여 왜 결혼을 했냐고하니 가난해서 돈벌이 하러 왔다고 함. 결혼정보업체에 문의하니 결혼이 성사되면 남편책임이라고하는데 결혼정보업체 책임은 없는지 문의함.

상담사례 4

국제결혼 소개소에 600만원 결제 등록 후 중국여자 소개받아 결혼 1주일 살았음. 살면서 확인하니 중국여자는 암치료 받으러 온 사람이며 중국에 남편이 있어 분쟁. 여자와 헤어져 600만원만 손실되어 고발함

8. 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

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에는 허위 혼인경력 제공과 허위 건강상태 제공, 기타 학력이나 직업 등 허위경력을 제공한 경우가 있다. 아래 사례에 나타난 여성은 이미 한국인 남성과 결혼 경력도 있으며, 현재도 결혼상태에서 상담신청자와 다시 중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 1

중국에서 바로 나온 상대인줄 알았는데 업체에서 국내에서 노래방 도우미, 술집등 근무 하신 분. 한국에서 몇개월 살던 사람, 신혼여행도 갔다고 함. 돈은 완납하지 않은 상태임. 계약금 100만원 구비서류 50만원 정도, 신혼여행 피해보상. 중국 여자측은 이미 결혼상태이고 그 상태로 본인이 소개 받음. 본인은 이혼한지 11년째임. 600만원 전남편이 이혼조건으로 요구한다고 여성분이 말씀하심. 3박4일 같이 지냈음. 도저히 용서가 안됨. 업체에 보상 요구함.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손쉬운 일이다. 때문에 결혼경력증명서 뿐 아니라 신체검사도 허위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례 3을 보면 신부가 간염에 걸린 상태인데 이를 모르고 결혼 후 현재는 임신까지 한 상태이다.

상담사례 1

국제결혼을 하면서 여자가 들어오기 전에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였음. 5월30일에 여자가 입국을 하였고 생활을 하다보니 여자에게 여러 종류의 폐질환이 있었음. 치료를 몇달을 하고 이후의 경과를 봐야하고 이후에도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려 이혼을 해주었음. 소개당시 여자의 건강기록에 대해서 주지도 않고 진행을 하여 발생한 일로 배상 요구하니 소개를 하고 여자를 입국하였다면 끝이라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함.

상담사례 2

국제결혼 후 현재 이혼한 상태임. 외국인 아내가 신부전증과 자궁난종으로 병원에 입원 하였다가 현재는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임. 국제결혼정보사에서 외국인 아내 건강검진 받았다고 전하였으나 신청인에게는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해주지 않다고 함.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외국인 아내가 지병 있는 것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에게만 숨기고 소개해주었다며 병원비 및 병력속여서 소개 해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기 하려 하니 계약서 첨부하라고 하나 신청인 분실된 상태로 해당 사업자에게 계약서 사본 요구 하였으나 거부하였다며 계약서 사본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청하다.

상담사례 3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작년에 추진을 해서 올해 2월에 신부가 들어옴. 건강에 문제가 있어보여 문의했지만 문제없다고 했는데 와서 건강검진을 해 봤더니 간염이 있는 상태임. 신부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함. 이미 아이가 생겨 이혼을 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업체에서는 이렇다할

사후대책도 없이 사랑으로 극복하고 살라는등, 다른 사람을 재소개 시켜주겠다는등 인간적으로 할수없는 이야기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평생을 조심하며 살아야하고 언제 어떻게 나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결혼정보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건지 문의.

상담사례 4

신청인은 2011. 08.06. (주)엔비글로벌이라는 국제결혼업체와 1년 계약하고 계약금 7,800만원을 현금 지급함. 가입후 8월 중순에 중국으로 가서 소개 받아 맞선을 보게 되었고 처음엔 연락이 잘 되다 연락이 잘 안되고 남성이 전화를 받는 등 의심이 갔으나 전염되는 B형 간염에 걸려 병원치료 중이라하여 이 사실을 결혼업체에 연락하니 다른 분을 소개해 준다함. 2012.06 월경 다시 소개받은 여성과 한국과 중국에서 혼인신고도 하고 한국에 올 날만 기다렸으나 2012.09.24. 소개해준 분으로부터 신부에게 문제가 있어 한국정부로부터 비자발급을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음. 추후 사실을 알고 보니 낙태수술한 것을 위수술했다고 속였던 것이고 중국소재 한국영사관에서 결혼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비자발급이 안되는 상황이라 함. 그 후, 피신청인은 다른 사람을 다시 소개해 준다 하였으나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을 09.28.까지 요구했으나 회피하고 처리 지연되고 있음. 신청인은 혼인취소 처리를 해야하는 등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손해 등 고통이 심각하기에 허위사실로 진행된 이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계약금 환급 및 혼인취소에 필요한 비용 배상 요구.

결혼경력과 신체검사뿐 아니라 신부의 학력과 직업 등에 있어서도 허위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사례 1과 같이 남성이 키와 성격 등을 트집 잡는 경우도 있으나 사례2의 경우는 여성의 학력이 문제가 되었다. 국제결혼의 특성상 이국으로 가게 되면 결혼중개업체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비용도 소비자의 부담이 된다. 사례 3을 보면 1차 방문시 허위경력으로 인해 재소개를 받았고, 2차 방문하였으나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업체는 항공료이외 모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이다. 또한 생업을 접고 시간을 내서 간다는 것도 넉넉지 않은 경제형편을 지닌 내국인 남성들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비용 때문에 남성들은 재차 소개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사례 1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국제결혼을 하였음. 결혼을 하고 보니 신부의 키도 거짓말이고 부모도 거짓말이고 씬쌔도 헤름. 결혼을 하였지만 혼자 돌아왔음. 결혼정보업체에 계약해제를 요청 하니 위약금 500만원을 내라고 함. 계약서의 약관을 확인하니 부당약관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상담사례 2

국제결혼을 대행업체를 통해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의 정보를 허위정보를 줌. 계약서에도 신상 정보를 미리 주기로 했으니 신상정보를 주지 않았고 요청을 하였으나 주지 않음. 중국에 가면 신상정보가 있다고 하였으나 막상 가니 신상정보도 없고 소개받은 여자의 정보가 허위로 알려 주어 가족사항을 묻던 중 번역기를 통해 이야기하던 중 글씨를 잘 쓰지 못해 학력사항이 초졸임.

상담사례 3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2011년경 국제결혼하고자 중국 방문함. 1차 방문했을 당시 업체의 담당자가 소비자의 이력(직업 및 보수)을 거짓으로 부풀려 통역을 한 것이 들통남. 결혼 성사되지 않음. 1차 방문당시에는 항공비 등의 제반 비용 모두 소비자가 부담함. 일주일 뒤 2차로 방문했고, 당시 항공료만 업체에서 부담하고 그 외 제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 결혼 성사 되지 않았음. 소비자는 업체측의 과실로 인해 결혼이 성사 되지 않았으니 서류비용 70만원과 사진비용 3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함. 업체에서는 못 주겠다고 함. 소비자는 업체의 과실로 성사 되지 않았으므로 서류비용 및 사진비용 100만원을 환불받길 원함. 또한 해당 비용도 필요이상으로 업체가 과도하게 부풀려 요구한 것 같음.

9. 업체의 입국수속 처리 지연

업체의 무신경과 미숙한 일처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상담하는 남성들도 많았다. 이는 단순히 신부의 입국이 늦어지는데 따른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파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2).

상담사례 1

상기인은 3.10 국제결혼을 계약함(총1700만원 완불함.) 3/12 베트남 방문하였고 3/13 결혼식을 올림. 4.16 혼인신고했음. 7월달에 신부가 입국하기로 예정되어있는데 서류관계로 지연되고 있음. 결혼업체에는 무신경하게 해결해주지 않고 있음.

상담사례 2

신청인은 2011.9.26. 피신청인에 국제결혼비자 서류대행을 위탁하여 계약금 70만원 입금 후 나머지(80만원)잔금은 서류 작성 후 입금하기로 약속함. 2012.1.18. 피신청인은 서류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접수만 하면 결혼비자가 발급될 것을 안내하여 당일 잔금(80만원)을 입금함. 이후 피신청인의 업무미숙으로 결혼비자 발급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신부의 거절로 결혼이 무효화 됨. 이는 부당하므로 수수료 150만원 전액 환급 요청함.

상담사례 3

2011년7월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베트남에서 국제 결혼을 하였음. 총발생비용: 8백5십만원. 결혼식후 신부가 현재까지 입국이 지연되고 있음. 지연 이유로는 허위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베트남 하노이 대사관에 적발 되었음. 이로 인해 다른 부부에 비해 몇개월 가량 지연되고 있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 항의하자 업체에서는 2011년12월 왕복비행기값을 대신 지불해 준 사실밖에 없다. 재인터뷰시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약속했으나 약속 담당자가 베트남에 있음. 이 모든 일처리가 신속히 되어 신부가 하루속히 입국하길 바란다.

상담사례 4

2010.4.25 국제결혼정보업체와 국제결혼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서에 의한 비용지불 850만원과 환율에 따른 추가비용 100만원 지불함. 성혼이 이루어졌다가 부인이 적응을 하지 못해 이혼을 하고 출국을 하였음. 해당업체에서는 미안하다며 재 중매를 추진하였고, 2011년 6월 13일 재계약하면서 항공료 58만원, 110만원(신부측) 추가로 지불하였으며 베트남 여성분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비자 미발급으로 인해 본인의 입국은 진행되지 않았음. 베트남에서 결혼서류가 위조라며 2011.11~12월경 전북경찰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 5월달에 외교부에서는 기존 서류를 모두 폐기처분하였으므로 정식절차를 밟아서 재서류를 구비하라고 함. 그러나 국제결혼정보업체에서는 신부측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며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음.

상담사례 5

2012.7.2 수원에 있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기로 계약함. 계약후 베트남에 들어가 결혼식도 올림. 결혼식후 한국으로 오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있음. 주소변경 해야 한다면 1500불을 보내라고 하여 보내고 현지 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하였음에도 진행된 것이 없는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여 문의

10. 업체의 폐업 및 연락두절

업체가 남성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고 이에 대한 보상이나 후속조치없이 폐업한 경우, 남성들이 입는 피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결혼이 성사되었는데, 업체가 폐업되어 여성이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어 상담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고(사례 1), 이미 계약을 하고 선불을 주었는데 업체가 폐업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다.

상담사례 1

2년전에 결혼상담소에서 국제결혼 신청하였음. 중국에 있는 여성분이 서류가 잡되어 여자가 나오지 못하였음. 2012.1.6. 통역사가 관광으로 돌려서 해 주겠다고 돈을 1,150만원을 요구하여 주었음. ○○○○는 폐업되었음. ○○○○로 결혼상담소에 있다가 폐업으로 통역사가 개인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해결해 주지 않아 문의함.

상담사례 2

국제결혼을 위해 작년 12/14일 계약을 함. 아무런 연락이 없고 간혹 연락이 되면 좀 기다리라는 안내만 받음. 이상하여 확인하니 1월에 폐업신고가 됨. 폐업이 되었어도 홈페이지에서 모집광고가 진행되고 있음. 사기가 아닌지 문의

상담사례 3

사업자, 라오스 신부측에 각 700만원 이상 지급함. 현재 신부는 여행 비자로 온 상태로, 결혼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다툼이 발생함. 총 3개의 사업장과 연계된 건. 1개 사업자와의 거래는 해지, 나머지는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국내 사업장은 폐업하였

고, 라오스 현지 사업장만 남아있다고 함.

상담사례 4

상기인은 결혼 정보 업체에 2012년 9월6일 2백2십만원 직불카드 일시불 결제함. 업체에 전화 하면 기다려라 곧 현지 서류 도착 하면 해결 해준다고 하면서 기간만 끝다가 회사가 11월~12월 사이 폐업을 했다고 함. 진주센타장 전화 받지 않음. 본사전화 하면 부서에서 잘모름. 사장님한테 올려 놓았다 진주 지사는 폐업을 했고 본사 사장님이 공탁금 걸어 놓은것이 있으니까 1월31일 까지 해결해 준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냥 놔둔다고 함. 계속 핑퐁 치기를 하면서 해결해 주지 않고 있음. 본사에서 진주에서 사고 치고 본사 에서 해결 하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맡아서 해결 해주냐고 함.

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공식적으로 업체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사례들이다. 이에 반해 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는 공식적으로 폐업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미 선금을 낸 상태인데 결혼은 진행되지 않고 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아 이로 인해 소보원에 상담을 신청한 경우들이다.

상담사례 1

결혼정보업체에 대금을 결제하고 성사 될 때까지 소개를 받기로 했다. 6개월 정도 소개를 해주지 않아 잊고 있었음. 최근 전화를 해 보니 없는 번호로 나왔음. 휴대폰으로도 전화를 해 봤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함. 분명히 동일한 사람 같은데 최근에 휴대폰을 구입했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담사례 2

오빠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등록을 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지불함. 구두로 여러 가지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않은 상태로 날인을 한 상태임. 오늘이 비행기 티켓값을 입금하는 날인데, 며칠 째 업체와 전혀 연락이 되지않아 불안하여 입금을 안하고 있음. 이런 경우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담사례 3

작년 6월 국제결혼업체에 1천2백만원을 내고 계약함. 9월 하노이로 출국하다. 150만원을 용돈으로 챙겨가야 한다고 함. 소개받은 여자와 하노이에서 결혼을 함. 9월 17일쯤 신부가 한국으로 오기로 했는데 업체와 연락이 잘 안되기 시작함. 신부가 한국으로 안온다고 하여, 업체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함. 파혼이 된 부분에 대해 다시 계약을 이행하기로 이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음. 이행계약서에 원래 1350만원 청구된 부분과 이행하지 않을시 형사고 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빼달라고 하여 빼주다가 12월에 다시 출국하여 소개를 받아 4월에 신부가 오기로 했는데 추가비용이 8~9백만원 정도 들었음. 업체의 명의로 다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사기업체인 것 같음. 계약도 집앞에서 함.

제2절 심층면접에 나타난 피해사례

1. 사례의 개요

면접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2.7세이고 여성과의 연령차는 17.2세이다. 이들의 직장을 보면 단순노동자에서 기술노동자, 개인사업자, 회사원, 공무원까지 다양하다. 연령은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이며 여성과 가장 연령차가 적은 남성은 1살이었고 가장 많은 사례는 29살이었다. 여성들의 모국을 보면 베트남이 9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표 5 피면접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업	결혼당시연령(남성)	거주지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배우자와 연령차
사례1	철물건재	45세	춘천	베트남	20살
사례2	건설기계 대여업	38세	제천	베트남	12살
사례3	학교교직원	46세	제주	우즈벡	18살
사례4	아파트 관리원	34세	성남	베트남	13살
사례5	개인택시	55세	전주	베트남	29살
사례6	크레인기사	49세	의정부	베트남	28살
사례7	방앗간	35세	서울	필리핀	10살
사례8	퀵서비스	47세	서울	필리핀	21살
사례9	건설노동자	45세	고양	베트남	24살
사례10	마사지샵	49세	서울	중국	1살
사례11	굴삭기기사	47세	의왕	베트남	27살
사례12	건설회사원	41세	안산	베트남	21살
사례13	무직	41세	서울	필리핀	19살
사례14	전기기사	34세	용인	베트남	16살
사례15	회사원	43세	파주	필리핀	9살
사례16	공무원	49세	서울	필리핀	20살
사례17	생산직	33세	부산	네팔	7세
사례18	무직	38세	부산	중국(조선족)	15세

피면접대상자들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사례들일 것이다. 18명의 피면접 대상자중 15명이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이며 그중 세명의 남성은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였다. 세명중 한명의 남성은 정부의 도움을 얻어 아이를 되찾을 수 있었으나 나머지 두명은 자녀가 배우자의 모국에 있다고 한다.

사례 1

병든 아버지가 돌아가시전에 며느리를 보여드리기 위해 국제결혼을 하였다고 함. 이후에 배우자가 베트남 대사관을 보내달라고 하자, 남성은 중개업체에 물어보고 나서 대사관에 보내주지 않았음. 그러자 배우자는 한국에 들어온지 약 한 달만에 가출을 하였음. 남성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자 여러 곳에 수소문 하였고, 배우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구미에서 낙태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함. 배우자가 가출한 당시 약 300만원 정도의 패물을 가지고 나갔다고 함. 이와 같은 피해로 남성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조사해가면서 배우자가 이번 자신과의 결혼이 초혼이 아닌 재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함. 현재 자신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 잘 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면접에 임하게 되었고 국제결혼의 실상이 왜곡되었다고 함.

사례 2

부모님의 권유로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다. 국제결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맞선 전에 신상정보내용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했지만, 업체 측에서 간단한 동의서 한 장으로 신상정보내용서로 둔갑시켰다고 함. 이것은 여성이 혼인경력, 주요범죄경력, 직업, 건강진단과 같은 기초적 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국제결혼 남성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함.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온 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입덧을 심하게 하였다고 함. 그러면서 배우자는 베트남에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였으며, 남성은 배우자가 입덧이 심해 베트남에 보내지 않았음. 하지만 배우자의 고집으로 보내주었으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함. 그래서 남성은 지자체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기존에 이러한 민원제기를 한사람이 없어서 덮으려고 하였다고 함. 이와 같은 피해사실로 현재 소송 중임.

사례 3

국제결혼에 관심이 없었지만, 영어연수 후에 관심을 갖게 됨. 외국인 지인을 통해 국제결혼을 하게 됨. 결혼 후에 이렇다 할 갈등 없이 잘 지냈지만, 몇 년이 지나 피면접자의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함. 또한 한국에서 우즈벡 남성을 따로 만나는 등 점점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함. 배우자가 애인의 도움으로 아이를 우즈벡으로 유괴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직접 우즈벡으로 가서 아이를 데려오는데 성공했다고 함.

사례 4

국제결혼에 관심은 없었으나, 친구가 자주 국제결혼이 좋다, 좋다고 하자 솔깃해져서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함. 베트남에 가기 전에 상대 여성의 사진을 보고 갔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현지에서 그 여성이 없었다고 함.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해지 시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어, 마지못해 진행을 시켰음. 결혼식 후에, 초야를 보내려고 했으나, 생리를

핑계로 거부하였음. 또한 신혼여행에서도 자신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고, 현지 여성들과 물려다녔다고 함. 한국에 와서는 남성의 집을 보고 실망하고, 핸드폰을 사달라고 떼를 쓰며 밥을 안 먹는 행동을 보였다고 함. 이런 일이 있고 몇 일이 지나지 않아 가출을 하였고 이에 대해 혼인무효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함.

사례 5

자식을 낳기 위해 국제결혼을 생각하게 됐다고 함. 중개업체가 남성의 나이가 많아서 돈을 따로 더 받았음. 남성은 한차례 맞선 후, 중개업자가 다시 한 번 맞선을 보라고 하자, 싫다며 거부하였으나, 중개업자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여 보라고 종용함. 두 번째 맞선 자리에서 중개업자는 남성에게 인쇄된 종이 한 장을 꺼내 싸인을 하라고 하였다고 함. 남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채 서류에 사인을 하였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 나이가 많아 돈을 더 내겠다는 계약서였다고 함. 또한 남성이 준비한 예물을 상대 여성에게 전하지도 않았고, 남성이 이익을 제기하자 업자는 상대 여성이 예물을 팔 수 있어서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였다고 함. 그리고 상대 여성은 아예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재 혼인관계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함. 이와 같은 피해사실로 업체의 계약위반,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을 하였으나, 패소를 하거나 소송자체가 성립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사례 6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에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됨.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던 중 한 개의 업체를 선택하게 됨.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금액과 기타 세부내용들이 있었지만, 실제 진행되는 상황은 상이했다고 함. 그 중 추가금액, 상대 여성이 달랐던 점을 꼽았음. 현지에서 결혼할 당시 배우자는 매우 상냥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보였다고 하나,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는 매우 냉정하게 보였다고 함. 또한 오자마자 한국남성의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고, 남성이 알려주지도 않은 한국내 기관단체의 전화번호들을 적어왔다고 함. 시간이 지나고 남성이 자신의 집 전화 목록을 확인하였을 때, 배우자가 기관단체에 전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함.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는 가출을 하였음. 그 외에 배우자가 결혼남성을 창피해 하는 등의 행동들을 보였다고 하였음. 이와 같은 피해내용으로 남성은 혼인무효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한 상태이다. 위자료는 받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사례 7

국제결혼을 하고 나서 남성의 친형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가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게 됨. 이 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된 배우자는 남성이 자신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주장하며, 남성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했다고 함. 또한 비자만료일이 가까워지자 배우자가 남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 비행기 샅까지 요구했다고 함. 배우자의 소송제기 이유는 자신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고 또한 가출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쫓겨났다고 주장을 했다고 함.

남성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함. 이러한 과정 중에 배우자는 여러 센터나 단체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함. 이러한 과정 중에 배우자는 여러 센터나 단체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함. 실제로 남성이 배우자에게 위협이나 비인간적인 대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인권단체나 다문화센터는 배우자의 말만 믿고 편을 들었다고 함.

사례 8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현지에 가기 전에 홈페이지를 먼저 둘러보고 현지 여성들의 사진을 확인하였으나, 실제로는 달랐다고 함.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성은 한국에 와서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배우자가 남성에게 전화를 해 러시아로 가버릴 것이라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함. 결국에 배우자는 한국에 들어와 같이 약 한 달 정도 살다가 비자갱신을 위해 우즈벡으로 다시 나가게 되었고 두 달 정도 후에 돌아왔는데, 남성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한 상태였다고 함. 배우자는 한국에서 입국한 후부터 남성에게 자주 화를 내고 자신의 가족이 병이 걸렸다는 등 남성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함. 하지만 남성은 국제결혼을 진행하면서 돈이 부족했고, 주기 어렵다고 하자 집을 나가겠다고 함. 처음에는 남성이 말려서 가출을 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말려도 말이 통하지 않자 그대로 가출을 했다고 함. 현재는 재판이혼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행동들을 보인 국제결혼여성들이 다시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음.

사례 9

부친의 도움으로 업체를 소개받고 국제결혼을 진행하게 됨. 국제결혼을 하고 나서 오년 만에 친정을 방문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아이와 함께 더 있다가 가겠다고 하자, 남성이 더 일찍 귀국했다고 함. 그런데 들어올 시기가 지나도 배우자와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남성의 아버지가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배우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아이는 내 아이니 장사하면서 내가 키우겠다고 말했다고 함. 하지만 백방으로 수소문한 결과 배우자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함. 이러한 일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고 함. 남성은 자신의 아이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판에서 판사가 양육권은 여자에게 주겠다고 함.

사례 10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 결혼이 아니고, 여성이 자신에게 먼저 접근해서 자신과 서류상으로 국제결혼을 해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결혼을 결심하게 됨. 결혼을 하고나서 남성의 마사지샵에서 상주하며 일을 하였고, 남성의 집에서 지내진 않았다고 함. 하지만 언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나올지 몰라서 남성의 집에 배우자의 옷, 소지품 등을 두었다고 함. 또한 배우자는 서류상 결혼으로 처리가 되어있어 한 번 정도의 성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함.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지만, 실제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함. 혼인신고가 되고 나서부터는 배우자는 가게의 모든 수입원, 경제권 그리고 재산권을 달라고 주장했다고 함. 그리고 남성은 배우자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지만, 여성이 남성을 상해죄, 폭행죄로 두 번이

나 고소를 했다고 함.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가자 남성은 자신의 위장결혼을 자수했음. 그러나 재판에서는 위장결혼이 인정되지 않았고, 현재는 이혼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하였음.

사례 11

친구의 소개로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생활을 4~5년 정도 지속함.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안 데려가냐는 전화에 배우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됨. 결혼생활을 할 당시에는 큰 갈등은 없었으나, 배우자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함. 남성이 생각하기로는 일부러 배우자가 자극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함. 배우자의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 남성이 한 차례 배우자에게 손을 댄 적이 있다고 하였고, 그것이 전부였다고 함. 처음 국제결혼을 할 때에는 금전적인 요구는 없었으나, 하고 나서는 자기 가족이 아프다, 사고가 났다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금전요구가 있었다고 함. 또한 국제결혼을 소개한 친구는 남성에게 1500만원을 받고 그 것을 처갓집에 주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약 100만원 정도의 돈 밖에 주지 않았다고 함. 그 후에는 남성이 사 준 노트북, 카메라 등으로 애인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함.

가출한 후에 남성은 배우자를 어느 공단 근처에서 다른 베트남 남성과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데려오지 못했고 다시 한 번 찾으러 갔을 때, 데려왔다고 함. 데리고 와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월경이 없자 이를 의심스럽게 여겨 임신테스트를 하였음. 그 때 임신인 줄 알았다고 함. 그래서 남성은 어떻게 할 건지 배우자에게 묻자 베트남에 가겠다고 하며, 비행기 값과 수술비 모두를 책임지라고 말했다고 함. 남성은 대답하였지만 계속 배우자와 살 요량으로 수술비를 부담하였지만, 다시 가출을 하였다고 함. 그 과정에서 아이의 양육이 어려웠고, 아이는 이유 없이 우는 등 안정적이지 못했다고 함. 일전에는 배우자가 아이와 함께 베트남에 갔을 때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고, 남성이 돌아오라고 하자, 비행기 값과 생활비 일부를 요구했다고 함. 현재 배우자에 대해 가출과 간통신고가 접수 된 상태라고 함.

사례 12

국내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 맞선을 보기도 하였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언론에서 국제결혼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국제결혼을 결심했다고 함.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개업체를 알게 되었고, 그 카페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장점들이 있었다고 함. 배우자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남성에게 가족이 아프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했었음. 또한 현지에서 사용되는 생활비 일부와 배우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했다고 함. 한국에 들어와서도 배우자는 남성에게 돈을 요구했음. 나중에는 배우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남성에게 주장했으나, 남성은 배우자가 한국말도 서툰고 한국사회에 대해 잘 몰라 아직은 때가 아니라 여겨 반대를 했다고 함. 이후에 큰 갈등은 없었으나 배우자는 가출하였음. 가출 후에 메신저로 남성에게 자신의 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돈이 필요했다고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고, 남성은 그러면 들어와서 여기서 하라고 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함. 현재 혼인무효소송은 승소한 상태이지만 배우자 쪽에서 항소를 해서 다시 진행 중이라고 함. 또한 업체는 폐업상태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어렵다고 함.

사례 13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임. 교회에 교인중 한 명이 자신의 아들이 결혼할 수 있다고 솔깃하였고, 지금 국제결혼을 하지 않으면 장애자는 결혼할 수 없다는 말에 아들의 국제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함. 처음 국제결혼을 하게 되고, 아는 사람을 통해 하는 것이라 별다른 의심을 가지지 않았음. 업자는 이 점을 이용해 정식계약서를 주지 않고 영수증만 주었고 심지어 결혼허가증조차도 주지 않았음. 결혼한 상대 여성이 들어오지 않자 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업자는 갖은 이유를 들어 시일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함. 우여곡절 끝에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을 하였지만, 남성과 같이 지지 않고 따로 내려와서 자며, 하루 종일 필리핀 영화를 보는 등의 행동으로 남성의 가족들은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고 함. 대략 50일정도 같이 살다가 자신이 가져온 물품들을 두고 돈과 전화번호를 챙기고 가출했다고 함. 이와 같은 문제로 모친은 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함. 이후에 국제결혼피해모임의 도움을 통해 업자를 대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음. 그러나 업자는 오히려 장애인에게 결혼을 시켜줬으면 다행이지, 자기네들이 잘 데리고 못 산 것을 왜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냐며 큰소리를 쳤다고 함.

사례 14

배우자 여성이 한국에 들어와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채팅 같은 것을 이용해 남자와 자주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남성의 모친이 핀잔을 주었고, 그것 때문에 사이가 별로 안좋았다고 함. 남성은 배우자가 애인이 있더라도 자신이 잘 대해주면 달라질 것이라 여겼지만, 애인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함. 어느 날은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화상채팅을 하길래 저 남자는 누구냐고 묻자 사촌이라고 하였고 남성은 결혼식 사진에 저런 남자 없던데라고 말하자, 그 때는 베트남에 있는 친구라고 하였다고 함.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됨. 배우자는 총 두 번의 가출을 했다고 하며, 배우자의 행동 때문에 남성은 직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약 네 번 정도의 이직을 했다고 함.

가출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 남성의 성질을 굶어 자극 시키는 등의 모습을 보여 남성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음. 그러자 배우자는 남성에게 2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였고, 돈이 없어 못 준다고 하자, 50만원만 일단 먼저 달라고 함. 돈을 주지 않자 배우자는 의자로 TV, 폐물 등을 부셨고, 전에 남성이 없었을 때는 칼로 부모를 위협했다고 함. 가출한 후에도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가끔 문자를 보낸다고 함. 소송을 위해 문자나 모든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고 함.

사례 15

전처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국내의 여성들에게 호감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가난한 나라의 사람이지만 순수한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에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됨. 국제결혼을 하였지만 배우자는 이미 중혼상태였고 애가 셋이나 있는 사실을 남성은 모르는 상태였음. 처음 가출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우자에 대해서 수소문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됨. 한국에 오기 전에 생활비를 현지 지사장을 통해 배우자에게 주는 형식이었음. 하지만 배우자는 돈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남성은 현지 지사장이 배우자에게 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챘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음.

사례 16

배우자와 현지에서 3박 4일간 결혼생활을 하고,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남성은 배우자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배우자가 자꾸 자신의 가족이 아프다는 등 거짓말을 자주하여 피면접자는 자꾸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냥 말한 것인데 여성은 스스로 찢려서 사실은 자신에게 애가 있다는 점을 실토함. 처음에는 중개업체도 여자에게 속았을 것을 염두에 두었지만, 나중에 중개업체와의 연락을 통해 중개업체도 배우자가 애가 있음에도 결혼을 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됨. 또한 중개업체는 남성이 내는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는데, 가령 남성에게 돈을 받고 실제 들어가는 경비의 남성이 낸 돈보다 적게 사용하여 가로챘다고 함.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했다고 함.

사례 17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온지 일주일 정도 후에 질병으로 수술을 하게 됨. 그 이후로 회사동료들과 회식자리가 있어 술 한 잔을 먹고 왔는데 배우자가 술 먹는 것이 싫다며 울고 소리쳐서 남성은 술을 안먹겠다고 함. 배우자가 자신의 친정부모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며 설새없이 남성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안절부절할 상태였다고 함. 그래서 남성은 업체에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었고, 업체는 아무데도 내보지 말라고 함.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자 배우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마저 몸이 안 좋으시라며, 자신을 2달 정도만 네팔에 보내달라고 하였고, 남성은 시일을 미루다가 결국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남성이 야간출근을 한 틈을 타 가출을 하였음. 본인은 혼인무효를 원하고 있고 피해보상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함.

사례 18

국제결혼 후에 서류가 왔는데 그 서류가 위조된 서류였다고 함. 이미 한국사람과 결혼한 상태였으나, 서류에서는 미혼이었다고 함. 그래서 남성은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으나, 장인의 부탁으로 한국에 데려와 같이 살았음. 하지만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으로 보내달라며 이혼을 하자고 함. 주변에서 애가 생기면 정착할 수 있다고 하여 애도 가져왔지만, 배우자는 애를 가진 상태에서도 이혼을 요구하고 흥기를 들고 설치고, 자살을 한다고 하며, 자해를 하는 행동들을 보임. 친정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서 배우자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아이와 함께 중국으로 갔지만, 일방적으로 소식을 끊었음.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아이는 중국에 있고, 여자 혼자 국내에 입국하여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함. 아이 때문에 온가족이 고통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면접 도중에 아이의 안녕을 걱정하며 눈물을 보임.

2. 결혼을 하기까지

가. 국제결혼에 대한 환상

국내결혼이 아닌 국제결혼을 택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동남아시아 신부에 대한 환상은 중요한 동기중 하나이다. 러브인아시아 등의 TV프로그램이나 대중매체 등에 나타난 여성들은 ‘된장녀’라고 불리는 허영된 한국여성과 달리 순수하고 마냥 착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또한 국제결혼을 한 가정의 행복한 모습은 남성들로 하여금 국제결혼을 부추기는 강력한 동인이 된다.

A: 아니, 그 때, 아버님이 그저 뭐야, 그 쪽(아버님 동네)에서, 국제결혼 하신 분이 있어요. 거기 가서 봐갖고 뭐 그거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아버님이 자주 그러시니까는 아무래도 아버님이 속으로 말을 안하시지만은 속마음이 저러시는구나(결혼을 했으면 하는구나). 뭐 그러니까는, 그 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했던 서울 용산업체에서 그 쪽에서 연결시켜줘가지고,

Q: 그 동네분이?

A: 예, 그래서 이게 베트남에 딱 가서 여자 분을 보니까는 이제 소개를 시켜주면은 이제 뭐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소개, 10분을 이렇게 봤어요. 10분 중에서 그 와중에서 제일 좀 뭐랄까, 아버님들 잘 모시고 그래야하니까, 옷도 제일 허스름하고 화장도 안하고 제일 좀 못 살아 보이는 사람으로 했는데, 그 봤을 때는 쫘 저도 뭐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냥 가장 순수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티비에서도 그런다고(순수하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죠. 하다보니까는 이 사람이 또 한 국말을 또 하더라고요.

〈사례 1〉

Q : 어떻게 국제 결혼 신청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 이제 제가 2003년 이혼을 하고 솔직히 재혼을 거의 생각을 안했는데 8-9년이 경과된 후에 큰애는 뭐 작은 애 때문에 그냥 온전한 단순한 가정구성원이 형성된 엄마아빠 애들 그렇게 그냥 애 때문에 솔직히 그냥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제가 초혼에서 한국 배우자한테 솔직히 얘기하면 작은애가 15개월 됐어요. 그 애도 버리고 간 사람이니깐 그래서 그동안 여자가 싫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었고 오히려 국제결혼을 하면 주위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사람은 순수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국제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구요. 그러면서 알다시피 TV에서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상으로 알아보다가 현지에 지소도 가지고 있고 그때는 전혀 국제

결혼에 대해 몰랐으니깐 현지 지사도 있고 하면 여러 나라 저는 필리핀 조건이었지만 베트남 필리핀 중앙아시아쪽으로도 두루 이제 경험도 있고 해서 규모도 아 믿을 수 있겠지 싶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례 15〉

Q: 특별히 국제결혼을 신청하게 된 어떤 계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A: 막말로 저기, 한국에서 저기 뭐야, 선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제 성격 탓인지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좀 인연이 잘 안됐고, 또 국제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또 하기 전에도 주변에 고향에서나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같이, 일부러 방문해서 국제결혼이 뭐 어떤가, 그런 실상들도, 가장 저기 했던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또 티비 언론에서 좋게 방송을 해주니까 그걸 또 저기했던거죠.

Q: 러브인아시아 이런거요?

A: 그렇죠. 거기서는 또 나쁘게는 방송이 거의 안되니까.

〈사례 12〉

나. 차선책으로서의 국제결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서 시작된 국제결혼이 현재는 연령대도 낮아졌고 의사, 공무원, 교사 등 전문직 남성들도 참여하는 등 고소득, 고학력자의 비율도 높아졌으나 아직도 국내결혼을 통해 여성을 구하기 어려운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Q: 어떻게 최초에 국제결혼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저는 그 늦었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국내 여성은 저한테 오기가 만무하잖아요. 차선책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사례 6〉

A: 제가 여지까지 일만 하다보니까, 그 연애를 못해가지고, 한국여자와 결혼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국제결혼을 생각한 차에 필리핀사람들이 천주교신자라고 해가지고 또 어차피 국제결혼 할 바에는 그 서로 대화가 통하는 영어권이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필리핀으로 간 겁니다.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하라고 반대는 안하시더라고요.

〈사례 7〉

Q: 국제결혼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A: 회사 아는 사람 소개로 해서했습니다. 회사 내에 결혼 도움방이라고 해서 사원들 특별혜택 같은게 있어서 처음에 회사도 워낙 괜찮은 회사니까 좋은 회사에 있을 때 결혼하려고 갔는데, 소개해주는데서 처음에 국제결혼 얘기는 없었고 국내결혼을 신청했었는데, 국내에서는 학력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고졸로는 국내에서 결혼할 사람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야 국제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사례 17〉

다. 업자의 회유

피면접자들중 업자나 여성쪽에서 국제결혼을 위해 먼저 접근해온 사례도 있었는데, 업자라 함은 반드시 국제결혼중개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업소가 아닌 개인이 돈을 받고 결혼을 중개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국제결혼에서 중개업소가 개입된 경우는 절반이 약간 넘는다고 한다. 사례 4의 경우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 결혼중개업자를 연결해둔 경우이고 사례 18은 친구의 형수가 직접 소개를 해준 경우이다.

Q: 90년 6월 10일이요? 어떻게 국제결혼을 신청하게 된 어떤 계기나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그게 이제, 몇 년 전부터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자기네 공장에 있는 베트남 여자가 있는데 자꾸 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친구한테.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할 생 각이 있는 사람이고 친구가 다리를 놔 준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한 3명 찍은 사진을, ‘통화를 해보든지 얘기를 해보든지 한번 볼 생각 없느냐. 결혼까진 안 해도 상관없다. 소개 한번 받아봐라.’ 처음에는 많이 꺼렸죠.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꺼리다가 이제 2011년 봄쯤에, ‘그래 한 번 만나볼까?’ 그렇게 된 거예요.

Q: 그럼 결혼 중개업체가 끼어 있는 게 아닌가요?

A: 아, 끼어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소개해준다는 베트남 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온갖 좋은 소리는 다하죠, 착하고 성실하고 집안일 잘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아주 그냥 찰지게 이야기 잘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소개해준 여자가 본심을 본거죠. 그 때는 이제 눈치도 못 챘고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 때 이제 딱 내가 결심할 거라, 결혼 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나를 결혼중개업 거기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을 소개시켜주고

〈사례 4〉

사례 13은 중증 장애인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교회 사람이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소개했다고 한다. 업자는 장애인이라도 결혼을 할 수 있으며, 법이 바뀌면 못하니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는 일반인과 달리 많은 돈을 요구했다. 즉 국제결혼중개업자와 연결된 사람들은 일종의 뼈끼 역할을 하면서 주변인들중에서 대상자를 물색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일정비율의 소개료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Q: 결혼중개업체를 2011년 8월말에 만났다는 말이지요?

A: 8월말에 만났는데 그 분은 **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 거기를 일하는 데를 갔더니 둘이 앉았더라고요, 그 분하고, 나는 특별한 일 이외에는 마실을 어디 안가요, 별로, 갔더니 그 분이 있더라고, 그런가보다 하고 집을 왔더니 전화가 왔어요, 나는 우리 아들 장가 들 생각도 꿈에도 진짜 누가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니 우리교회 댕기는 애가, 권사님 아들도 들 수가 있다는대요.

Q: 결혼, 교회 다니는 분을

A: 그 분을, 그 분이 우리에게 접근했다. 우리는 안 해달랬는데,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접근을 했다는 그 소리여, 그래갖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중략)

A: 10월이 지나면 못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9월 6일날인가 필리핀을 들어갔어요, 바로, 그래 갖고 우리 아들을 장애자라고 돈을 2500을 달래요, 그래서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달래냐? 내가 그랬더니 장애자라 그렇게 돈을 많이 달래요.

〈사례 13〉

Q: 국제결혼을 하게 되신 계기는

A: 친구의 형수 소개로 하게됐습니다. 형수는 조선족인데 하도 얘기를 하길래 했는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니까는 참 암담하더라구요, 친구도 사천만원 날렸습니다. 친구 언니가 인천에서 중개업소를 한다고 해서 언니 소개로 친구가 했는데 사기당했습니다. 친구의 형수니까 해주면 사기 안당하니까 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기당한겁니다.

(중략)

A: 업체는 아니지요, 업체는 아닌데, 같이 간 상태에서 브로커들하고 연관이 되있겠죠, 그니까 이 여자 쪽에서 돈을 조금 받았던지 뭐가 쫌 있겠죠, 나는 절대 돈 받아오면 안된다는 조항을 들었거든요, 그니까 한국에서 모집처죠, 쉬운말로 따지면 한국의 모집처이고, 중국에 모집처는 따로 있고, 그니까 돈이 연결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파탄이 나고, 이런거 같애요. 제일 문제예요 진짜. 여자 인성도 문제지만 중개해주는 사람 자체도 문제고, 저도 내가 그 나라말을 공부를 못했다는게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사례 18〉

사례 10은 자기소유의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면접자가 국제결혼을 하게된 계기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샵의 중국여성들끼리의 관계망을 통해 여성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여성은 국내입국을 위해 피면접자에게 금전을 약속하며 사기결혼을 제안했다.

Q: 아, 네. 그리고 혹시 이 중국 분들하고 일 하시면서 혹시 결혼 관련해서 그쪽으로 알아보신건가요?

A: 제가 이제 미혼인데 이제 중국여자관리사들이 여자직원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를 해서 뭐 모르는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갑자기 자기 국제결혼해야니까 친구를 소개해달래요. 그래서 내 주변에 친구 소개해 줄 사람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만나보라고 했더니,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친구가 놀고 있다. 싫대요. 그랬더니 나는 직업이 뭐냐고 나는 직업이 자영업이니까 나하고 국제결혼을 해달라. 어떤 여자가 갑자기 전화가 왔었어요.

〈사례 10〉

3. 만남에서 결혼까지

가. 그 여자는 벌써 시집갔어

남성들이 특정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홈페이지에 나온 미모의 여성들 때문이다. 남성들은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과 만나고자 그 결혼중개업체에 연락을 하게 되는데 막상 결혼을 위해 현지에 가게 되면, 그 여성들중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게 된다. 업자들은 여성이 남성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 결혼을 했다느니, 아파서 수술을 받았다느니, 시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느니 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다른 여성들과 선을 보도록 주선하고 감언이설로 다른 여성을 선택하도록 설득한다. 남성들은 이러한 경우에 처해도 외국

이라는 상황적 특성상 저항할 수 없고 이미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생업을 접고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온터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사례 4의 경우는 출국도 하기 전에 자신이 만나고자 했던 여성이 결혼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미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절차를 진행시켰다고 한다.

A: 그 그 친구가 이렇게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해가지고 이제 정신 쏙 빼놓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이 온거예요. 와가지고 뭐 사진 속에 있는 여자도 일주일 안에 다른 남자 채 여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하자~ 계속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한 7월 8월까지 그 때까지 딜이 갔어요. 계속 그 때까지, 계속 집에 찾아와가지고 계속 PR을 하는거예요. 아주 미치게 하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귀찮을 정도였으니까, 그러고서 결국에는 이제 훌쩍 넘어갔어요. 결국에는,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 듣다보니까 그게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보통이 아닌거예요. 결국엔 넘어가 갖고 12월달에 이제 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약금을 이렇게 딱 걸었어요. 계약금을 걸으니까 뭐 그냥 서류 준비해라, 뭐해라 일사천리예요. 그러고선 이 여자를 보러 갈라고 그러는데 계약금 딱 걸고 일주일 정도 있었나? 이 여자가 딴 남자한테 갔다는거예요.

Q: 계약금은 얼마나 거셨어요?

A: 뭐 절반정도 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육백을 먼저내고 그래도 찜찜해서 내 이거는 한 번에 다 완불 안하고 삼육 이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좀 신경 좀 써달라, 그랬어요. 어차피 계약서 쓰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일주일만에 이 여자가 (시집을) 갔다는거예요.

Q: 그러니까 선생님이 출국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던 여자는 결혼을 했다.

A: 예. 없어졌다, 이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벌써 결혼했어. 거기도 참한 여자 많으니까 거기 가서 선택을 해라. 그래 가지고 이야, 이거 계약금도 걸어놓고 이거 큰 일났네. 어떻게 해야하지, 무르면 안돼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럼 너 이거 하나도 못 받아. 그러니깐 머리가 빙 한거예요.

〈사례 4〉

A: 열 아홉 스물, 만나도 물론 스타일도 안 맞았지만 나이 차이도 최대한 좁히려 했었는데, 국제결혼이라는게 원래 거의 자기가 저도 12명을 찍고 그 회사 홈페이지를 보고 12명을 찍고 갔는데 다 소용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홈페이지에(있는 거)

Q: 그니까 우즈베크기전에 홈페이지에 나온 사진을 보고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인지 좋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없었다?

〈사례 8〉

Q : 처음에 열명을 보여줬는데 네명을 고르라고... 그 때 당시에는 사진만 보여주고

A : 상담할 적에 사진하고 이름요?

Q : 사진만

A : 처음엔 나이가 다 20대 초반이라 부담스러워가 20대 중 후반은 없냐? 없다 해가지고 20대 초반이면 충분히 결혼이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그래도 의심이 되가지고 화상맛선까지 제가 요구를 했어요, 와가지고 그래도 못믿겠다 의심이 간다 주위에서 안좋은 소식도 들리고 그러면 화상맛선으로 그 여자가 있는지 보여달라 그랬더니 중개업체 여자가 아가씨 네명 데리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 나오고 저는 제 직장 동료랑 같이 봤는데 네명 다 있더라구요, 정사장님 빨리오세요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명 중 한명하고 결혼하겠다 제 입장에서는 뭐 네명 중에 한명만 맞으면 괜찮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깐 그거 자체가 속임수더라고 거기 가서 한 여자는 다른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다고 맞선 장소에 아예 안나왔고 다른 한 여자는 제일 마음 들었던 여자예요. 영어도 제일 잘하고 개인적으로 제일 맘에 들었는데 맞선 볼때나 그전에 결혼 상담전에는 그런 얘기 전혀 없다가 제가 시어머니 아니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아요 중개업체가 그것까지 다 알거든요 거기 필리핀 가서야 (아가씨가)시어머니 못 모신다고 퇴짜를 놓고 다른 여자는(생략)...

〈사례 16〉

나. 일사천리로 치르는 결혼식과 초야

국제결혼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되었으나 본 면접에서도 피면접자들 대부분이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초야를 맞이한다. 이는 앞서도 기술했듯이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남성들이 두 번, 세 번 외국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한 피면접자는 ‘이렇게 제약이 없냐’라고 스스로 의아할만큼 결혼이 쉽게 성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남성들의 욕구들도 물론 있으나 업자들도 반드시 첫날밤을 치르도록 강권한다. 남성들 자신도 그런 상황에서 신부를 고른 것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한다(사례 5).

A: 몇 일이 아니고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그 것도 인자 다 고쳐야되겠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고쳐졌는데 어떻게 눈을 깜빡했더니 그걸로 끝나냐? 여자는 선택도 없어요. 남잡니다. 저는 더군다나 잘못된 것이 지금은 많이 개선됐는데, 차 다니는 차도에서 봤다니까요, 맞선을, 승합차에서요. 나는 정신이 없어서 여섯 명인지 알았더니 다섯 명 봤더라고, 다섯 명안에서 신부 다섯 명, 나, 운전기사, 통역사, 아까 광주놈 해갖고 아홉명이 봤습니다. 차안에서(중략) 나도 단순하게, 나도 그래요, 내 정신이

있는가, 도대체 약을 먹은 놈인가, 이해가 안가. 내가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가. 어? 나는 그래요, 어디 가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런데서 볼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길 거리 차 다니는 차도에서 막 승합차에서 빨리 보라고 쫓기는 놈 같이 막 정신없이 도대체 뭐예요

〈사례 5〉

A : 네 이차 인터뷰를 갈 때 거기서 결혼식을 한데요 솔직히 저는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일주일간 이미 휴가를 썼는데 2월달에 또 쓰는건 회사에도(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또 찍히는 건데 가긴 가야 하는데 그리고 집에서 원한다는데 그래서...

(중략)?

A : 뭐 간단해요 들어와서 이름 물어보고 그거하고 결정? 그냥 가요, 그냥 별 대화 없이 그냥 그 정도 대화만 했다가 앤(신부는) 궁금한게 없어요 일단 가는 게 목적이라서 저는

Q : 아니 그래도 ○○씨도 질문하거나 뭐 그런거

A : 질문을 하긴 했는데 딱히 할게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나이 물어보고 어디 사는지 뭐 그것도 아니고 그정도 했다가 준비할게 많으니깐 다음 날 결혼식 하니깐요

Q : 그러니깐 그 여자랑 하겠다고 하니깐 바로 다음날 결혼식

A : 다음날 결혼식을 하니깐 그 날에 서류나 병원 기록이나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날 보고 바로 간거예요 다음날 결혼식 할 때 (신부를) 봐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3-4일간 같이 있다가

Q :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치루고 첫날밤을 보낸건가요?

A : 업체 사장님이 말하는게 그거예요, 첫날 밤에 부부관계를 꼭 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가 있다

〈사례 14〉

A: 처음에는 네팔 가서 둘째 날에 맞선을 봤는데, 한국에서 가기 전에 네팔 여자분 사진을 보여주더라구요, 인터뷰한 동영상도 보여주더라구요, 12명 정도를 봤는데 2,3명 정도만 한국사람 이미지랑 비슷하길래 저 정도만 되면 괜찮겠다 싶어서 만나봐야겠다 했는데 제가 본 사람은 이틀 전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나머지 한명이 한국 사람하고 이미지가 비슷해서 만났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말씀도 잘해주시고, 한국에 오면 많이 갑갑할텐데, 솔직히 내가 학력도 안 좋고 가정형편도 잘 사는게 아니니까 잘 견디고 살수 있냐고 통역이 말을 전했는데, 자기도 한국어 공부하면서 부모님 모시면서 잘 살수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보통 여자 같으면 포기할 텐데 잘 받아주니까 감동받아서 그래서 선택했죠.

첫날 맞선 보고 둘째날 선택을 하게 됐어요. 4박 5일로 가게 됐는데, 선택하고 다음 날 시청가서 혼인 계약서에 도장찍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17〉

사례 18은 중국에서 조선족과 결혼했는데, 사진만 찍고 결혼이 성립되었다고 한다. 만약 결혼을 서둘러 하지 않고 다른 요구를 하게 되면 업자가 또 그만큼의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서둘러 빨리 여성을 고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한다.

A: 국제결혼이 희한한게, 중간에서 통역하고 하는건데에 소개해주는 형수하고 같이 갔거든요. 통역해야하니까. 그래서 서로 마음에 들면 사진 같이 찍고 그냥 끝납니다.

Q: 만난지 하루 만에 성혼이 되는거네요

A: 네. 국제결혼 자체가 그렇습니다. 만나면 사진찍고 그냥 끝납니다. 혼인서약서도 없고..

Q: 혼인서약서가 있어야 법적으로 결혼한거 아닌가요

A: 그런건 없고, 사진자체가 증거가 돼서 서류는 거기서(중국에서) 만듭니다. 이 자체가 일사천리로 넘어가버리는 거라예.

Q: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A: 결혼하려는 자체로 갔기 때문에 생각 못했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하나라도 (더)하면 500이상이 떨어지니까(내야하니까) 빨리하려고 하죠.

〈사례 18〉

서로 대화도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성과 여성은 한방에 들어가 첫날밤을 치르게 된다(사례 4). 면접에 의하면 결혼이 이루어지기전에는 남성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던 여성들이 성혼이 되자 돌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한국에서 다시 만난 신부는 결혼식을 올렸던 그 여성이 아날만큼 변해 있었다고 한다(사례 4).

A: 그니깐 청순가련순진무구에서 완전 상거지로 변신을 해갖고 (한국에)입국을 했으니까, 그 (여성을)선택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게해서 (신부를)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뭐 종이 쫓가리 두장을 주는거예요. 그러고서 그 말이 호텔이지, 모텔방 같

은 데다가 집어넣고 둘이서 대화를 나누래요, 근데 뭐 일단 선택을 했으니까

Q: 그 종이는 뭔가요?

A: 그 종이는 단어들, 기본적인 단어들, 이렇게 추려가지고 인제 대화할 수 있게끔

〈사례 4〉

다. 신랑에게 돈 뜯어내기

업자건 개인이건간에 국제결혼을 주선한 사람들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 이외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신랑으로부터 돈을 뜯어간다. 또한 신부들도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는 국내로 입국하기 이전부터 신랑에게 돈을 요구한다. 면접대상이 되었던 남성들중 전문직이나 공무원 등의 고학력자도 있었으나 여성과 말이 잘 통하지 않을뿐더러 여성은 이미 업자의 영향력 아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그냥 돈을 주는 경우들이 많았다. 또한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결혼한 관계에서 신부나 처가에 인색해 보이지 싫은 측면도 있다고 한다.

A: 베트남 말로, 밥 잘 먹었냐? 어머니 건강하시냐? 아버지 건강하시냐? 할머니 건강하시냐? 형제들 잘 있냐? 너 아픈데 없냐? 그거를 사전 찾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물어보는 즈그 나라말로 네,네 그러는거예요, 알아듣나? 신기하죠, 저는, 신기한 반면에, 그 아이는 한국말로 한 문장하기도 힘들어요, 개네가 인제 문장이 앞하고 뒤하고 틀려가지고, 영어마냥 틀려가지고, 한 문장하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 차라리 일본어면은 한국말처럼 쪽쪽쪽 되는데, 개네들은 영어처럼 앞뒤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말하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 그냥 이해하고 그건 인제 한국말 공부 잘 하고 있냐? 기숙사를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말 신부교육을 받으려, 그래서 한 달에 200달러씩 그거(기숙사비)를 좀 내줘야된데요, 사장이, 그래서 사장한테 은행에서 현찰로 뽑아달라는 거예요.

(중략)

A: 아니, 그 2차 인터뷰 가기 전에, 뭐 맹장수술비 500달러랑 그러고 주소 이전비 1500달러랑 그리고 인제 뭐 처갓집에 용돈 줄 것 한 300달러랑 그리고 거기 형제들이 많으니까 형제들 뭐 십만동이나 이십만동씩 용돈 줄 거, 한 100달러랑 50달러나 100달러 이렇게 챙기고 여비할 것 해가지고 뭐 한 3300달러랑? 3000달러 넘게 가져갔어요.

Q: 여자가 그런가요(요구했나요?)

A: 중개업소에서(그런 겁니다)

〈사례 4〉

A: 예. 지참금이 왜 왔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참금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업소가 갖는게 아니고 결혼식 전에 고마우니까, 지참금을 부모한테 300불 준다고 하더라고, 자, 나머지 200불은 또 여자 나올 때, 용돈으로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700불은 어디다 쓸거냐고 그랬더니, 교육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한 국에서 갈 때요, 다문화센터소장도 만났어요. 교육을 굳이 시킬 것 같으니, 시키지 말라고 사장님 마음이지만. 여기와서 교육시키는데 뭣하러 거기서 교육시키냐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베트남에서 그랬어요. 모든 것은 전주계약자가 아니고 광주업체가 다 해버리는거예요. 예? 그 사람이 다 인수를 해가고 돈도 다 받아가고 그 도둑놈이죠, 그거. 그 사람한테 베트남에서 나 교육시키지말라고, 지참금 쓰는데도 700불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사례 5〉

A: 비용은 당초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올려놓은게 오래되었는데, 여하튼 내역이 틀리더라고요. 현대 총 금액이 좀 저렴했습니다. 사업체보다. 해서 제가 결정을 했구요. 또 추가비용은 없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지에서 추가비용을 요구를 했구요. 저는 그 업체도 그 분이 오래 하셔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 개성이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합리성을 모르고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상스러운 말로 해서 그냥 좀 양아치스타일,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 분이 얘기하는게. 이번에 가서 제가 그 가출을 해서 그 사무실을 찾아가서 여직원을 만나서 상담 좀 하겠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다 듣고서 아, 여직원도 제 마음에 동의를,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많이 이해도 해주고 상담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얘기를 하니깐 그 분이 이거 채추진을 얘기를, 저는 아이를 낳고서 국내여성이 오겠냐? 나이가 있으니까, 초혼이지만. 어, 뭐 국제결혼은 저 같이 나이먹거나 아니면 사업실패한 사람들, 생활능력 어렵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국제결혼을 차선책으로 선택하는데 저는 순정으로 대했을 뿐인데 애는 살려고 들어온 여자가 아니었다. 이거 베트남 들어오기 전부터 해왔던 행위들이 살려고 들어온 여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제가 믿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초청장을 보류하다가 보냈어요.

〈사례 6〉

Q: 비용은 얼마나 달라고 그러던가요? 업체에서?

A: 저는 일단 업체에선 900정도 들었고요, 순수하게. 그 서류비용이라던가, 기타까지 다 포함하면 2000 좀 넘는 금액이 넘는 것 같습니다.

Q: 업체에만 준 금액은 900이고 나머지 1100은 뒤에 들어갔을까요?

A: 900중에서 900, 1100이라는거는 이렇게 결혼식 비용이랄까, 결혼식 비용, 그 다음에 뭐 옷이라던가, 신발이라던가, 그 다음에 결혼식 비용하면 그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뭐라고 그러죠?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중략)

Q: 교육비가 대충 얼마가요?

A: 350불

〈사례 12〉

또한 업자들은 신부에게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사례 15).

Q : 그 어떻게 업체에서 절차를 진행하던가요? 비용을 어떻게 제시하던건가요?

A : 저같은 경우에는 천 30만원에 지참금 500불

Q : 그러니까 천 30만원은 업체에 주는 거고 지참금이라는 건 신부한테 주는 건가요?

A :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제가 직접 문서를 받은 게 있는데 직접 신부한테 절대 돈을 주지 마세요.(생략)

〈사례 15〉

남성들이 업자나 소개자에게 계약서 이외, 추가비용을 선선히 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남성들의 입을 통해 들어보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을 잘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성과 결혼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업자나 소개자들이 어떤 구실로 돈을 달라고 하더라도 쉽게 주게된다. 사례 16은 공무원으로 피면접 대상자들중에서 학력도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도 그런 상황에 처해서는 업자들에게 돈을 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Q : 결혼 중개업체에 준 돈 지참금 다 해가지고

A : 저한테는 중개업자한테 준 돈은 총액 1500만원 그것도 신랑한테 첨에 돈 천만원으로 계약을 해요. 돈 천만원 내외로 신부 입국까지 모든 걸 완성해주겠다 해놓고 현지 가서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최소한 100에서 2-300정도 추가 비용으로 뜯어내요. 저는 다 신용카드로 썼어요. 영수증이라도 있지만은 또 영수증없이 현금 미화 달러로 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쉽게 영수증도 안받고 업자한테 200-300까지 주느냐? 결혼하러 간 신랑 입장에서 한 2백 더 주더라도 결혼 자체를 잘 하겠다는, 전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결혼 자체를 잘하려는데 정신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 안해요. 만약에 물건을 사는 데 그랬으면 200만원 영수증 안주면

절대 아니죠 바보 아닌 이상. 그런데 거기 가면은 결혼 해야겠다 그런 마음 강하고 그 다음에 돈은 좀 더 들어 가더라도 좀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고 싶다 결혼을 잘 마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2-3백 더 달라고 그러면 대부분 쉽게 줘요.

(중략)

A : 아 처음에는 (신부도) 중개업자가 시키는 데로만 한거죠. 나중에 저한테 협조한 거는 지금은 저한테만 협조해요. 자기한테 줄 돈 한 한국돈 150만원 필리핀 돈으로 5만페소 되요 그러면 필리핀 일반 사람 1년치 연봉이예요 그 돈을 중개업자가 띄어 먹은 줄 아니깐.

Q :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자한테 주라고 한 돈을 떼어먹은...

A : 지참금 지참금을 200만원 가까이 받으면 중개업자가 기껏해야 20만원 30만원 주고 나머지 떼어 먹어요 다 그래요 저만 그런게 아니고.. 참엔 몰랐죠 그런데 소송하면서 제가 (여성에게) 알려줬죠 돈 받았냐고? 혹시 이정도 돈이 너한테 받았냐고? (여성이)받은 적이 없다.

〈사례 16〉

4. 결혼에서 파경까지

가. 입국하지 않는 신부, 입국할 수 없는 신부

사례 16은 신부가 한국으로 입국하기전에 신부의 신상에 관한 허위정보를 알게되어 업자와 소송중이다. 신부는 현재 모국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자녀가 있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것이다. 면접 대상들중에는 신부가 입국후 가출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으나, 실제로 입국 이전부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입국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업자와 신부가 남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많았다.

A : 아이 그것도 참 우스운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교환하다가 그 아가씨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하고 거짓말하고 필리핀은 가난하면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안되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당뇨병으로 병원에 입원에 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제가 필리핀 있을 때부터 알았어요. 근데 이 해는 하죠 가난하니까 그런가보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보고싶다 당신이 그림다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먼전데 그런 건 거의 없이 돈돈돈 하도 돈돈 거

짓말을 반복하니깐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영어는 히어링은 잘안되는데 독해는 좀 하니깐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니깐 잡아 떼는거죠. 거짓말 하는 거는 없는 데 무슨 거짓말? 제가 화가 났잖아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말라니깐 왜 자꾸 그래? 이랬더니 계속 잡아 떼는 거예요. 그렇게 서너번 (문자가)왔다 갔다 하니깐 제가 보냈죠 거짓말 하는 저 자신이 스스로 무슨 거짓말 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 마지막 기회다 바르대로 말해라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문자를 딱 보냈어요. 한시간 동안 답장이 안오더니 한시간 동안 고민을 했나봐요. (아이를)날았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1%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죠. 가만 생각해 보니깐 아니 이런 이야기라면 아이가 있으면 실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문제고 결혼을 했는지 사실상 관계의 남자가 있는지 애인이 있는지 이런점을 서로 얘기 할 문제잖아요. 저도 물론 초혼이고 나이도 많지만 가족관계나 호주관계상으로 관계 다 보여줬는데 그리고 업자들이 당연히 한국에는 호적이 거의 완벽하니깐 호적 서류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한국보다 불완전해요 호적관계가 있긴 있는데 그리고 카톨릭 국가라 임신하면 낙태가 잘 안되기 때문에 미혼모가 엄청 많고 중개업자가 필리핀 결혼만 10년 전문으로 해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죠 그런 일도 체크 안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깐 처음부터 애 있는거 알고 결혼 시켰으니깐.

(중략)

A : 네 그렇게 체크 할 이유도 없죠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쇼크를 먹어가지고 그 뒤로 문자 통화도 했지만 간당간당 통화도 하고 중개업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 한달 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해할 만한 납득할만한 아무 것도 안해줘요. 오직 흑시라도 자기 증거 잡힐까봐서 전화하면 말도 잘 안해요. 녹취할까봐서 그리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중에 제가 자꾸 독촉을 하니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거예요. 내용증명 내용이 당신이 아무 이유없이 결혼 포기한다 이미 법적소송 이런걸 많이 해봤니깐 선제조치를 취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소송할 마음도 없었고 소송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평화적으로 여자가 하자가 많으면은 애가 있었는데 죽었는지 남자가 있는지 알아봐야 하잖아요. 근데 중개업체가 약점 잡힐까봐 일체 얘기를 안하더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점잡힐까봐 애길 안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자한테서 애가 있는 줄 알고서 결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볼 이유도 없죠 끝까지 시치미 떼고 중개업체에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신랑이 증거를 못잡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례 16〉

사례 5는 업자에게 피해를 당하고는 자신이 결혼중개업체를 차린 특이한 경우였다. 결혼을 위해 신부의 모국에 입국할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업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받았고, 신부의 입국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업자가 다시 추가비용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는데 그로 인해 신부는 입국하지 못했다고 한다.

A: 아니, 이 놈들이 (입국을)안했쥌(안시켰쥌). 여자하고 나는 오자마자 계속 통화중이 있습니다. 통화를 계속 했는데, 이놈들이 내가 (신부에게) 물어본 거예요. (업자들이) 예물 안줬지? 추가비용 받은데다, 내 목줄을 졸라버린거지. 안 주면 결혼 파기 시킨다고,

〈사례 5〉

사례 18은 조선족 신부와 중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입국한후 출입국에서 연락이 와 신부의 이중혼인을 알게 되었다. 브로커가 이전의 한국인 신랑에게 입국을 위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혼인이 파탄났는데, 중국에서는 이혼이 되었으나 한국에서는 혼인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피면접자는 오래 고민하다 할 수 없이 신부를 입국시키게 되었으나 결국 신부는 아이와 함께 가출하고 말았다.

A: 처음에 중국에서 혼인사진 찍고 해서 서류를 했거든요. 중국호적이라든지 가족관계 등본이라든지 그런걸 들어가는게, 그런걸 기혼으로 해야하는데 미혼으로 해서 들어온거라예. 한국에는 그 서류가 남아있으니까. 중국의 생년월일이라든지 그게 남아있으니까 그게 발각된거예요. 출입국에서 연락 와서 이 여자가 이중혼인데 알고 있느냐. 여자는 자기는 무조건 모른다카고, 이전 신랑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도 브로커가 돈만 뜯어가고 비자도 안해줘서, 너네 맘대로 하라고 하고 잊고 있었다카대요. 중국에서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여자가 한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중혼이 되다보니까 한국은 그게 안됩니다. 중국법원에서는 이혼이 성립됐는데 한국에서는 이혼이 안되서 그런겁니다.

〈사례 18〉

중증장애를 가진 피면접자와 그 부모에게 결혼을 권유했던 업자는 신부의 입국을 두고도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제결혼을 위해 남성측이 부담한 돈은 무려 45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A: 나는 처음이니가 영수증만 돈 영수증만 준 것을 그렇게만 하면 되는건지 알았지. 누가 알려유.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만 믿고 그래했더니, 그게 정식계약서도 아니래요. 나를 안 준거래요. 정식계약서두, 안 주고 내가 처음부터 이제 지나고 보니까 10월 지나면 장애자는 결혼 못한다 그런게, 빨리빨리 서둘기 위해서 나를 그런 것 같아요. 그 목사하고 짜고 저기 저도 원지

(중략)

A: 그래서 2011년도 9월달에 결혼한 걸, 2012년 7월 30일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신부)가 안오니까, 내가 자꾸 우리 소개했던 사람보고 가서 얘기했을 거 안유. 그러면, 요번엔 아무것도 안나온다고 짜르고 계속 돈만 보내래유. 그 목사하고, 결혼 저거 올 때까지 보내야한다고 30만원도 보내고 뭐한다고 40만원, 계속 돈을 보냈는데,

Q: 그렇게 보낸 돈이 총 얼마나 되십니까?

A: 들어간게 4, 500만원 되요.

〈사례 13〉

나. 전화와 컴퓨터에만 매달리는 신부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출한 신부들의 남편은 신부들이 처음부터 결혼생활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하루 종일 전화나 컴퓨터에만 매달려 모국에 있는 사람들, 혹은 국내에 있는 지인들과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사례 14는 신부가 내연남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며 사례 13의 경우는 업자와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다가 결국 가출에 이르렀다고 한다.

Q: 혹시 살면서 무슨 갈등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A: 없었어요. 단 하나 임신되기, 하나 갈등은 통화를 이 사람이 많이 했어요. 통화 요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핸드폰 십 몇 만원이 나와가지고, 국제전화카드 별도 카드가 만 오천원이거든요. 그거 한 달에 몇장씩 들어가는거 별도. 줄이자줄이자 했는데, 안줄여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통화내역을 6개월치를 딱 떼보니까 낮시간에 내가 나가고 나서 30, 40분을 통화를 했는데, 내가 30, 40분을 한 사람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안부가 아니야. 30, 40분이면 бат데리가 달 정도야. 이걸 안부가 아니야. 뭔가 있었다는 거지.

〈사례 2〉

A: 난 컴퓨터에 한국말 배우라는 프로그램도 깔아줬고, 그 한국말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해피스타트 교육을 받아야 뭐 1년, 등록만 하면 1년이 비자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해피스타트 교육을 받으면 2년 짜리 비자가 발부가 되는데, 제가 한 달에 두 번 밖에 교육이 없데요. 제가 직장문제로 접수만 하고 8월8일날 가기로 했던거예요.

근데, 그리고 우선 그러면 외국인등록이 없으면 한국말을 그 교육센터 가서 못 받는 데요. 해서, 그러면 컴퓨터에 한국말 프로그램을 깔아줬어요, 배울 수 있는. 근데 그 것도 안하고 텔레비도 안보고 아무것도 안하고 오로지 전화만 합니다. 그렇게 전화만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해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안보고 한국말 배우려는 그런 것도 없고, 전화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힘들었죠. 힘들고, 그래갖고 시골에 전화해서 정말 내가 참 늦장가 갔는데, 내가 너무 불쌍하다. 화장실가는 시간 밥 먹는, 외부로 이제 식사하러 가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전화만 했습니다. 누워서 베트남에서 전화오면..... 그 베트남에서 전화오면 끊고 자기가 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베트남은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할수 있지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자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그 시간만 빼고 전화를 합니다.

Q: 계속 전화, 통화료가 많이 나왔겠네요?

A: 그래갖고, 엄청 나왔죠. 그니깐 통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5일동안, 몇 일 계속, 이거 엄청난, 급격하게 통화량이, 제대로 한 통화량인지 확인하려고.

〈사례 6〉

Q: 공항에.

A: 그래 가지고 밤에 데리고 와서 진짜 하룻저녁을 자고는 안자는거예요. (생략) 그 몇 일 데리고 와서 있는데 자지도 않고 진짜 집이 살얼음판 같이 되는거여. 자도 안고 이래가. 그래갖고 우리 아저씨가 아, 이래서는 안돼겠다. 우리 아들을 버리겠다. 차라리 안 들이는데 날 꺾. 이거 기집애, 잘 못 기집애를 데려다 놓고 이게 뭐야. 이놈의 애가 안자니까 열 두시가 되도 안자니까 우리도 불이 비치니까 여름이니까는 문을 닫고는 그냥 거기 영화보고 거기 이메일인가 뭐여. 그것만 계속 그렇게 한 달에 전화요금에 십만원씩 팔만원씩 그 정도로 나오는 거여. 핸드폰 말고도, 그래 가지고 김치도 못 먹는다고 맨날 과일이고 뭐고 사대고 그랬더니. 어느날 온지 얼마 안됐는데 결혼업체여자가 그러게 그 때 필리핀 ○○○한테 애는 도망가거나 말거나 놔두라고 한국만 보내주라고 그랬다더니 여기 와서 이중으로 팔아먹을라고 그랬었나봐요. 온지 얼마 안됐는데 자기 동대문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녁을 먹는데 우리 친구래요. 친구가 저기 마르비 보러왔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마르비를 왜 보러와? 내가 그랬더니.

〈사례 13〉

A :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저희 어머니가 봤을 때는 너무 게으른 신부였으니깐 새벽 3시까지 채팅하고 놀다가....평소 생활 패턴이 저랑 같이 있을 때도 둘이 있을때도 그랬으니깐...4개월 살면서 보통 일어나는 시간은 11시에서 12시에 일어나구요 3시 쯤에 베트남 라면 있어요 본인이 사온거 다문화 학교가 있는데 그 근처에 파나? 그렇더라구요 거기서 산 음식을 먹고 채팅을 하면서 과일을 좀 먹고 과자를 먹으면서 채팅을 하고 컴퓨터를 하고 노래를 듣고 하다가 보니 다시 새벽까지 하다보

니깐 저는 옆에서 그냥 컴퓨터든 뭐든 적응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향수병만 도질테니깐 그래서 저는 크게 제제를 안하는 성격이라 어머니는 당연히 음식을 배워라 한국어 공부를 해라 애는 그걸 안했죠. 그 모든 걸 어머니는 당연히 옆에서 화가 났을거고.

Q : 아무래도 약간 잔소리처럼 하셨겠네요?

A : 제일 중요한 건 말은 안통하니깐 잔소리도 말이 통해야 되는거지 어머니는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 보고 컴퓨터 하고 그러니깐 어머니는 더 열받으시고 차라리 듣는 척이라도 했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았죠. 애는 이미 마음이 딴 데 가있었는데 자기는 조금 있다가 돈 모아서 가겠다 그렇게 들었어요 좀 더 많이 모아서.

〈사례 14〉

다. 사라진 여성들

남성들은 여성들의 갑작스러운 가출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하느라 치른 비용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거나 대부분의 남성들이 오래 미혼으로 있다가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안고 결혼 했으므로 특히 인간적인 배신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례 1은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일방적으로 낙태한 후 가출하여 충격이 더욱 컸다.

Q: 임신, 그러니까 선생님 애를 임신했다는 건가요?

A: 네. 그런데 가출해서 하다가 그, 그 때 친구가 구미에 있어갖고, 구미에다가 주소를 한 거를 보내준게 있어서 거기 가니까 친구가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낙태수술도 하고.

(중략)

Q: 이 문제로 병원의사가 기소가 된 거네요?

A: 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그 업무 상 낙태를 보면은 이게 많이, 깊이 때려박아 집행유예고 선고유예 때리는 게 외국인 저거 해갖고 선고유예가 나왔어요.

〈사례 1〉

사례 2의 경우, 업체는 자세한 신상정보내역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는데, 여성은 입국해서 임신이 되자 모국으로 보내달라고 계속 졸랐다고 한다. 피면접자는 할 수 없이 친절으로 여성을 보냈는데, 여성은 그곳에 머물며 계속 돈

을 요구하다 급기야 의논 한마디 없이 낙태를 하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A: 여기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초혼이고 하니까 부모입장에서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식을 한거죠, 거긴 그 나라 법으로 한거고, 그러니까 피해가 더 컸죠. 식비용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게 증거라고 할 수 있는게 이게 돈 보낸 거거든요. 하도 보내달라고 해서 여섯 번에 걸쳐서 213만원을 보내줬는데, 가장 중요한게 이 때 한 번 보내줄수도 있고 이렇게 보내줄수도 있는데 11월 2일날 입국만료일인데 안왔잖아요. 그 뒤로 항공권명목으로 9일 19일 12월 3일 약 90몇 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혀 들어 올 입국의사가 없다는 얘가지. 이게 다시 얘기하면 사기라는 얘가지..... 낙태를 한거예요. 거기에서....

〈사례 2〉

사례 6은 5일만에 신부가 가출하였다. 억울한 마음에 혼인무효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한 상태라고 한다.

A: 통곡을, 눈물 뚝뚝 흘리니까, 참 그렇게 교활하게 제가 통화하는 것을 뒤에서 녹음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옷을, 배낭을 가져왔는데, 여행용 가방을 가져왔는데, 짐을 안 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옷걸이를 사다줬어요. 제가 집에 불박이장이 뭐 이렇게 옷이 짝 걸려있으면, 옷걸이가 없어서, 그랬겠거니해서 옷도 사다줬어요. 다른 방에 갖다놓고 짐을 안 풀고 또 자기, 제가 당시 베트남에서 살 때, 핸드백 같은 거, 거기에 여권, 뭐 자기 개인소지품, 전화기 같은거, 거기다 공공 감춰가지고, 공공 감춰놨더라구요. 저도 모르는데에. 집도 살라고 들어온게 아니었어요. 안풀더라구요. 짐도. 그래서 그 제가, 출근, 그러니까 그거 간 다음에, 이렇게 집 전화 통화내역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권단체에 전화를 했고, 온 모르는, 뭐 인천에 있는 인권단체, 뭐 여성단체, 아우, 제가 깜짝놀랐어요. 그리고 그 수첩에는 막 제가 잠깐 봤는데, 뭐 하든 한국, 어떻게 전화번호를 적어왔는가, 막 전화번호가 짝 적혀있었어요. 그리고 인권단체, 개인전화번호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 5일째 되는 날, 출근을 했습니다. 울고 저는 소파에 좀 앉아있다가 뭐 한시간 정도 눈 붙이고 출근을 했는데, 5시 반에 출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엘리베이터 CCTV를 보니까, 6시 반에, 6시 반에 그 약간 긴장과 즐거운 표정으로 들고 나가더라구요.

〈사례 6〉

사례 12의 경우는 여성이 입국한지 37일만에 집을 나갔다고 한다. 그러나 적 반하장으로 여성은 자신이 가출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 의해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남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남성이 이겼다.

A: 그렇죠, 말 돌리기 바쁩니다. 중개업자들은, 자기는 도리 다했다. 내가 뭐 자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했으며, 3개월 동안 외출도 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외출 시켰다고, 그런 식으로 목소리만 크고, 꼬우면은 그냥 법대로 하라고, 아무리 인식 좋은 저기였어도 막상 사건 터지면, 그런 식으로 돌변하거든요, 주로 외국인, 같은 여성분들 만나게 하지마라. 모임같은데 있잖아요? 이제 또 다문화센터라던가 그런데 보내지말라. 막상 당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Q: 그렇죠.

A: 또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막상 또 가출하려고하면은 마음 먹으면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그런거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학원간 사이에 없어졌으니까요.

Q: 낮에 없어진거죠? 집을 다 들고 갔어요? 챙겨서?

A: 자기가 가져왔던 물건은 고대로 두고, 제가 한국에서 사왔던 물건이라던가 부모님이 귀중품이라던가 또 용돈준거라던가, 그런 것들.

〈사례 12〉

사례 14의 경우는 여성이 입국한지 5개월만에 처음으로 가출을 했다고 한다. 가출을 하기 이전에도 페이스북에 내연남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이 올라 있었다고 한다. 신부는 첫 번째 가출 다음날 피면접자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했다고 한다. 피면접자는 그래도 여성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데려왔는데, 신부는 피면접자의 폭력을 유발해서 이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돌아온 듯 했다고 한다. 결국 피면접자가 직장을 나간 사이에 여성은 집안을 온통 쓰레기밭으로 만들고 가출했다고 한다. 여성은 그 이후에도 가끔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

A : 이건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린거예요 페이스북 보시면 남자 트랑팅? 트럭? 뭐 이런 거거든요 남자쪽 페이스북 여자쪽 페이스북에 같이 올린 거거든요.

Q : 그러니깐 이게 가출하고 나서 페이스북 찾아보니깐 이런 사진이 있다는건가요?

A : 그 전에 제가 발견한거는 초창기에 봤던 사진은 저랑 살 때 였죠, 저랑 살 때 이제

그러니깐 순서대로 다 있는건데 그 초창기 사진은...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죠 나중에 알고나서 당황했던건 그거였죠 애는 무슨 생각으로 이러지? 사진을 본인이 찍어놓고도 어떻게 저랑 살면서도 그거를 금방 찾으면 바로 나올 정도로 숨긴게 아니라,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Q : 가출하기 전에도 보셨던 거네요?

A : 그렇죠 그러니깐 저도 당황해서 얘기 했어요 애가 어디 사는지 남자친구라는건 누가 봐도 알겠지만...

(중략)

A : 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깐 싸웠데요, 친구하고 같이 있다가 저를 부른건데 저는 그 때 그만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얘기할진 잘 모르는데 저는 다시 나한테 왔던거는 대화를 충분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자마자 행동이 하도 황당했어요 (가출했다가)들어왔죠, 금요일날 들어와서 전 다음날 쉬는 날이구요, 토요일날 제가 왔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재 참 당황스런 아이다, 오자마자 컴퓨터 하면서 노래 부르니 보니까 컴퓨터 채팅 사이트에 가라오케 그런거 있어요 노래 부르더라고요, 휴대폰 쓰고 그래서 아니 뭐 그럴수도 있고 그런데 자꾸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한테 때리게끔 화나게끔 그런데 저는 이미 피해 센터 많이 봤잖아요, 행동을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설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못쓰겠다 안되겠다 이제 너 포기할테니 니 갈 길 가라, 니가 원하는 데로 해줄게 베트남 가고 싶으면 베트남 보내줄거고 대신 한가지 나하고 이혼해달라 저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너 원하는데로 다 해줄테니깐 이혼해달라, 그러니깐 그날 저녁부터 저를 슬슬 괴롭힌다고 해야죠, 소리지르고 뭐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돈 달라고 했어요 제가 돈 없다고 그러니깐

Q : 얼마나 달라고 그러던가요?

A : 200만원 달라고 그래요 200만원이 왜 200만원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두달간 나 갔다 있으면서 언니가 아는 언니가 자기 돈을 다 대줬데요 그것 때문에 200만원 달라고 하니깐 못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50만원을 먼저 달래요 그래서 안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음 정했기 때문에 솔직히 남자들 마음 다 그 마음이에요 이 돈 주면 혹시 나한테 올까? 솔직히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머릿속에선 많이 혼란해요 그럴수록 제가 바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보내 줄 건 보내줘야 하니깐 일요일인가 됐는데 저 회사간 사이에 어머니하고 아버지 피신해 있으라고 했어요, 혹시 해코지 할지 모르니깐 시댁식구나 남편은 절대 애를 폭언이나 폭행 어떤것도 하면 안되요, 법 자체가.. 아니면 잘못하면 심터나 여성지원센터에 제가 당하거든요, 당한 사람 하도 많아서 자살한 사람도 몇 명 있잖아요, 억울해서 그 사람들 오죽했겠냐, 그쪽에서 상담할 때 참아라 차라리 도망가라 그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도망을 쳤는데 그 날 일요일 날 어머니 물품 폐물 집안 다 부시고 갔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돈 안준다고

Q : 그런것도 혹시 찍어 놓으셨나요? 증거로?

A : 네 찍어놨죠 왜냐하면 이걸... 음 안할 수가 없는게(사진을 보여주며) 워낙 이게 찍은 사진인데 짧게 찍은게 있어요. 의자가 좀 휘었어요 의자로 TV를 부셨어요 TV 모니터 브라운관 액정을 의자를 이렇게 잡아서 부신 것 같은데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아휴 잘 나가 있었다. 저 없을 때 칼 들고 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례 14〉

사례 17은 결혼한지 석달이 되지 않아 피면접자와 그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여성이 집을 나갔다고 한다. 피면접자는 너무 억울하고 혼인무효를 원하고 손해배상까지 받고싶다는 뜻을 비쳤다.

A: 5월 초쯤 되니까 조금 불안해 했던게 자기 아버지, 엄마 걱정을 하더라고요. 설틈없이 전화하게 해달라 하고, 그래서 전화하게 해주고 했는데 결국 5월 첫째 주에 네팔에 전화하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대요. 제가 또 통역을 해서 친할아버지 같은 경우면 가봐야하는거 아닌가 해서 안정을 취하고 상의를 해보자. 결혼한지도 얼마 안됐고 한국 온지도 얼마 안됐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결혼중개업소 사장하고도 얘기해보자고 했는데, 그 사장이 다문화센터 보내지말고, 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거의 집에 가둬두듯이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갑갑했어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누굴 탓해야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대로 해야겠다해서 며칠 그렇게 했죠. 근데 개가 올 때부터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회사가고 없으면 집에 혼자 있으면서 인터넷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다 할텐데 감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하라고 됐죠. 5월 첫째 주부터 네팔에 전화하더니 생활이 완전 180도 달라졌다고 해야하나. 집에오면 맨날 네팔 가고 싶다고 하고, 할아버지 돌아가신지 2,3일도 안되서 아버지 걱정을 계속 하대요. 아버지 아프시다느니, 다 죽어간다느니, 병원 가야하는데 병원도 안가고 있다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업체 사장한테 상황이 이렇다고 전화를 했더니, 네팔 보내야 되냐고 했더니 사장이 절대 보내면 안된다. 한번 가면 못 올수도 있다. 저는 그 말에 겁이 많이 났죠. 나도 지금 회사는 나가야 하는데 애 혼자 집에서 어떤 짓을 할지, 집이 또 아파트고 하니까 높기도 하고.

(중략)

A: 애(신부)가 집을 나간 뒤로 모든 걸 통역사한테 다 들었는데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안하고, 내가 자기를 인간 취급안했다고, 술 먹고 들어오고 용돈도 안준다고 하면서 그 얘기도 네팔 가족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하고 있으면 맛있는거 먹으러 가자고, 호텔에 가서 자자고 하면 싫다, 집에서 먹자, 집에서 자자고 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 불쌍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아프고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한게 2주정도 계속 됐거든요. 2주 되는 시점에 야간출근이었는데, 출근하기 전까지 밥먹으면서 얘기해주려고 했는데, 그 얘기가 계속 아버지 걱

정을 하더라구요, 네팔에 두달 정도만 갔다오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출근시간이 다가와서 그냥 그래 알겠다. 보내줄게, 근데 나는 일해야 되니까 같이 못간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9시쯤 되니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집에 애가 없다, 소지품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사라갔겠지 했는데 12시가 돼도 안들어왔다고 하고 보니까 방 구석에 영어로 된 쪽지가 있다대요, 그래서 집을 나갔나보다 했죠, 그래서 그 말 듣고 퇴근해서 주변에 피씨방이랑 다 찾았는데 없어서 가출신고했어요.

〈사례 17〉

라. 돌아오지 않는 아이와 엄마

가장 고통스러운 사례들은 아내와 자식을 한꺼번에 잃는 경우일 것이다. 여성들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되면 일단 모국으로 돌아간다.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여성만 재입국하여 돈을 벌어 친정으로 보내거나 아예 아이와 모국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례 3의 경우도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모국인 우즈벱으로 출국한 경우이다. 여성은 우즈벱 남성을 비롯 주위의 한국 남자, 피면접자의 친구와도 바람을 피웠다고 한다. 결국 여성은 피면접자가 직장에 나간 틈을 타서 내연남의 도움으로 아이와 함께 출국하였다고 한다.

Q: 예. 그 어떻게 지금 현재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가출하신 건가요?

A: 사실은 이제 가출하게 된게, 예, 사실은 그 전에 조금 감을 잡았었는데, 이제 느낌은 오나, 증거는 없었었는데, 이제 2000, 작년, 2011년 6월 9일하고 11일, 양일간에 그 누드채팅하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집에서.... 두 차례에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걸렸는데, 이제 근데 이혼과정에서 통화목록을 조회해보니까 그 6월 2일날 그 남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6월 2일날 그 남자가 제주도에 왔단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연결고리가, 세상에 우연은 없거든요, 항상 그 인과관계가 있는데, 6월 2일날 제주도에 왔다가 6월 7일날 부산으로 가고 애인이, 저 우즈벱 애인이, 가고 그래서 이제 6월 9일 날하고 6월 11일날 누드채팅 사건이 있었던게 연결이 되는거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국제결혼하면서 피해나 뭐나 다 있어가지고, 와이프한테 두 번의 기회는 없다, 무슨 말이나면, 저 협박일수도 있고, 단단하게 본인에게 알려주는게 있어가지고, 나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되, 한 번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야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다보니까, 그 과정에 걸치다보니까, 그 이제, 내가 이제, 내가 그 바람피고 라던가, 아니면 내가 그런걸 용납 못하는 걸 잘, 본인이 잘 알아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6월 29일날, 아기를 데리고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

합니다. 근데 이제 애기가 6월 19일날 **계에 걸려가지고, 에, 큰 딸이 집에와서 보고 있다가, 이제 28일날은, 29일날은 남편에게 이제 내가 다른 사람과 그, 거긴 휴일을 돌아가면서 일주일이 꼭 쉬는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날은 다른 사람과 저기 휴일을 바꿔서 쉬겠다고 하고, 애기를 데리고, 유괴해버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 처음엔 혼자 한 줄 알았어요. 근데 통화목록을 조회보니깐, 다시 한국에 또 애인이 있었어요. 내 친구.

Q: 아,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애인뿐만 아니라 선생님 친구하고도 바람 피웠던건가요?

A: 예. 이제 가택침입죄로 형을 받았지만, 그 남자가 와서 이제 저, 저, 그 6월 29일날 그 남자가 집에 와서 애기를 데리고 짐도 많기 때문에, 데리고 제 3의 장소나 아니면 그 메리안하우스엔 가서 짐 놔두고 그 걸 공항까지 해서 우즈벡까지 약취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로 다음날 6월 30날, 미성년자 약취죄로 바로 형사고소 했어요. 밤 새워서 소장을 작성해서, 그 당시에는 와이프가 국내에 애기를 유괴했는지, 외국에 했는지 몰라서, 일단 미성년자 약취로 고소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깐,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즈벡에서 봤다고, 그래서 이제.

Q: 우즈베키스탄으로 벌써 애를 빼돌린거구나.

A: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 좀, 마음 가다듬고 해서, 9월 15일날, 내가 저 고차보초서를 내면서 아, 미성년자 약취죄에서 요거를 국외이송 목적 약취 및 피랍적 부등죄로 변경해달라.

〈사례 3〉

사례 9는 결혼한지 5년만에 아내의 모국을 방문했다. 모국방문이후 남성이 먼저 입국하고 조금 더 머문후에 뒤따라 오기로 했던 아내와 아이가 입국하지 않은 것이다. 여성은 아이와 베트남에서 살겠다는 말만 남기고 아이와 통화도 시켜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린다고 한다.

Q: 11년 만에 집을 나갔나요?

A: 그냥 나간게 아니고, 저하고 얘기하고 이제 애기엄마하고 친정이라는 거를 처음 가봤어요. 왜냐면은 결혼식 때, 그 때 이제, 그 때는 그 친정, 그 처갓집에 간다는 것은 생각도 안해봤고, 2011년 말에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저도 설렸어요. 처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도 좀 많이해서 갔는데, 문제는 제가 애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했지만, 저는 한 열흘정도 있다가 왔고, 애기엄마하고 애기는 두 달 살고 온거거든요. 그것이 내가 잘못된거지. 거기서부터 내가 잘못된거지. 아이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건데. 그래서 이제 2월 말에 들어와야되는데 안들어온거예요. 2012년, 그레가지고 3월달, 3월, 저희가 십 며칠 되가지고 전화를 했지. 왜 안

오냐? 한다는 소리가 그 때도, 저희 아버지가 처갓집에 (전화)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애는 내가 난 내 아이니까 내가 키우겠다, 베트남에서, 그리고 장사하면서 아이 키우겠다. 한마디로,

Q: 장사하면서?

A: 그리고 일방적으로 탁 끊어버렸어. 탁 끝이었어요. 그걸로 끝난거. 그래 가지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되고, 지금도 신호는 가는데 애 안바꿔줘요.

〈사례 9〉

조선족인 피면접자의 아내는 친정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아이와 중국으로 갔는데, 일방적으로 소식을 끊었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성은 국내에 입국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태이고 아이는 연변의 친정에 맡겨둔 상태라고 한다.

Q: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A: 임신하고 난 뒤부터 불만이 생기고 결정적으로는 친정엄마가 산후조리 때문에 탓한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몸도 안 좋고, 중국에 어른이 오고하면 불편하고 하니깐 여기서 조리하고 3개월 정도 있다가 애기 100일쯤 되면 중국에 갔다와라 했는데 그 때는 필요없다카면서, 문화적인 차이보다는 생각의 차이죠, 센터에도 전화를 했었거든요. 산후조리를 우리엄마가 꼭 해야겠다, 집에서는 좀 불편하니깐. 우리는 애기 낳고 갔다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도 많이 했고, 그래서 다문화센터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선생님이 오 하더라구요. 애를 낳고 10일만에, 제가 일을 갔다오니까 10시쯤 되거든요 일을 갔다오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제가 애를 딱 데리고 안는데 갑자기 소리지르면서 그 밤에 집에 간다고 보따리를 싸고, 그래서 또 중국에 없는 표를 구해서 보내줬지만 또 자기 집 까지 가는거 안해주고, 집에 오자마자 한 대 맞았거든요. 우리는 가고싶으면 표를 끊어줄테니까, 길림으로 가는게 화요일, 금요일에 두 번 가거든요. 그렇게 가면 편하기니까 한번에 가니까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일요일에 출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일요일에 갑자기 집에 간다고 보따리를 싸더라구요. 성격이 불같고, 결혼 사진 찍어논 것도 칼로 죽 그어놓고 벽도 다 칼로 그어놓고.... 여자들 자체가 인성이, 인성 자체가 별로예요. 그렇게 도망을 가도, 아시아 애들 많이 봤거든요. 미수단가? 그 프로를 잘 봤거든요 그래서 환상에 젖어 있었던거죠. 현실을 무시하고 결혼을 했지. 그런데 살아보니까 성질도, 성질도 장난 아니고.

Q: 제일 큰 문제가 애기네요

A: 미칩니다. 아 사진만 보면, 새벽에 자다 일어나서 보는데 그럼 하루 잠을 못 이뤄요. 하소연할데도, 도움을 청할데도 없고... 출입국도 인권단체가 상주한다고 하더라구

요. 법적으로 가면 아무것도 안되니까 가정사기 때문에 안된다 외교문제니까 안된다. 그럼 자국민은 어떻게 보호할거냐 말이지. 그 나라 국적에 올려놓은 것도 아닌데 말이지. 지금은 돈이 안들어가거든요. 지금 저 부산역쪽에 가면 저하고 뭐 애 잃어버린 집에 (택시)기사들이 좀 있는데 맨날 그란답니다. 애가 아프다 학비 없다. 저 쪽 지방은 영하 30도 40도씩 내려가거든요. 길림 그쪽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애가 뭐 동상에 걸렸다, 수술해야 한다. 맨날 돈을 요구해요. 그니까 애가 볼모예요, 볼모. 애가.

〈사례 18〉

5. 파경이후

업체의 잘못에 의해 결혼에 이르지 못한 남성들은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허비한 것에 분노하는 정도이나, 결혼생활 중 아이와 함께 가출하거나 입국 후에 가출한 아내에 대한 남성들의 배신감과 허탈감은 생활을 피폐하게 만든다. 면접 대상인 남성들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여성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보호원 등을 찾아다니며 손해배상을 받으려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계와 소송의 비용, 정보 부족 등으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피면접자도 있었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체념한 사례도 있었다.

사례 2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고 싶어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에 수 소문을 했지만 자신이 계약서를 쓴 곳은 엉뚱한 업체이고 실제 일을 추진한 곳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A: 예. 근디 이 사건도 제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청양에 있는 중개업체면요. 계약을 둘이 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직원이나 이 사람이 날 중개했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하청을 줬버렸어요.

Q: 하청을 줬버렸어요?

A: 자기가 돈을 띠고 천 이백에서, 업무협약서를 맺어가지고 협약서를 제출을 해보니까, 천 이백에서 사백만 이 쪽에서 먹고 나머지를 얼마나 먹던간에 저 쪽에 준거야. 그렇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공항에 갔는데, 그 사람이 본사 사장이고 여기는 내가 계약했던 곳은 지사장이라는거지, 근데 여성가족부에 지금 통화해봐도 본사사장이 되려면 법인 사업자가 되었어야하는데, 똑같은 개인사업자거든? 그러면 본사사장과 지사장이 될 수 없다는거지.

(중략)

Q: 지금 그 손해배상 걸어는 것은 아직 아무런?

A: 이제 길 잡혔어요. 1월달에 걸었는데, 이쪽이 주소보정이 안되어가지고 한 3개월 걸렸어요. 주소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개명했더라고 또, 그래 가지고 동명이인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례 2〉

사례 3의 경우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피면접자는 다른 남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아내에 대해 아동약취유인죄를 들어 대사관과 우즈벡 정부를 움직였다. 결국 여성은 자녀를 피면접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한다.

Q: 우즈베키스탄으로요?

A: 근제 왜 11월 27일이냐면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 이제 그 겨울을 우리 아들이 지낼 생각을 하니까 암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겨울은 넘기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이 계획을 한 달전부터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관도 가서, 일단 가서 대사관에 협조를 구하고 그 최악의 경우엔 대사관이 모든 일을 해주진 못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프렌드아시아에 그 박, 저 박광렬, 그 프렌드 아시아에 계시는 분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 분한테도 이제 달았어, 미리 손이 달았어요. 그 우즈벡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한국, 대사관에서 어, 오바루, 우리 같으면 외교부죠. 비자 발급하는데, 거기에 문서를 저한테 직접 줬어요. 줘서, 거기에 오바루 부국장, 바로 그니까 서열 두 번째 사람이 직접 서류를 챙겨주고, 원래 복사본도 안되는 걸 복사본을 하도록 그 전화를 해서 공항에서, 출국당일날, 출국하는 날, 여덟시 비행긴데, 다섯시 반에 출국비자 받아서 아들 데리고 나왔어요.... 거기서는 당연히 우즈베키스탄은 알다시피 20년째, 독재와 철권통치국가 아닙니까? 거기서 그 오바루나 그런데서의 말 한 마디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전 작전이 그랬습니다.

Q: 그래서 애기 엄마한테 압력을 넣은거네요.

A: 아니, 그러니까 압박이죠. 출국금지 시키고 딱 압박해버리고 거기서도 정부의 말 한 마디에..

Q: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가서가지고

A: 예. 데려오는데 이제 기본원칙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됩니다. 국가권력이나. 그래서 대사관을 움직이도록 하고 대사관에서 공문서를 저 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요거를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사례 3〉

남성들은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여성이 가출한 경우에는 혼인무효를 원하지만 실제 혼인무효를 받은 경우는 단 한 사례밖에 없었다.

A: 혼인무효 및 위자료 청구소송

Q: 결혼중개업체에 뭐 한 것은 없나요?

A: 결혼중개업체에다가 할라고 보니깐 계약서가 완전히 나한테 불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걸고넘어지고 싶어도 일단 이 여자가 혼인무효가 나아대요. 그래야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이 사람 중개업소를 두드려 패든, 지지고 까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참, 이거를 제가

Q: 얼마만에 가출했습니까?

A: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들은 거예요. 한 번 보세요. 57일만에 가출을 했는데.

Q: 57일만예요?

A: 판사님도 57일까지 살으셨네요? 그러시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살았는데 왜 혼인무효 냈냐? 이거죠. 인정하시라고 멘트 날리신거. 결국엔 인정 안했잖아요. 항소 준비중입니다.

〈사례 4〉

사례 5는 결혼중개업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지방업자들은 지역유지로서 공무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좁은 지역에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봐주는 관계가 되어 강력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A: 제일로 처음에는 업소를 가서 예물 안줬더니 미안하다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거예요. 주면 되지 어찌냐, 니넌 왜 안 줬냐고 그랬더니, 여자 주면 팔아먹어서 안줬데요. 그러면 여자가 팔아먹어서 안 줬다고 나한테 말을 하지. 내가 말 안 했으면 그냥 먹을 것 아니냐? 그잖아요? 그럼 나한테 거기서 여자 주면 팔아먹어서 안줬다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니네들 꺼떡만 하면 각서 쓰는데 언제까지 주겠다고 나한테 각서 하나 써주라니까 그냥 설명해줘. 이 놈들이 주면 된다니, 2차를 한 번 더 들어가야 한대요, 베트남을.. 들어갈 때 준다. 여자 나올 때 준다. 말을 자꾸 횡설수설을 해, 그냥 설명을 해주라니까? 언제까지 주겠다고만? 아,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인자 나는 몰라서 오히려 인자 전주사람이 큰소리쳐, 전원계약자가 전주잖아요. 광주사람이 필요없고, 그 사람만 가서 그냥 맨날 사무실에 가서 얘기하는거여. 그랬더니 나한테 더 못된, 더 미안하다는 소리는 않고, 그래서

소비자피해센터에 갔죠. 전주. 소비자센터에서는 당연히 피해를 봤으니까 중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물주랑. 근데 소비자센터는, 난 몰랐어, 이 도청에서 인자 국경을 중재한 허가청이며, 전라북도. 거길 또 가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알았지. 이 도청 갔더니, 내가 이 도청 공무원 때문에 피해를 본겁니다. 예물 안주고 이거 구두로 주기로 해놓고 안 줬으면 계약위반입니다, 바로요. 그게, 그 자체가. 근데 공무원들이 그래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책 보니까, 공무원들이 국제결혼담당자들에게 막중한 권한이 있더라. 문제가 많으니까. 관리감독자들, 지도, 감독, 조사까지 하랍니다. 중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재해야 할 거 아닙니까? 민원 생기니까. 내가 가서 민원을 제기해도, 민형사로 하라고 합니다. 참, 공무원이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민원이.

Q: 민형사를 하라고?

A: 어, 나보러 하라는거요. 아니, 구두로 나한테 예물 주기로 했잖아요. 안 줬잖아요. 그러면 계약위반이며, 그 사람들이. 하기로 해놓고, 그러면 가서 나도 그래. 누굴 처벌할게 아니라 나도 결혼하려고 누굴 처벌하려고 한거 아니잖아요. 이 공무원 이따위로 해 갖고 내가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내가 여기 오기전에도 도의회가 서요, 지금 세 시간씩이나 계장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이 국제결혼의 피해를 근본적 해결 좀 해주세요. 국가가 안 할려면, 우리 지자체 먼저 하세요, 우리 도에서 하면 다 도에서 올 거 아닙니까? 이 도는 어떻게 잘하는가? 국제결혼피해도 없이, 이런 대안 제시 해주는데, 도에서는 일단 민형사로 하라고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민형사를) 해 갖고 다 패했어요. 것도 다 패한것도, 이야기가 굉장히 길죠. 공계 나는 누가 물어도 다 알아서 하고, 인자 소비자센터도 중재하려고 애 썼습니다. 광주까지도, 광주가 연결이 되니까.

〈사례 5〉

사례 7은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 하며,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더라고 자신이 얻을 것이 없어 더 이상의 대응을 포기했다고 한다.

A: 네. 업체를 걸고 넘어지려면, 비싼 변호사님을 로펌을 쓰지 않는 이상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써 제가 법원, 이차 재판에서도 이긴 이상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딱 끼놓고 가출한 와이프밖에 없어요. 무고죄니 손해배상 그리고 위자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안하냐면, 처갓집까지 압류를 해서 다 팔아넘길 수 있는데, 다 팔아봤자, 그거하고 가출한 와이프도 다 압류 시킬 수 있는데 전부 팔아봤자, 백 만 원도 안남으니까 그냥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제가 딱 끼놓고 저도 장사꾼인데, 제가 피해봤지만, 그것까지는 하기 싫더라고요. 앓싸리 그돈 같다가 새인생 출발하는 게 백배 낫죠.

〈사례 7〉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

국제결혼의 내국인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안 성 훈

국제결혼의 내국인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1절 출입국관리제도의 개선

1. 문제의 소지

가. 속성결혼의 한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의 대부분은 국민과 외국인과의 자연스러운 교제가 혼인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국내 혼처를 찾지 못한 일부 남성들이 혼인문제 해결을 위해 상업적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단기간에 혼인을 결정하는 속성 국제결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첫 만남에서 혼인의 결정까지 짧게는 4박 5일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국가, 언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남녀가 속성으로 결혼하게 되는 배경에는 배우자를 찾고 싶어 하는 국민남성의 목적과 빈곤한 본국을 떠나 친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여성의 목적,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상호 부합된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문화간 결합이라는 국제결혼의 특수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나 충분한 교제기간도 없이 혼인과 경제적 이유만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혼인이 성사되는 탓에 이로 인한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나. 국제결혼 내국인 피해자를 위한 제도의 부재

현재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많은 기관에서 그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한국적응을 돕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기관에서는 외국인 여성배우자를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로 보고 ‘소수자 지원’이라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정책적 관점에서 많은 대책들을 실시하고 있다.⁷⁾ 이에 비해 국제결혼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내국인 남성을 돕기 위한 기관과 법·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으로 내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달리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결혼은 결혼 당사자간의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국가나 사회단체가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원해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선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남녀간의 문제 또는 결혼생활중에 발생하는 문제로 피해의 책임이 남성에게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호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내국인 피해 남성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이혼이나 혼인무효소송을 하지만, 이마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실정이다.⁸⁾

7) 예컨대,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받았던 ‘국민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2011년 12월부터 제출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 배우자가 신원보증서 작성을 발미로 가정에서 불평등한 지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2년 8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을 폐지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는 결혼이민자의 귀화허가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동반제도와 신원진술서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의 방향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권을 확보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어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8) 혼인은 쌍방의 동의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성이 결혼 및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즉 ‘사기’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

2. 대책

가. 비자발급 관련 규정 개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국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성 국제결혼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속성 결혼이란 단순히 교제기간이 짧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남녀가 상대방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지 또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교제기간도 갖지 않고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법무부는 이러한 속성 국제결혼을 근절하기 위해 결혼후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증심사 기준의 하나로 심사함으로써 기초적인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국내 입국을 불허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중개업체 등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중개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결혼이민사증 예비심사의 도입

국민배우자의 피해 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 중의 하나는 입국 후 바로 가출하는 사례와 단기간 동거 후 가출하는 사례이다. 가출의 원인에는 결혼 전 예상했던 것과 현실이 달라서 가출하는 경우 등 다양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기위해 의도적으로 결혼한 후 가출하는 등 하여 국민배우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이러한 이러한 의도적인 위장결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이민사증 예비심사’ 과정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의도적인 위장결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대만에서는 2003년부터 결혼이민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주로 결혼이주가 빈번한 동남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의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및 이민서 소속이 아닌 외교부 소속의 면접관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⁹⁾ 사전심사에는 배우자

두 사람이 동시에 출석하여야 하며 면접관은 약 백여 개의 질문을 준비하여 해당 커플의 상황에 맞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서로 답이 엇갈릴 경우 위장결혼을 의심하여 보다 심도 있는 질문 등을 하는 방법을 통해 위장결혼을 가려내고 있다. 또한 사전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일이다. 일부 동남아 국가들의 호적등본과 신분증은 위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사하여 국민 배우자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¹⁰⁾ 대만 정부는 위장결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사전심사제도가 생기고 나서 확실히 위장결혼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하고 있다.¹¹⁾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국민들은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에는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초청장 등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송부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결혼이민사증발급을 신청한다. 이 때 결혼이민사증 발급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은 당사자에 대한 비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결혼이민사증을 심사한다. 심사 시,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에 대하여 제출서류를 통한 심사와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한 혼인의 진위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다.¹²⁾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러한 절차진행은 인력 및 예산문제, 업무과중 등으

9) 김두년 외, 앞의 보고서, 70-71, 116-117쪽.

10) 위장결혼인지의 여부가 사전심사에서 불분명할 경우 대만 내정부 이민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대만국적 배우자의 동네에서 탐문을 벌여 외국인과의 결혼이 사실인지 조사하기도 한다. 심사결과 위장결혼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면접관이 그들의 결혼증명서가 사실임을 증명해주고 대만국적의 배우자는 이 증명서를 가지고 대만에 입국하여 관계기관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재외공관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대만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한다. (김두년 외, 앞의 보고서, pp. 75-78 참조)

11) 김두년 외, 앞의 보고서, 78쪽.

1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

로 인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¹³⁾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살펴본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이민사증 예비심사’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위장결혼의 여부를 가려냄과 동시에 속성 국제결혼의 문제를 다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국제결혼커플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여러 가지 공통된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속성 국제결혼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배경에는 서로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한국의 경우 의사소통능력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심사시 이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2007년 8월 28일부터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독일어능력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¹⁴⁾ 프랑스 역시 2006년 7월 ‘이민 및 사회통합법’을 개정하여 프랑스 국적자와의 결혼에 의한 체류증 및 거주자증의 교부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결혼 이후 최소 3년간의 혼인생활과 충분한 언어능력을 입증하여야만 10년 기간의 장기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그 조건이 강화되었다.¹⁵⁾ 영국의 경우에도 2002년 ‘국적, 이민 및 망명법(The 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을 제정하여 언어능력 및 영국에 관한 지식을 외국인 배우자의 시민권 취득의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¹⁶⁾

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다.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의 개인 파산, 부도,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 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13) 김두년 외, 앞의 보고서, 148쪽.

14) 김두년 외, 앞의 보고서, 26쪽.

15) 외국인 배우자는 프랑스 민법 제21-2 제1항 제2문에 따라 충분한 프랑스 언어구사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김두년 외, 앞의 보고서, 36쪽.)

2) 국제결혼예정자에 대한 단계적 비자발급제도 마련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증의 체류자격은 동거(F-2)이었으나 2011년 12월 15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결혼이민(F-6) 사증이 신설되었다.¹⁷⁾ 또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우리나라에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외국인배우자는 영주(F-5)자격을 취득하게 된다.¹⁸⁾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 사례는 결혼이민비자(F-6)로 인해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이다. 가령, 현지에서 결혼약속 또는 결혼을 하고 국민이 먼저 입국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았으나 신부가 비자발급을 핑계로 입국을 미루거나, 실제로 서류미비나 인터뷰에서 비자발급이 거부당하여 신부가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현행 제도는 이미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난 법적인 부부에게 나중에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혼인의사를 확인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체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부터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민 배우자의 피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¹⁹⁾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약혼자 비자(K1)’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국민과 혼인하기로 결정된 약혼자에 대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미국 이민행정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청원서가 승인되면 외국인 배우자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 약혼자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약혼자는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혼인하여야 한다. 만약 90일 내에 결혼하지 않거나 혹은 초청

16) 김두년 외, 앞의 보고서, 59쪽.

17) 사증발급인정제도는 1992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에 도입되었는데, 초청자와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서 초청자가 외국인을 대리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전에는 중국의 경우에만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를 허용하여 왔었는데, 2011년 3월 7일 시행된 개정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결혼동거목적의 사증발급은 재외공관의 장이 하도록 하였다. (동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참조.

19) 국민이 국제결혼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결혼을 취소하려고 해도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인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할 경우에는 추방 명령을 받게 된다.²⁰⁾

앞에서 분석한 사례들 중 ‘현지결혼 후 신부의 입국거부 및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국민 남성들이 입는 피해는 이러한 ‘약혼자 비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지결혼 후 신부의 입국거부 및 지연 등의 문제’는 ‘신부가 돈을 빌미로 하여 일부러 입국을 지연시키는 경우’, ‘신부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연락두절 및 입국 거부’, ‘신부의 비자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국민 남성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주된 이유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약혼자 비자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예를 들어 신부가 돈을 빌미로 하여 입국을 지연시키는 경우, 만약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돈을 보내라는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고 그와 관련된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단순 변심하여 신부가 입국하지 않았거나 비자발급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결혼이 성사되지 못했을 경우에도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고통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 여권발급의 제한

내국인의 국제결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혼인신고 후 외국인 배우자가 미입국한 경우, 당사자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출입국관리 측면에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에서는 국제결혼사기 등의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상대 외국인 여성을 강제 구인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대국 정부에서 이에 협조할 리가 없고 외국인을 구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도 떨어진다. 단지 국민 배우자가 초청을 철회하는 경우 이미 발급된 결혼이민 비자를 취소함으로써 국민 배우자 몰래 취업 등을 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

20) 김두년 외, 앞의 보고서, 165쪽.

능할 것이다.

2) 입국 후 바로 또는 단기간 동거 후 가출한 경우, 국민 배우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출 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내부 시스템에 관련사항을 입력시켜 놓고, 추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때 가출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국민배우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악의적 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과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의사가 있음을 가장하여 사증을 신청하였다고 판단하는 등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강제퇴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입국 후 가출하여 불법취업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예컨대 베트남 신부가 입국 후에 베트남 사람들끼리 정보망을 가지고 연락을 취하여 가출하는 경우도 많지만, 중개업체가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신부들에게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가출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출과 불법취업을 부추기는 한국내의 베트남인, 해외에서 이혼을 부추기는 현지브로커, 불법취업을 받아주는 한국 중개업체를 다 함께 단속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가출로 이혼하는 경우와 같이 이혼사유가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비자가 F1비자로 바뀌면서 취업이 불가하지만 이혼소송 중에는 F2비자로 계속 취업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이용하여 일단가출하고 불법취업으로 근무하다가 적발되어 불법취업으로 추방되면, 다른 사람으로 호적을 세탁 하여 또 다른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취업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자에게 엄중한 처벌이나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또한 가출신고 후 일정기간 경과하면 곧바로 체류비자 자격을 변경하여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²¹⁾

단,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이 국민의 폭언, 폭력 등 국민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진 경우에는 계속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문제는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국민 배우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악의적인 가출임을 판단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는가이

21)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고용하여 주는 업체는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이 단속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법취업을 받아주는 업체를 색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현실적으로 남편의 폭행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출한 외국인의 경우 등을 상정해 볼 때 국민 배우자의 진술만을 듣고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취소하여 강제퇴거하는 방안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안 도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영주자격 또는 국적 취득 후 가출하거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바로 또는 단기간 동거 후 가출한 경우’와 달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일부 피해자 단체에서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고 가출하거나 이혼하는 경우 영주자격, 국적을 박탈해 달라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2년 이상 국민과 혼인생활을 유지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영주자격이나 국적을 부여하고 있고, 따라서 2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이나 국적을 취득 후 국민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처음부터 국민을 이용한 사기결혼이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평생 한국인과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고, 외국인이 영주자격과 국적을 취득하게 된 조건이 국민과의 혼인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영주자격이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과의 혼인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개인은 대한민국의 영주자격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만약 국민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 영주자격자나 국민의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조치는 지나치게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주자격 또는 국적 취득 후 가출하거나 이혼하는 경우 이들에게 영주자격이나 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법안이 마련돼 있는 경우는 없다.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독일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8년 동안 독일에 거주하여야 하지만 독일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는 2년 동안의 혼인생활 유지와 3년 동안 독일에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배우자는 귀화할 수 있다.²²⁾

22)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는 독일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김두년 외,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제도의 주요국가간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2010, 35쪽.)

다. 기관설치 및 제도적 개선

1) 국제결혼피해 상담센터 설치

앞서 지적하였듯이 국제결혼의 피해를 당한 내국인 남성을 돕기 위한 기관과 법·제도적 방안은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내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달리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과 보호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지원 및 상담업무는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소로서는 법률에 근거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법)’, ‘가정폭력상담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가 있고 법률구조법에 따라 등록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결혼관련 상담시설의 대부분은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이나 차별, 인권침해문제 등에 대해 결혼이민여성을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불법중개행위,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문제, 국제결혼 무효소송 및 이혼소송 지원, 자녀탈취 문제 등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상담하거나 소송지원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²³⁾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가족진흥원에서 국제결혼피해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담자가 한명뿐인 상황에서 내국인의 하소연을 듣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한다.²⁴⁾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자의 보호·지원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설치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법)’ 등과 같은 기존의 기관에서 결혼이민여성뿐만 아니라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자의 보호·지원 및 상담과 관련한 업무를 같이 병행한다면 기존의 축적된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노하우를 살려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

23) 김두년 외, 앞의 보고서, 171쪽.

24) 2013년 11월 26일 국제결혼 피해상담전화 자문회의 내용중

각된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제결혼 한 외국인 아내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편의 보호와 지원도 함께 해 줌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의 조사를 통해 국제결혼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가정에 대한 지원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사업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농어촌의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자의 경우 앞서 제시한 피해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대처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²⁵⁾

2) 이혼소송상 특례조치 마련의 필요

외국인 배우자가 현지에서 변심하여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 후 가출하여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국민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²⁶⁾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국민 배우자가 이혼하는데 평균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조차 하지 않거나 위장결혼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혼인무효소송에서 요구하는 명백한 사유를 국민 배우자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대부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행방이 불명인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 국민 배우자는 물적 피해는 물론 심적 고통 등의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현재 상대방 없이 혼자서 혼인무효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게 되

25) 김두년 외,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 153쪽

26) 국민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신부 문제 중 다수가 입국 거부나 가출과 관련이 있어 소송의 진행시 신부를 소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빈번하다.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사증발급이 거절된 경우, 혼인신고 하였으나 변심하여 입국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에 이혼소송 없이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은 경우, 신부가 입국 후 가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는데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소송의 진행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해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준비과정을 단축하는 등의 소송상의 특례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공증, 인증 등 외국발행 공문서에 대한 확인절차 규정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한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서류는 나라마다 상이하고, 발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도 나라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어 중국인의 경우에는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와 외사관공실의 인증(확인)을 받거나, 한국주재 중국영사가 공증한 ‘미(재)혼성명서’를, 베트남인의 경우에는 베트남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행된 혼인상황확인서와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 또는 영사명의로 발행된 혼인요건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²⁷⁾

또한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를 우리나라의 공적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거나 공증인이 인증한 서류에 그 나라 외교부의 확인을 거친 서류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한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당국가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이 아포스티유 인증절차를 거친 서류에 한해서 유효한 공문서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공증 및 인증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동안 혼인신고 수리과정에서 허위서류에 의한 위장결혼을 구별해 내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²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외국인과 혼인을 위해 신분관청에 신청을 하면 어떤 서류가 외국인의 본국에서 독일대사관을 통해 공증되어야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외국인이 프랑스인과 결혼한 후

27) 김두년 외,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제도의 주요국가간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134쪽.

28) 김두년 외, 앞의 보고서, 143쪽.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본국의 대사관을 통해 공증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혼인의사 통지서를 작성하고 그 기재사실이 진실임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고 허위기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문언을 통해 허위서류에 의한 혼인을 예방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결혼 등록관이 결혼사실에 대한 공증인으로서 공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외국국적 배우자가 대만국적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대만에 입국할 때 거치는 수속과 절차에서 “무범죄기록증명이나 양민증은 모두 중문 혹은 영문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중화민국 현지 공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국 공관의 검증을 의무화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결혼등기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제공하는 결혼상황증명서는 해당국 외교부와 중국의 해당국의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거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²⁹⁾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6호)’에도 아직까지 외국에서 발행된 신분관계 서류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공증’이나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처리절차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제신분관계공무원들이 외국발행 공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³⁰⁾

따라서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가 국내에서 효력이 있는 문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할 것을 요구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접수하면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요구하고 미가입국인 경우에는 그 나라의 외교부인증과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한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업무처리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³¹⁾

29) 김두년 외, 앞의 보고서, 143쪽.

30) 김두년 외, 앞의 보고서, 143-144쪽.

31) 김두년 외, 앞의 보고서, 144쪽.

제2절 국제결혼중개업의 개선

1. 문제의 소지

가.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원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을 하고 등록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국제결혼중개업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개인이 소개해주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종업원을 허위로 신고하여 서류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어 신고하고, 자본금이 필요 없는 국내결혼중개업의 간판을 내걸어 국제결혼중개업 상담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음성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는 국제결혼업체를 통한 국내의 국제결혼 사례는 그 비율이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그들 대다수가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결혼중개업자들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불법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 국민 배우자의 피해에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배우자가 처음부터 위장결혼의 의도를 가지고 결혼을 하여 가출을 가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알선료를 챙긴 결혼정보업체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업체자체가 없어져서 책임을 묻을 상대가 없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의 사기피해를 당할 경우 중개업체가 일부 수수료를 반납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어 피해를 보상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업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업체의 대부분이 음성적 영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에 의해 결혼사기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처벌이 힘들다는 점이다. 최근 여러 차례 언론에 의해 보도될 정도

로 중개업자들과 결혼여성이 결탁하여 이루어지는 사기결혼은 이미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³²⁾ 이들 중개업자들은 결혼부터 이혼까지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외국인 여성에게 결혼한 후 언제쯤 가출하고 이혼해야 하는지 시기를 정해줄 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 남편과 시댁에서 어떻게 위자료를 받아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행동지침까지 전달한다. 그러나 중개업자와 결탁하여 사기결혼을 한 것이 밝혀진 후에도 경찰에 가출신고 하는 것 이상의 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것은 결혼가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가정불화로 취급되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처벌역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아동탈취로 인해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아이를 찾아주겠다’며 중개업자들이 접근해 거액을 지불하고 돈을 날리는 등의 ‘이중사기’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나. 결혼중개 계약서 작성 및 신상검증에서의 문제

국제결혼중개와 관련한 문제 중 다수는 계약작성 및 계약서류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혼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공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중개계약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혼인여성을 만나러 출국하기 전에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쓴다 하더라도 간소한 회원가입신청서 뒤에 표준약관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서류에는 혼인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입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편지 없이 이루어지는 속성결혼이기 때문에 허위신상정보와 관련한 많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혼을 위해서는 신상정보에 필요한 주민등록관련 서류, 직업관련 서류, 건강증명서, 범죄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공증을 하고 우리나라 대사관에 가서 확인을 받은 후 결혼상대국의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언어가 다를 경우 언어 번역을 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이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신부가 입국하지 않거나 가출했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아래의 사례와 같이 질병이 있는 경우, 미성년임이 밝혀진 경우, 결혼을 했거나 아이

32) [국제결혼의 그늘: 위장결혼·기획이혼에 우는 한국남성들 이혼 부추기는 브로커 난립 ... 거액 위자료 노린 '떡튀결혼', 2013년 11월 15일 석간 내일신문 20쪽 참조

가 있는 경우 등 국민 배우자가 피해를 입은 문제에 대해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국민 쪽의 과실도 있다는 구실로 중개업체는 이러한 점을 약점으로 잡아 책임을 회피하고 또한 피해당사자인 국민은 자신의 피해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허위정보로 인한 결혼 전후의 괴리

대부분 한 번의 만남으로 결혼이 성사되기 때문에 처음에 만났던 모습과 상상했던 결혼생활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난 후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부부간에 불화가 생긴다. 이것은 속성결혼과 서류보증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결혼 당사자들은 결혼 전 만남을 가질 때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중개업자나 중개업자가 고용한 자의 통역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잘못된 통역을 하거나 중개업자에게 유리한 통역을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결혼이 성사되는데 불리한 조건들을 중개업자가 일부러 전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전달하면 결혼 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의사전달과정이 어디에도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서로 오해를 하고 불화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라. 기록보증

결혼중개를 할 때 중개업체는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중개업자들이 폐업을 하면 이 서류의 관할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보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추적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 운영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현지에 지사를 두거나 현지의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 역시 대부분 불법이다. 지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만들어야 하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국제

결혼중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는 국제결혼중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지 업체와의 업무제휴는 대부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가 진행되므로 이것이 결국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현지 중개업자의 협박으로 인해 강제결혼을 하고 예기치 않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업체 광고시 모델을 사용하여 호객행위를 한 후 다른 여성과 결혼시키는 사기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개업체의 해지환급거부, 소개약속 미이행, 폐업 등으로 인한 중개업체와의 연락두절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 그 피해를 국민 배우자가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대책

국제결혼 피해와 관련하여 많은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자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피해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있다.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허가는 1억원의 자본금을 갖출 것, 그리고 등록을 통해 등록필증을 받을 것 등 그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하여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거나 명의대여업자를 처벌하는 등 무등록결혼중개업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내국인 국제결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국제결혼중개업을 개선하는 방안과 이를 폐지하고 국가가 인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현행 국제결혼중개업³³⁾ 운영방식의 개선

1) 계약문제 개선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관련하여 국민 남성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개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통계에 의하면 계약문제로 인한 피해는 본인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제 19.88%, 중개업체의 문제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문제 17.49%, 중개업체의 서비스 불이행 8.98%로 전체 피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기술된 실태조사에서 소비자 보호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소비자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업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약서에 작성한 환불불가의 약정을 이유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서상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재결혼을 이유로 과도한 추가비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소개를 지연·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이 사전에 신청했던 여성이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강요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접근은 이용자가 계약서 작성시 그 내용을 최대한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 국민남성들은 계약과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가 될지 예측하기 힘들고 계약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중개업자에게 대부분 위임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에서 중개업자는 계약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33) 우리나라는 ‘결혼중개업법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년 12월 24일 제정, 2008년 6.15일 시행)된 이래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하여 3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2010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국내결혼과 국제결혼의 신고, 등록 업무를 시, 군, 구청으로 단일화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들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이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제10조의2)를 부여하였다. 그 후 2012년 개정법률(2012년 8월 2일 시행)에서는 개인신상정보 제공서류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한 영사확인을 받도록 강화되었다.

이 경우는 결혼중개업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관계에서 계약상의 불이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³⁴⁾의 이용을 중개업자에게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만의 내정부 출입국 및 이민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국제결혼 의뢰인과 계약체결 시에 사용하는 일정한 양식의 계약사항을 담고 있는 「국제결혼서면계약참고범례(跨國境婚姻媒合書面契約參考範例)」를 제정하여 반드시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서면계약서에는 결혼의뢰인의 신상정보, 건강정보, 희망대상자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였고 이를 대만 내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 신상정보를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³⁵⁾ 문제는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많은 국민 남

34) 가장 피해비용이 높은 ‘본인 번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제’의 경우 표준약관을 준수할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처리할 수 있다. 표준약관은 ‘회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동시에 환불기준과 금액을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약관에 따르면,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비용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4.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총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총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6.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환급금 없음

또한 ‘중개업체의 서비스 불이행’이나 ‘중개업체의 문제로 인한 계약해지 시 환급 문제’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은 그 처리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제 11조 4항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국제결혼의 재추진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회원의 추가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재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약관은 요금의 변경이나 중개비 정산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회원에게 별도로 성혼을 위한 대가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추가비용으로 인한 사기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아 표준약관에 대해 알고 이것을 이용하여 계약하는 사례가 드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를 통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선으로 하여 이용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혹은 정부적 차원에서 표준약관을 준수화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성 이용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후술하는 국제결혼 관련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과도 연관되는 부분으로 이용자에게 이와 같은 표준약관에 대해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³⁶⁾ 또한 면접사례에서 나온 바와 같이 현지에서 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지 분위기에 휩쓸려 꼼꼼히 계약서를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³⁷⁾

2) 비용지불과 관련한 문제 개선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된 피해내용의 하나로 비용지불과 관련한 문제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개업체의 계약과 다른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와 ‘중개업체의 계약과 다른 지불방법을 요구’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개업체의 계약과 다른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추가비용이 없다’는 확인이 꼭 필요한데, 앞서 서술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약관은 회원에게 별도로 성혼을 위한 대가

35) 김두년 외,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제도의 주요국가간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62-63쪽.

36) 표준약관을 준수하여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준약관 3조 5항은 “결혼의 성사”에 대해 정의하는데, 이는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 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10조에서 ‘계약의 종료’를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정의는 결혼의 성사 이후 일어난 문제에서 중개업자의 책임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고, 실제 피해사례는 결혼 성사 이후 일어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표준약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중개업자와 이용자는 계약서에 ‘특약’ 부분을 따로 마련함으로써 해소하는 방안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개업체의 서비스 불이행, 중개업체의 문제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문제, 본인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약금문제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특약’ 부분을 따로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개업체가 이러한 특약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미경 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82-83쪽 참조)

37) “국제결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09년 8월 26일, 한국소비자원 (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가 아니거나, 이용자가 별도로 꼼꼼히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이 사실을 미리 숙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가비용 없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중개업체의 고지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개업체의 계약과 다른 지불방법’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계약시 지불방법에 대해 약속하였다면 다른 지불방법으로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중개업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출국 전 일시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이대로 시행하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매우 크다. 비용문제는 중개업자와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조율할 수 있지만 중개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약속과는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표준약관은 비용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여성가족부는 한국에서의 계약금, 현지에서의 중도금, 한국에서의 잔금으로 나누어 비용을 지불하는 3단계로 비용을 지불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³⁸⁾

또한 현행법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국제결혼중개업자마다 책정한 중개수수료가 상이하고, 국제결혼중개 이용자들은 자신이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고액의 결혼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³⁹⁾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업무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역할을 표준화하고 매뉴얼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허위정보 제공과 관련한 문제 개선

개정 결혼중개업법은 개인신상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결혼중개

38) 문미경 외, 앞의 보고서 82-83쪽.

39) 최현태 (2011), “국제결혼중개계약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91-114쪽.

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시행규칙 별지 제 8호의 2 서식의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양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하였고, 양 당사자가 신상정보 확인서를 확인한 후 쌍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맞선을 주선하도록 하고 있다.

중개업체의 허위정보 제공과 관련한 문제는 주로 ‘허위 혼인경력 사항 제공’, ‘허위 건강상태 제공’, ‘기타 허위 인적사항 제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 경우 크게 정보제공의 신뢰성 확보 문제와 책임 문제를 누구에게 전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우선 제공되는 신상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범죄의 경우 과거 범죄경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나, 건강진단서의 경우 진단서 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결혼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질환이 있을 때 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 등에서는 호적이나 기타 가족관계 서류 등이 체계적으로 전산화 되어 있지 않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한국처럼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문서를 위조하여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상대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허위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발생시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혼인성사를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물을 수 있지만, 일부 현지브로커들이나 외국인 상대 여성들이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국제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⁴⁰⁾ 이러한 경우에는 중개업체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해결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중개업자의 고의가 아니더라도 통번역의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여

40) 실제로 허위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대체로 가해자를 추적하기가 힘들고, 설령 결혼중개업자가 고의적으로 의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여 결혼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외국인 여성은 대부분 한국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통역가가 필요한데 중개업체 측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 통역가를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통역능력이 부족한 통역자를 통해 의사 전달되기 때문에 결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결혼 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업체직원이나 업체가 고용한 통역은 업체 편에 서서 어떻게든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한 통역만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는 직업의 종류가 매우 많아 인테리어라고 하면 무슨 직업인지 잘 알 수 없고, 건설회사라고 하여 건설업 사장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였고, 소득이 150만원이라고 하여 자기들 돈으로 환산한 다음 부유한 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하위권의 생활수준임을 확인하게 됨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국제중개업법은 결혼중개업체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남 시의 전문 통역뿐만 아니라 관련 서류들도 번역하여 결혼 당사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이용자는 중개업체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나. 현행 국제결혼중개업을 폐지하고 국가가 인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담당하는 방안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제결혼중개업을 폐지하고 국가가 인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의 국제결혼중개업은 해당 성(省), 시(市), 현(縣)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제결혼정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수과정을 통해 ‘국제결혼정보원증’을 받도록 하는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혼인등기조례에 의거하여 각 성, 시, 현 단위에서 각각 국제결혼 관리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각 성, 시, 현 단위의 국제결혼 관

리방안은 기본적으로 혼인등기조례에 준하는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에서 국제결혼중개를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성, 시, 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영리적으로 종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결혼정보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 부녀연합회, 시 총공회 혹은 공청단 시위원회에서 민중단체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고 “기관의 장정”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자기자본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중개기관의 설립신청은 시 민정국으로 하고, 설립심사에 통과하면 국제결혼정보허가증을 발급한다. 또한 국제결혼정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 민정국의 연수과정을 통하여 국제결혼정보원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결혼정보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국제결혼정보기관에 서비스비용을 지불하며 정보서비스비용의 기준은 시 민정국에서 제출하여 지 재정 물가 부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제결혼 정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보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 이외에 결혼 당사자로부터 여타 재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¹⁾

대만의 경우 또한 2008년 「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국제결혼중개업 허가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기존의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 대만에는 43개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있으며 이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대만 내정부(內政部) 산하의 출입국 및 이민서(入出國及移民署)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반드시 이민서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정기적으로 국제결혼중개 업무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59조). 이민서는 「출입국 및 이민법」상의 권한을 위임받아 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국제결혼중개업 허가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의 관리 근거로 삼고 있다. 내정부 신문국(新聞局)에서는 결혼중개 광고의 관리 강화와 미등기업자들의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내정부에서는 출입국관리 및 이민법의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결혼중개업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⁴²⁾ 또한 대만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익화에 힘쓰고 있다. 국제결혼중개

41) 김두년 외,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제도의 주요국가간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82-83쪽.

42) 앞의 보고서, 62쪽.

업체의 재단법인 및 비영리 사단법인화가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많은 결혼중개업체에서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용자를 속이고 도주하거나 외국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각종 명목으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외국여성들을 상품화 하는 광고가 많은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법률로서 금지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 상호로는 국제결혼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국제결혼중개업은 공익서비스로 구분되어 정해진 액수 이상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신문과 방송에 광고를 할 수 없다. 국제결혼중개업은 국가에 허가를 신청한 후 시작할 수 있으며, 결혼중개에 관련된 자료를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주관기관의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다.⁴³⁾

제3절 주요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1. 문제의 소지

국제결혼의 이혼율 증가로 인해 다문화아동의 탈취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아동 탈취문제의 특징은 국민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고, 짧은 혼인생활로 인해 자녀의 연령이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탈취로 인해 미성년자의 이익이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자녀들은 대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양쪽 부모 모두 혈연관계이므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출생하여 자란 탓에 생활기반이 한국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문화아동 탈취문제는 대사관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해 온 관계로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언론이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를 통해 알려진 사례유형은 다음과 같다.

43) 앞의 보고서, 73쪽.

- ① 결혼이민자가 아동을 데리고 출국 후 잠적해 버리는 경우
- ② 결혼이민자가 아동을 데리고 출국 후 귀국하지 않으면서 본국에서 전화나 메일 등으로 연락하며 아동의 양육비와 그 밖의 가족의 생활비 조로 무리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③ 결혼이민자가 아동을 본국의 집에 맡겨두고 혼자 귀국하여 취업하는 경우
- ④ 결혼이민자가 아동을 데리고 출국한 뒤 홀로 귀국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본국에 있는 아동반환을 조건으로 출입국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요구하는 경우(주로 영주권 취득, 국적취득, 위자료 지급 등 매우 다양)

이러한 다문화아동 탈취의 원인은 크게 ① 인륜적 동기, ② 이민적 동기, ③ 복지적 동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륜적 동기뿐만 아니라 이민적 동기와 복지적 동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가능하다. 결혼이민자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적을 취득하면 혼인중단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체류가 가능하나, 영주권, 국적 취득을 하기 전까지는 결혼에 따른 배우자와의 동거목적으로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령은 결혼이민자의 혼인관계가 중단될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혼인중단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중단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민적 동기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혼 후 다문화아동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적 동기는 대한민국의 복지혜택을 받기위해 아이를 탈취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복지관련 법령에서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이라도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상 처우를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이러한 문제로 발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가 국민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존 국제결혼가정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지원이 유지됨은 물론이고 자녀양육에 불편이 없도록, ①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고, ② 한 부모가족으로서 지원대상이 되며, ③ 긴급복지지원 등과 같은 각종 비기여적 사회공공부조의 대상에 편입되는 등 외국인으로서는 최상위의 복지지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안 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양육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부조영역에 편입하고자 아동탈취와 같은 일이 발생하곤 한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아동 탈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일방이 아동을 불법하게 탈취한 경우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성부가 문제되는데, 실제로 한국인 남편과 낳은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간 베트남 여성이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로 기소되어 아동의 국제적 탈취문제가 다투어진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 합의제 판결).

2. 대책

가. 다문화아동 탈취문제에 대한 처벌규정 및 사전예방적 조치 규정 등 신설

기존 판례상에 나타나는 약취 개념을 살펴보면, 약취행위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 주체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⁴⁴⁾

44)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국의 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를 규정한 형법 제289조에 따르면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항),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같다(제2항).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통설은 제1차적 보호법익은 인취된 자의 자유이고 제2차적 보호법익은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이라는 절충설이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도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던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 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같은 견해를 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미성년

앞서 언급한 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⁴⁵⁾을 살펴보면, 대법원 다수의견은 부모에 의한 약취가 가능함은 전제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어떤 실력행사로 아동을 평온하던 종전 보호양육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로서 출생이후 곧장 맡아왔던 보호양육을 유지한 행위’로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을 사용한 약취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아래 판결요지 참조).

[판결요지]⁴⁶⁾

① [다수의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제288조 제3항 전단(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에 해당하는)의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 보호감독자에 대하여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의 약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자의 자유 또는 보호감독자의 감독권 중 어느 하나를 침해하면 범죄가 성립하므로 보호감독자도 인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45) 이 판결은 국제결혼 후 외국계 부모가 자녀를 본국으로 데려가 버리는 사건이 빈발하면서 법적기준을 확실히 할 필요성 때문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었고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2013년 3월 21일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었고 사법사상 최초로 재판 변론과정이 방송과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다.

46) 출처: 대법원 2013.0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 공동친권자인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과 동거하며 공동으로 보호·양육하던 유아를 국외로 데리고 나간 행위가 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폭행, 협박 또는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유아를 범인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는지, 그로 말미암아 다른 공동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인 유아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그의 이익을 침해하였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과 동거하며 공동으로 보호·양육하던 유아를 국외로 데리고 나갔다면,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유아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고 보아야 함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09조에 의하면, 친권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제2항, 제3항), 이혼하려는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4항). 따라서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유아를 데리고 공동양육의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상대방의 친권행사가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친권자의 유아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민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유아로서도 다른 공동친권자로부터 보호·양육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강요당하게 되어 유아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게 될 것이므로 그 점에서도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부모의 일방이 유아를 임의로 데리고 가면서 행사한 사실상의 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적이라고 할 것이며, 특히 장기간 또는 영구히 유아를 데리고 간 경우에는 그 불법성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②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 갑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아들 을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약취하고 이어서 베트남에 함께 입국함으로써 을을 국외에 이송하였다고 하여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을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을을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에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모)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을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을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다문화아동을 국내 경찰권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로 이송한 국제적 이송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또한 부모 양쪽의 보호양육상태를 받던 상태에서

부모 양쪽의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이전한 행위(즉 엄마도 한국에 와 버려서 아버지는 비자발적으로, 어머니는 자발적으로 직접양육이 불가능)가 과연 동일 보호양육상태의 유지로 볼 수 있는지, 국내 가사소송법상 이혼절차를 통해서 양육권을 정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존재하였음에도 사법절차가 무시되었고, 결과적으로 형사법적 해결이외에 다른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사정책적 해결필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등의 다양한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판결을 전제로 다문화아동을 부모 누구든 먼저 데려가면 약취가 아니고, 먼저 데려간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몰래 데려가면 약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먼저 데려가는 사람이 유리한 시스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한 이 판결로 인하여 향후 실무상 다문화아동의 급증과 국제결혼가정의 해체 증대, 미성년자녀가 있는 국제이혼증가추세 및 국제이혼의 결혼생활이 짧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이혼증가로 인한 다문화 아동의 탈취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는 입법적 해결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사건으로는 대법원 판결은 형법의 본질, 미성년자 관련 약취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의 관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입법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법규범으로서 형법의 본질과 임무는 사회의 존립과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기본 가치를 보호하는 데 있고, 형법의 규율 대상은 다른 규범이나 사회적 통제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유해적 행위 또는 법익침해 행위에 한정된다. 법규범 중에서도 특별히 형법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부여한 취지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형법은 제287조, 제288조 등에서 미성년자 관련 약취죄를 두면서 그 구성요건행위를 ‘약취’라고만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형법의 본질과 그 규율 대상에 비추어 보면 형법상 ‘약취’라는 개념에는 그 자체로서 이미 중대한 사회유해적 행위 또는 법익침해 행위라는 법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약취(약취)의 사전적 의미는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타인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둠, 또는 그런 행위’로서, 일상적 용법에도 위와 같은 의미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정당한 보호·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상대방 부모에 의한 종전의 평온한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사회의 기본질서와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는 데에 의문이 없다.

그러나 '정당한 보호·양육권자로서 종전부터 직접 자녀를 보호·양육하여 온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자녀를 데리고 사는 곳을 옮겨 그 보호·양육을 계속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 부모와의 협의, 가정법원의 결정 등 가족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그 행위와 관련된 비난 요소의 거의 전부일 것이다. 그런데 부모의 일방이 가족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친권 또는 보호·양육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과연 사회의 존립과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기본가치를 침해하였으니 형법의 규율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 형법 체계는 이러한 행위를 적어도 약취죄로 파악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각급 법원에서 그동안 이러한 사안이 약취죄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고, 무엇보다 약취죄의 법정형은 이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과 의사를 잘 보여준다.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서,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부모에 의해 범해질 수 있는 형법상의 다른 범죄, 예를 들어 제271조 제1항의 유기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74조의 아동학사죄(5년 이하의 징역), 제275조 제1항 전문의 유기치상죄(7년 이하의 징역) 등은 물론,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으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죄(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내지 제8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뚜렷이 높고, 또한 아동을 매매한 행위(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죄(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도 높다.

그리고 형법 제288조 제3항의 국외이송약취죄 또는 피약취자국외이송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구 형법 제2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서 일반 미성년자약취죄보다 현저히 높게 규정되어 있다.

이런 사정을 보면, 미성년의 자녀를 직접 보호·양육해 오던 부모의 일방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자녀를 데리고 사는 곳을 옮겨 그 보호·양육을 계속한 행위는 설령 옮긴 곳이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87조 등의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나 관련 형사법의 전체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다.⁴⁷⁾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형법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문화아동 탈취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보다 형이 약하면서 부모에 의한 탈취행위에 대한

47) 출처 : 대법원 2013.0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법문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명확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⁸⁾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데려가거나 혹은 자녀를 탈취하는 경우 이는 독일 형법 제235조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자녀탈취(아동탈취)는 2가지 구성요건에서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즉 누군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를 양육권자인 부모, 부모일방,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약취 또는 불법으로 억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동법 제235조 제1항).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자인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거나, 혹은 외국으로 데려간 후 그 곳에서 불법으로 억류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불법으로 억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동조 제2항).

독일은 적극적인 아동탈취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양육권자의 동의하에 휴가를 외국으로 간 경우, 그 후 자녀와 함께 간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다시 되돌려 보내지 않고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아동 혹은 청소년이 이에 동의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⁴⁹⁾

독일과 달리 우리 형법에서는 부모에 의한 자녀탈취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없고 일반범죄로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제287조)”과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제289조)”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간단히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부모’에 의한 약취가 이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 및 판례의 견해가 나뉘고 있다.

48) 한상암, 이효민, 외국인범죄피해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41쪽 참조

49) 독일도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가입국이며, 아동탈취에 대처하는 독일의 중앙당국은 연방법무부이다. 독일로의 자녀귀환을 위한 전제조건은 자녀가 독일에 일상적인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 하며 또한 비양육권이 양육권을 침해한 경우이다. 이것은 부부가 공동의 양육권자라 하더라도 일방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다른 국가로 데려간 경우에도 해당된다. 김두년 외, 앞의 보고서, 31-32쪽 참조

따라서, 이행법률과는 별도로 국내법에 의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독일의 경우와 같이 “부모에 의한 자녀탈취” 문제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방법론으로서는 형법에 “부모에 의한 자녀탈취”를 처벌하도록 신설 또는 개정하는 방안과, 부모에 의한 외국으로의 자녀탈취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형법상 「약취와 유인의 죄」에 부모에 의한 자녀납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형법 제287조를 독일형법 제235조와 같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를 “미성년자를 양육권자인 부모, 부모일방,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약취 또는 유인한 자”로 고칠 필요가 있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자인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거나 혹은 외국으로 데려간 후 그 곳에서 불법으로 억류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불법으로 억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 한다”는 내용을 제2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으로는 미국의 「부모에 의한 납치 금지법안(Federal Parental Kidnapping Prevention Act: PKPA)」과 통일자녀양육판결법안(Uniform Child Custody Judgment Act: UCCJA)의 예를 참고하여 별도의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있다.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여권 발급제한 내지 여권 효력제한 조치 규정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요 상대국을 대상으로한 외교적 노력 강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배우자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1983년 12월 1일 발효된 협약이다.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89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을 하였고, 2013년 3월 1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⁵⁰⁾

50)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78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 국민인 아동이 외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다른 체약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을 하는 때에는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전달 등 탈취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행법률 제8조). 이 경우 우리 중앙당국은 신청인에게 중앙당국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지명하는 위임장, 또는 그런 대리인을 지명할 권한을 중앙당국에 부여하는 위임장을 신청에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탈취협약 제28조).⁵¹⁾

그러나 이 협약은 체약국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즉 탈취협약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침해되기 직전에 아동이 체약국에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아동의 현재 소재지가 다른 체약국에 있어야 한다(동협약 제4조 제1문). 문제는 우리나라 내국인 국제결혼 주요상대국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입을 수락한 당사국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결혼이 거의 없는 국가들이다. 정작 내국인이 탈취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은 협약 미가입국인 관계로 협약에 따른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이 낮다.⁵²⁾ 따라서 이 협약을 근거로 다문화아동 탈취문제에 대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국제결혼이 다수 이루어지는 국가를 중심으로 헤이그아동탈취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대국민홍보 필요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 남성들이 외국 현지의 국제결혼 관련 법률이나 절차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 불법적인 국제

51) 독일의 국제가족법 시행법률(IntFamRVG)(제6조 제2항)은, 아동이 외국으로 탈취된 경우 반환신청을 받은 독일의 중앙당국은 재판상으로도 신청인을 대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석광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한국의 가입”,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2호, 2013, 79~134쪽 참조)

52)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은 아동탈취문제를 둘러싼 국가적 차원의 국제적 공조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중개업체가 국민 남성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이 불법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활개를 치더라도 국민 남성들은 국제결혼과 관련한 정보부족 때문에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일임하고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고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의 동의하에 혼인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영역으로 국가나 단체가 개입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불법행위와 문제가 있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나 책임있는 기관이 개입하여 이를 예방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결혼과 관련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설립을 추진하고 또한 이들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국제결혼 관련 정보와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권재문 (2011),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이행 법률안-제정의 의미와 초안의 검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21(4): 1-34
- 김두년 외 (2010),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제도의 주요국가간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두년 외 (2010),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문강 (2012), 다문화가족 한국남성배우자의 피해유형에 관한 연구, 원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 (2011),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해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15
- 김이선·마경희·선보영·최호림·이소영 (2010),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와 정책과제. 여성가족부.
- 김정선·김재원 (201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 : 캄보디아 국제결혼 중개실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86: 305-344
- 문경연 (2010),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미경 외 (2012),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석광현 (2013),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한국의 가입”, 서울대학교 法學 54(2): 79-134
-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지원 정책방안 발표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201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안내

- 위선주 (2009), 아시아 결혼이주체제에서의 출신국 정책 연구 : 필리핀, 베트남, 몽골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 이경희 (2013), 국제결혼중개업에 관한 법적 규제, 한남법학연구 창간호 1-24
- 채옥희·홍달아기 (2008), “피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회 17(5): 891-902
- 최현태 (2011), “국제결혼중개계약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과 정책연구 11(2) : 91-114
- 하밍타이 (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암·이효민 (2008), “외국인범죄피해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27-42
- 홍달아기·채옥희 (2007), “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지 16(4): 733-744

〈인터넷 자료〉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2009). <http://www.lawhome.or.kr/>

〈신문기사〉

- 강원도민일보, “국제결혼 피해 노총각 냉가슴,” (2013.5.16).
- 경향신문, “국제결혼 ‘사기 주의보,’” (2005.03.22).
- 광주일보, “고질적 국제결혼 사기, 수술 시급하다,” (2012.11.29).
- 광주일보, “노총각 올리는 국제 사기결혼,” (2012.11.28).
- 내일신문, “아이 빼돌린 베트남엄마 유죄인가,” (2013.3.20).
- 뉴시스, “다문화가정 10쌍중 4쌍은 별거중,” (2013.5.21).
- 동아일보, “한국국적 얻자 가출-잠적...아내의 변심에 우는 다문화 남편들,” (2012.10.23).
- 데이터 뉴스,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 단속 강화,” (2010.8.25).

- 문화일보, “국제결혼 최대민원은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2012.10.3).
- 서울신문, “아이와 사라지는 아내들... 찾는 비용 2000만원,” (2011.4.26).
- 서울신문, “한국여성도 사기결혼에 운다,” (2011.9.14).
- 서울신문, “국제결혼 단꿈, 인신매매 악몽으로,” (2011.9.14).
- 석간내일신문,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37% 증가,” (2012. 5. 8).
- 세계일보, “에이즈·성병 걸린 외국여성소개...국내 남성도 국제결혼 피해,”
(2010.8.20).
- 시사저널, “다문화 ‘가정파괴’브로커 활개 친다 위장결혼에서 이혼까지 각본에 따라 연출,” (2012.12.12).
- 연합뉴스, “‘에이즈 신부’...국내 남성도 국제결혼 피해,” (2010.08.20).
- 이데일리, “국제결혼했더니 입국하자마자 가출,” (2012.9.26).
- 이투뉴스, “국제결혼 생활에서 한국남성은 강자가 아닌 약자?,” (2011.9.19).
- 헤럴드경제, “‘위장 국제결혼’에 우는 한국 남자들,” (2012.04.23).
- 여성신문, “2000만원 들였지만 베트남 신부는 사라졌다,” (2012.10.05).
- 한겨레, “키르키스로 보낸 2천만원...그러나 신부는 오지 않았다,” (2012.5.10).
- 헤럴드경제, “‘위장 국제결혼’에 우는 한국 남자들,” (2012.4.23).
- 헤럴드생생뉴스, “내 베트남 신부가 유부녀...결혼해 우는 한국 남성들,”
(2011.08.16.).

Abstract

A Study on Victims of Intermarried Korean Men

Kim Ji-Young · An, Sung-Hoon

The aim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analyze the counseling cases of actual states of damage of international marriages which were under requisition in consumer protection agency and real state of damage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local males and then suggest a law and institutional counterplans.

There were 8,333 counseling cases in consumer protection about poor service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from 2012 to mid 2013. In categorizing the cases, there were 9 major categories as followed; poor service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refund of revocation of contract with problems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cancellation fee of revocation of contract, handling of expense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denial and delay of entrance of bride, runaway and phony marriage of bride, disinform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postponement of entry procedure, closure of agencies and contract interruption with agencies.

The mean age of interviewees was 42.7 years and the difference with women was 17.2 years. The occupations of them were worker, engineer, individual business, employee, and government employee. The range of age was early 30s and 40s. Wives' homelands were mostly Vietnam and Philippines.

The serious damage of interviewees was the case of runaway with their children. 15 interviewees' wives of 18 interviewees were runaway and 3

among them were runaway with children. One of them took back his child with the govenrment's asistance but children of the rests were in mother's homeland. The other problem of international marriage was unreasonable or additional cost and disinform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In order to prevent damages of natives' international marrige, some considerations for three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are requested; First, improvement of immigration control institution, Second, refin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Finally, publicity consolidation to people and reinforcement of diplomatic ability to main opponents.

연구총서 13-AB-04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발 행 / 2014년 2월

발행인 / 박상옥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575-5282/5283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 쇄 /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쇄사업장

(02)6401-8891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정가 7,000원

ISBN 978-89-7366-098-8 93330